2011. 법제처
연구용역 보고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412-01

법령에의 시각화 기법 도입 및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 정비기준 및 사례연구

2011. 11.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법제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법령에의 시각화 기법 도입 및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 정비기준 및 사례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1.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유 환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강 현 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　이 상 윤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차 현 숙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홍 의 표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요 약 문

요 약 문

제 1 장 서 론

1. 연구 개요

○ 법령에의 시각화 기법 도입 및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및 사례 연구 수행

- 법령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기준을 마련
- 적용시 각 사례별 시각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

○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정비기준의 제시와 구체적 개정방안 제시

○ 실증적 분석을 통한 현장 활용도 제고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령의 시각화 기법 도입

○ 그림·도표·계산식·절차도 등의 시각화 기법 도입을 통하여 법령의 이해를 돕고 법령의 세부 내용을 쉽게 파악

○ 발굴된 시각화 사례 분석을 통하여 법령의 시각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비기준을 마련

□ 관계 법령 명시를 통한 정비

○ 법령 간에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련 법령을 파악·분석하여 법령 간의 관계를 명시하여 줄 필요가 있는 법령 사례를 발굴하고, 법령 심사 및 정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기준을 도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제 2 장 법령시각화에 대한 입법론적 논거

Ⅰ. 논의의 출발점

□ 알법 사업 이후에도 법령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은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법령이라는 공감대

○ 형식의 알기 쉬움에서 내용의 알기 쉬움으로 전환

□ “법령 디자인 사업” 또는 “법령 시각화 사업”의 구체화

Ⅱ. 접근방법

□ 법령시각화는 새로운 입안방법이 아니라 입안방법의 다양화·활성화임

○ 시각화 방법으로 제시하는 그림·도표·계산식·절차도의 입안방법은 법령의 별표·서식 등 부록에서는 일반화된 입안방법임

○ 예외이긴 하지만 법령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입안방안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 시각화는 일반화된 입안방법임

□ 새로운 입안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입안방법을 구체화함

○ 그림 입안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제시

○ 도표와 계산식은 기술분야와 조세분야 등에서는 일반화된 입안방안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절차도에 대한 입안방안에 대하여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함

Ⅲ. 입법방안의 장단점 분석

○ 법령의 조문에 포함하는 방안

- 별표, 그림, 산식과 절차도 등을 직접 법령의 조문과 함께 배열하여 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령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

- 별표, 산식, 절차 등의 형식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과 명령의 법률적 체계를 일원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장 점

· 각 조문별 관련 사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법규 판단이 가능

· 단일규정으로 전체 규율 법령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능성의 증대

- 단 점

· 법령 본문의 양이 증대하고 조와 항의 분량이 증대하여 단일 법령의 분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음.

· 매우 다양한 규율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별 적합도에 따른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 별표, 그림, 산식 등 각각 다른 형식의 문서화·전산화 과정에 따라 전산화에 역행할 수 있음. 즉, 빠른 검색이나 프로그램간의 공유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정보화의 비효율이 발생함

○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 현행 법령상의 별표, 산식과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고, 법령정보서비스에 있어서는 하이퍼링크나 검색링크를 거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이 경우 본문에는 “[그림1]에 따라”와 같은 매우 간략한 지시어만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여 법령 전반이 간소화할 수 있음.

- 장 점

· 법령정보화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

· 개별 사안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령의 이해도를 증대할 수 있음.

- 단 점

· 법령이해를 위해 별표, 그림 등을 이중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음

· 법률간소화의 경향이 나타나 과도한 위임입법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제개정문의 작성 등 입법에 어려움이 있음

○ 이중관리 방안

- 현행 법령의 조문은 두고, 전산정보화에 따른 링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이 경우 링크되는 그림 등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과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장 점

·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법령의 참고자료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기준으로 작용
· 법령의 동일효력을 인정하면 법령입안의 다양한 방법이 인정될 수 있음

- 단 점

· 이중적인 전산화 과정으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
·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자료인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제 3 장 현행 법령의 시각화 도입 현황 및 시각화 활성화를 위한 도입 법령 사례 발굴

제 1 절 그림 도입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그림이 삽입된 경우

□ 별표방식

○ 그림은 별표 또는 서식의 방식으로 법령의 부록으로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 본문방식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비밀보호 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2. 반영가능한 그림 예시

□ 기본 방안

○ 정의규정 등에서 설명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

○ 이미 별표 등에서 반영된 사항을 예시방안과 제시방안으로 나누어 본문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예시방안

○ 본문의 내용이 길고 복잡하면서 괄호, 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나뉘어져 설명되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예)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등 다수

□ 확정방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특수화물 선박운송규칙 등

3. 법령 본문 그림 삽입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현행법상 그림의 규정방식은 예시 방식과 확정 방식이 공존

□ 새로운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법령정보화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링크방식의 그림삽입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진행

제 2 절 법령 본문에 표를 삽입하는 방안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표가 삽입된 경우

□ 표를 본문에 반영한 예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비밀보호규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승진규칙

2. 반영가능한 표 예시

□ 표 반영 예시

○ 지도도식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표지규칙,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 3 절 법령본문에 계산식을 삽입하는 방안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계산식이 삽입된 경우

□ 계산식 본문 반영 예

○ 국세기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2. 반영가능한 산식 예시

□ 계산식 가능 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관세법, 소득세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 절 절차도 도입

1. 현행 법령상 절차도 예시

□ 절차도 법령에 반영 예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2. 본문에 반영가능한 절차도/흐름도 예시

□ 절차도 반영 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제 4 장 법령 시각화 활성화 관련 입안방법론

□ 기본원칙

○ 그림, 표, 계산식, 절차도 등 법령의 시각화를 본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활성화할 경우 어떠한 입안원칙과 기준으로 입법의 방향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례와 예시를 제시

□ 입법론적 검토 - 그림 삽입 활성화 방안

○ 그림 삽입의 원칙

-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법률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가보다는 일반국민이 법령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대상
- 기술·안전 등 전문적인 분야의 법령 중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 용어의 설명이나 정의규정의 설명을 위하여 그림을 활용할 수 있을 것

○ 입안방법

- 법령과 행정규칙에 이미 그림으로 제시된 사항을 재검토하여 본문에 활용하는 방법
- 법령의 본문에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에 “예시방식”과 “확정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문에 표시
- 법령 입안시 예시방식은 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이 서술되고 그림이 예시로서 삽입하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확정방식의 경우에는 법령본문에 그 내용을 서술하고 그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본문의 서술식 설명을 제외하고 그림만으로 법령의 효력규정으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병행하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를 검토

○ 개정방식

- 서술방식과 포괄방식 중 포괄방식으로 입안방법을 제시

□ 입법론적 검토 - 표 삽입 활성화 방안

○ 표 삽입의 원칙

- 법령문의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법전문가나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문

- 법령의 문장과 문장이 중의적이고 다중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여러 문장으로 제시하여야 하지만, 이를 다른 항이나 조로 분리할 경우 포괄적인 입법해석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는 방법
- 법령의 본문과 구별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별도의 호나 항 또는 조문으로 표시하기 보다는 법령문의 일체성을 위하여 표로 표시하는 방법
- 복잡하고 다의적인 호·목 등을 표 방식으로 정리

○ 입안방법

- 본문 삽입과 부록 방식
- 현재 호·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기술·안전 입법분야와 과학기술 법제분야의 법령
- 본문이 길고 복잡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문장으로 표시하여야 할 법령문

○ 개정방식

- 개별적인 사항제시 방식과 포괄적인 개정방식

□ 입법론적 검토-계산식 삽입 활성화 방안

○ 입안원칙

- 원칙으로 계산식으로 표현가능한 서술식 문장을 기초
- 계산식의 법령삽입대상법령은 세법, 도로교통법, 선박·기계 등 산업시설과 장비관련법령, 디자인 관련 법령 등

○ 입안방법

- 부기 방식과 계산식 방식
- 일체화 방식과 도표 방식
- 계산식의 입안방법 중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하나의 조·항·호에 두 개의 계산식이 있을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은 본문에 동시에 언급하는 방법을 강구

○ 개정방식

- 개별개정방식과 포괄개정방식

□ 입법론적 검토 - 절차도 삽입 활성화 방안

○ 입안원칙

- 법령의 절차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의신청 등 국민의 행정참여의 권리가 보장

○ 입안방법

- 포괄적인 입안방법
- 법령의 본문과 부칙 사이에 두는 방식
- 예시방식과 확정방식 중 예시방식으로 입안

○ 개정방식

- 개별개정방식과 포괄개정방식

제 5 장 타법규정사항 관련 정비

□ 관련 사례 발굴 및 정비안 제시

○ 사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유광산보안규칙,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주택법, 임대주택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등, 공탁법, 소득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특허법 등, 기상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궤도운송법

□ 정비기준 제시

○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법령용어는 법령상의 용어 근거가 명확한 용어라는 점에서 법령에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

○ 근거를 밝힘에 있어서 법률만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하위법령에서 정의 등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만을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

○ 법령의 첫 번째 용어만 근거를 밝히고 약어를 사용하여 중복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법률에서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중복적으로 관련 사항의 근거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법률을 밝히고 있는 경우에만 근거를 밝힐 것

○ 근거를 밝히는 법령용어는 일반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원용할 필요가 없으며, 법령용어로서의 적용과 해석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의 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

○ 관련 근거법령이 많은 경우에도 이 근거법령 전부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대표 법령의 근거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

목 차

제 1 장 서 론 ····· 23
1. 연구 개요 ····· 23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4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25
4. 연구방법 ····· 26

제 2 장 법령시각화에 대한 입법론적 논거 ····· 27
Ⅰ. 논의의 출발점 ····· 27
Ⅱ. 접근방법 ····· 28
Ⅲ. 입법방안의 장단점 분석 ····· 30
Ⅳ. 법령시각화 적용 사례분석 ····· 31

제 3 장 현행 법령의 시각화 도입 현황 및 시각화 활성화를 위한 도입 법령 사례 발굴 ····· 35
제 1 절 그림 도입 ····· 35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그림이 삽입된 경우 ····· 35
2. 반영가능한 그림 예시 ····· 56
3. 법령 본문 그림 삽입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82

제 2 절 법령 본문에 표를 삽입하는 방안 ····· 83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표가 삽입된 경우 ····· 83
2. 반영가능한 표 예시 ····· 96

제 3 절 법령본문에 산식을 삽입하는 방안 ····· 139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산식이 삽입된 경우 ····· 139
2. 반영가능한 산식 예시 ····· 147

제 4 절 절차도 도입 ····· 175
1. 현행 법령상 절차도 예시 ····· 175
2. 본문에 반영가능한 절차도/흐름도 예시 ····· 181

제 4 장 법령 시각화 활성화 관련 입안방법론 ····· 190
Ⅰ. 기본원칙 ····· 190
Ⅱ. 입법론적 검토 - 그림 삽입 활성화 방안 ····· 190
1. 그림 삽입의 원칙 ····· 191
2. 입안방법 ····· 197
3. 개정방식 ····· 199
Ⅲ. 입법론적 검토 - 표 삽입 활성화 방안 ····· 200
1. 표 삽입의 원칙 ····· 201
2. 입안방법 ····· 206
3. 개정방식 ····· 208
Ⅳ. 입법론적 검토-계산식 삽입 활성화 방안 ····· 209
1. 입안원칙 ····· 210
2. 입안방법 ····· 210
3. 개정방식 ····· 213
Ⅴ. 입법론적 검토 - 절차도 삽입 활성화 방안 ····· 214
1. 입안원칙 ····· 214
2. 입안방법 ····· 214
3. 개정방식 ····· 216
제 5 장 타법규정사항 관련 정비 ····· 219
제 1 절 관련 사례 발굴 및 정비안 제시 ····· 219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19
2. 석유광산보안규칙 ····· 219
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220
4. 도시철도건설규칙 ····· 220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21
6. 주택분양, 청약-주택법 ····· 222
7.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222
8.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 223

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신용보증 기금(신용보증 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223
10. 공탁-공탁법 ····· 224
11. 연말정산-소득세법 ····· 224
12.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25
13. 교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 225
14. 발명-「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 227
15. 기상관측시설-기상법 ····· 227
16. 정기간행물-「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28
17. 궤도-「궤도운송법」 ····· 229

제 2 절 정비기준 제시 ····· 230

【부 록 1】 <시각화 법령 예시자료> ····· 235

「국세징수법」 ····· 235
「국세기본법」 ····· 251
「국세기본법 시행령」 ····· 25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266
「도로교통법」 ····· 269
「도로교통법 시행령」 ····· 304

【부 록 2】 일본-법령에 그림이 있는 경우 ····· 321

【부 록 3】 독일-법령에 그림이 있는 경우 ····· 327

제 1 장 서 론

1.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및 개요

○ 지난 5년간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성과와 전문적 연구성과를 보다 내실 있고 실질화하는 노력과 법령의 선진화·고도화 및 정보화를 위한 법령에의 시각화 기법 도입 및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및 사례 연구 수행이 필요

○ 법령의 이해를 돕고 법령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기법의 도입 검토

- 법령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기준을 마련
- 적용시 각 사례별 시각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

○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정비기준의 제시와 구체적 개정방안 제시

- 법령의 기술 방식의 하나로 해당 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기술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그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체 법령의 체계를 잘 모르는 일반 수범자들의 경우 법령 간에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대상 법령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령 간의 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법령 사례를 발굴하여 관계 법령의 명시하는 입안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개정방안의 형식으로 제시

○ 실증적 분석을 통한 현장 활용도 제고

- 이론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벗어나 현행 법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도출
- 국내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령의 시각화 기법 도입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제시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령의 시각화 기법 도입

○ 법령의 수가 증가하고 법령으로 규율되는 분야들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일부 법령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수범자의 경우 법령이 복잡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길게 기술되어 있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법령 조문의 내용을 계산식, 도표 및 흐름도·절차도 등의 그림으로 나타내어 주는 시각화 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법령의 이해를 돕고 법령의 세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령의 시각화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발굴·분석한 결과 및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발굴된 시각화 사례 분석을 통하여 법령의 시각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관계 법령 명시를 통한 정비

○ 통상 법령을 기술하는 방식에 의하면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기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경우 법령의 체계 및 관련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당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이 어느 법령의 내용인지 알기 어려워서 해당 법령 관계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수범자는 법령의 내용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됨

○ 따라서 법령 간에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련 법령을 파악·분석하여 법령간의 관계를 명시하여 줄 필요가 있는 법령 사례를 발굴하고, 법령 심사 및 정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법령의 시각화가 필요한 사례 발굴 및 정비기준 도출과 관계 법령 명시가 필요한 사례 발굴 및 정비기준 도출을 통하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현행 법령 중 계산식, 도표나 흐름도·절차도 등의 그림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수 있는 법령 및 해당 조문 사례 파악

□ 법령에 계산식, 도표 및 그림을 도입하기 위한 정비기준 제시

○ 계산식, 도표나 흐름도·절차도 등의 그림을 도입할 수 있는 대상 법령의 기준, 실제 계산식·도표·그림 등의 방식을 도입할 때의 정비기준 등 법령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비기준 발굴

○ 주요 국가의 법령 시각화 관련 사례 및 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정비기준 발굴

□ 현행 법령 중 해당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과 그 조문의 사례를 발굴하고, 법령 심사 및 법령 정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정비기준을 도출

현 행	정비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소화설비)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소화설비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칙에 적시.

4. 연구방법

□ 법령의 시각화 기법 도입을 위한 국내외 문헌 및 사례 연구

□ 법제처 내부 검토 자료에 대한 분석

□ 관계 법령 명시가 필요한 법령 발굴 및 정비

□ 현행 법령 실태조사 및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

□ 법 관련 기관이나 학회의 의견 수렴 및 법령 소관부처의 의견 수렴

□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법제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쟁점별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전문가 회의, 워크숍 등을 거쳐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도출함.

제 2 장 법령시각화에 대한 입법론적 논거

Ⅰ. 논의의 출발점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령은 모든 국민의 생활과 삶의 기준이 되며, 생활의 양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범자인 국민이 국가가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할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현대적 삶의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은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법령이라는 공감대가 다양한 전문가・일반인 의견조사 등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의 한글화, 용어와 문장의 순화 등 수범자인 국민이 보다 접근하기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법령의 용어와 문장은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조에 가깝게 접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접근의 용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법령은 여전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안전・과학기술 등 전문분야의 법령이 늘어나고, 용어와 문장도 한글식 표현에서 벗어나 외국어 표현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용어와 문장을 읽고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령의 절차의 복잡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 등으로 실제 법령적용에 대한 단계별 이해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그림, 표, 산식, 절차도 등으로 표시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법령 디자인 사업" 또는 "법령 시각화 사업" 등이다.

Ⅱ. 접근방법

법령에 그림, 표, 산식, 절차도 등을 삽입하는 방안은 일견 법령의 입안형식에 어긋나는 것이며, 법령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오해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법령에 반영되어 있다. 다만, 법령의 단계에서는 이를 본문에 직접 삽입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별표·서식 등 법령의 부록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법령의 시각화를 위한 서술은 본문에 삽입하는 것이 입안원칙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법령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삽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의 경우에는 오히려 법령의 본문에 직접 삽입하는 것이 입안의 원칙이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입안방법이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있어서 법령의 시각화는 이미 현행 법령의 부록 등에서 반영된 시각화의 요소를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령의 본문에 산입하여 표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별표·서식 등의 법령의 부록에 표시된 각종 그림·표·산식·절차도 중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본문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부록에 관리하기 보다는 본분에 직접 규정하여도 무방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의 부록에 두기보다는 본문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중에 간단한 사항이고,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법리에도 맞는 사항의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물론 방대하고 기술적이며, 전문적인 영역의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입법적 불비의 보완을 위한 행정규칙 사항 등은 법령의 본문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표·그림 등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은 현행 법령상 반영된 법령시각화의 내용을 어떻게 빈영하는가의 논의를 변론으로 하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법령의 시각화 관련 사항을 어떻게 입안할 것인가의 논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의 본문 산입의 경우에는 용어와 문장에 관한 사항을 그 용어와 문장에 맞게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순히 그림만을 삽입하는 방안은 그 그림의 전체적인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법령 규정사항의 전체를 모두 표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그림의 한계를 어떻게 입법에 담을 것인가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그림의 삽입으로 법령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장점과 아울러 법령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현상과 구체적인 사례적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와 산식의 법령 본문에의 삽입방법은 최근의 법령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시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복잡한 문장을 단순한 도표나 산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입안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표의 경우 기존의 호로 표시되는 입안방법을 전면적으로 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서술형인 각 호로 규정하는 방법보다는 표로 일체화된 규정사항을 일목요연한 일체성을 가지는 입안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분별한 표의 사용이 오히려 법령의 내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절차도의 법령 본문에의 삽입은 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법령에서의 절차는 독립된 과정이나 업무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활동의 일부분을 개별 조문단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절차의 단절로 인한 법령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오히려 다양한 법령 해설자료의 보급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령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보다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법령시각화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법령입안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종이법령집의 발간을 전제로 입안방법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맞느느 다양한 입안방법에 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입법방안의 장단점 분석

○ 법령의 조문에 포함하는 방안

- 별표, 그림, 산식과 절차도 등을 직접 법령의 조문과 함께 배열하여 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령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
- 별표, 산식, 절차 등의 형식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과 명령의 법률적 체계를 일원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장 점
  - ·각 조문별 관련 사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법규판단이 가능
  - ·단일규정으로 전체 규율 법령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능성의 증대

- 단 점
  - ·법령 본문의 양이 증대하고 조와 항의 분량이 증대하여 단일 법령의 분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음.
  - ·매우 다양한 규율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별 적합도에 따른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 ·별표, 그림, 산식 등 각각 다른 형식의 문서화·전산화 과정에 따라 전산화에 역행할 수 있음. 즉, 빠른 검색이나 프로그램간의 공유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정보화의 비효율이 발생함

○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 현행 법령상의 별표, 산식과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고, 법령정보서비스에 있어서는 하이퍼링크나 검색링크를 거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이 경우 본문에는 “[그림1]에 따라”와 같은 매우 간략한 지시어만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여 법령 전반이 간소화할 수 있음.

- 장 점
  - ·법령정보화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
  - ·개별 사안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령의 이해도를 증대할 수 있음.

- 단 점
  - ·법령이해를 위해 별표, 그림 등을 이중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음
  - ·법률간소화의 경향이 나타나 과도한 위임입법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제개정문의 작성 등 입법에 어려움이 있음

○ 이중관리 방안

- 현행 법령의 조문은 두고, 전산정보화에 따른 링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이 경우 링크되는 그림 등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과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장 점
  -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법령의 참고자료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기준으로 작용
  - ·법령의 동일효력을 인정하면 법령입안의 다양한 방법이 인정될 수 있음

- 단 점
  - ·이중적인 전산화 과정으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
  -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자료인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Ⅳ. 법령시각화 적용 사례분석

○ 그림의 경우

- 도로·소방 등 안전관련 법령에 있어서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정의・용어의 설명이나 해설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

- 입안방법
  ・예시방식과 확정방식
  ・부록방식(첨부방식과 링크방식)과 본문방식(삽입방식과 링크방식)

- 그림의 효력
  ・법령에 포함된 그림의 법률적 효력이 참고사항인지, 적용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예시방식은 참고사항이지만, 확정방식은 적용사항 등으로 기준을 제시

- 개정방식
  ・포괄개정방식과 개별개정방식

○ 표의 경우

- 특정영역에 한정된 적용이 아니라, 법문이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와 각 내용상의 구분이 명확하여 표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를 포괄하는 경우에 표로 작성 가능
- 호・목 등 다층적 법령구조를 가지는 조문의 경우에는 표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음.
- 중복적인 설명을 각 호・목에서 제시하여야 할 경우에 각 항목별로 정리
- 계산식 등 본문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

- 입안방법
  ・별표・고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본문에 표로 표시
  ・표는 좌란에는 개정문의 작성에 필요한 호를 원칙적으로 명기하도록 함.
  ・상단에는 각 대표제시어를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상단의 하위에 대표제시어를 이중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대표제시어의 재분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구분
  ・표의 내용은 가능한한 간단하고 중점사항만을 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 하단에 비고란을 통하여 용어 및 설명사항을 제시하도록 함.

- 개정방식
  - ・표의 전면개정방식과 부분개정방식에 대한 별도의 개정방식을 채택
  - ・전면개정방식은 '제00조제0항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형식으로 표의 전면적인 교체방식(그림 참조)으로 개정
  - ・부분개정방식은 상단의 대표제시어+호번호로 개정대상을 적시[제00조제0항 하단의 표 나-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하여 부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 계산식의 경우

- 세법, 시설・장비 관련 법령, 디자인 등 산업관련 법령 등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형 계산식 서술방식을 간단한 수학의 계산식 방법으로 변경하여 제시

- 입안방법
  - ・법령의 본문에서 계산식의 표현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 명사'로 서술
  - ・부기방식과 계산식방식
  - ・일체화방식과 도표방식
  - ・본문에 계산식이 두 개일 경우의 표시방법 : 병렬방식과 기호방식

- 개정방식
  - ・개별개정방식과 포괄개정방식

○ 계산식의 경우

- 규제・행정계획, 심의・심판 등 법령에 나타난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법령에 표시하는 방법
- 절차도의 법령적용의 완결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

- 입안방법
  - ・조문이나 항 등의 미세 절차보다는 규제・계획 등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절차도를 제시

· 장 또는 법령의 맨 끝에 제시
· 하나의 법령에 한정된 절차만을 단순제시하기보다는 포괄적인 관련 절차와 피드-백 절차 등도 함께 제시하도록 함
· 예시방식과 확정방식
· 본문 규정방식은 본문의 내용으로 '절차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제시하거나, 본문의 마지막에 '(절차도 예시 참조)'라고 제시하는 방법이 있음

- 개정방식
· 개별개정방식과 포괄개정방식
· 개정방식의 채택에 어려움이 있음(절차도의 개별 사항에 번호를 붙여서 개정사항에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개별개정의 경우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절차도에서 적시하는 개정문의 방식에 어려움이 있고, 포괄개정은 간단한 기간 또는 방식의 개정 등에 대하여 표 전체를 전면개정하는 것은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고, 비효율적임.

제 3 장 현행 법령의 시각화 도입 현황 및 시각화 활성화를 위한 도입 법령 사례 발굴

제 1 절 그림 도입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그림이 삽입된 경우

(1) 별표방식

현행 법령상 법령에 예시 혹은 확정의 방식으로 그림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두기보다는 별표 또는 서식의 방식으로 법령의 부록에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예는 다수의 법령에서 볼 수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 법령상 디자인 자체를 칼라로 직접 사용하여 표현하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색깔이 들어간 그림이나 이미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바로 구할 수 있어 법령 교육 등에 그림이나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편리함.

[별표]

우수산업디자인표지 · 작도법 · 표시방법(제8조관련)

1. 표지

(주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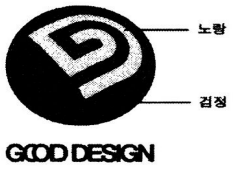

(최소크기규정)

(보조색)

현행 법령상 색깔이 지정된 그림이나 이미지 목록

연 번	해당 법령	내 용
1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남북회담대표등이착용하는 표지(태극기 문양)
2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통일부 문양
3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9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	태극기
4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3 등	깃봉의 제작방법, 게양법
5	나라문장규정 별표	나라문장 문양
6	상훈법 시행령 별표 2	훈장의 도형
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연금증서
8	국회표창규정 별표 1, 별표 2	표창
9	국회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5항	보안구역설정표지
10	국회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5호서식	문장으로 처리란 색깔 지정
11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별표 18	모범공무원표장
12	대통령포장에 관한 건(공고)	대통령포장도
13	정부표창규정 별표 1, 별표 2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4	모범공무원규정 별표	모범공무원표장

연 번	해당 법령	내 용
15	교도관기장령 별표	교도관기장
16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별표 2	피복 등의 제식
17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별표 2, 별표 8, 별표 9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18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2	온천 표시
19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양온천 표시
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 별표 6, 별표 8, 별표 10, 별표 13, 별표 14,별표 15, 별표 21, 별표 23, 별표 27 등	각종 도로교통표지 등
2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보호구역 도로표지
2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대피시설, 모자, 복제 등
23	소방공무원기장령 별표	소방기장
24	소방공무원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소방용수표지
25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에 관한 규칙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 별표 16, 별표 23	합격표시, 인증표시 등
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시

연 번	해당 법령	내 용
27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6,별표 7, 별표 8	통제선표지, 응급환자분류표 공동취재단표지
2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태극기 문양 등 사용
29	향토예비군부대기령 별도 1, 별도 2	부대기, 예식띠
3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국가유공자증서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2	참전유공자증서
3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5.18민주유공자증서
3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특수임무수행자증서
3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우수문화상품 표지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별표 3	비디오물의등급표시및 내용정보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각종 게임물 표시방법
3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우수게임상품 표시
38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신기술인증의 표시

연 번	해당 법령	내 용
3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40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표, 별표 2	방사선구역표지의예시도 포장 및 운반관계 표지 부표
4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입인지판매소표지판
42	통계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통계승인마크
43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교육프로그램및교육과정 인증표시
44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
45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별표 3의8, 별표 4, 별지 제4호의3서식 등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표지등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품, 각종인증서및지정서 등
46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47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귀표 모양
48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	방사선 구역표시
4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교육프로그램및교육과정 인증표시
50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연 번	해당 법령	내 용
51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표시
5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도, 별지 제2도	어업활동허가번호판, 시험연구승인번호판 표시기
53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1,별표2,별표4의2, 별표4의4,별표5, 별지제9호의8서식등	각종품질인증표지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 친환경수산물,지리적표시품등
5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별표 1	품질인증마크
5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품질인증서
5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물류설비인증의 표시
5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3호서식	신제품인증표시 신제품인증서
58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별표, 별지 제2호서식	우수산업디자인표지등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59	부품・소재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신뢰성인증표시 도표
60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국가통합인증마크
6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9, 별표 11	안전인증표시 자율안전확인표시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연 번	해당 법령	내 용
6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승강기 운행정지 안내문
6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실용신안등록증 등
6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등	디자인등록증 등
65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상표서비스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증등
6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설비인증표지
67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갱내 실측도
6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경계표석
69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5	안내판 및 표주
70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2	각종 인증 명판
71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표지기 및 표지, 표주 등
72	도로표지규칙 별표 3	도로표지
73	하천표지규칙 별표 1, 별표 2	하천명표지, 하천거리표지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별표 10	수로조사선의표지 측량기기검사필증

연 번	해당 법령	내 용
75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 제170조, 별표 4	대형건설기계의 특별도색 경고표지판
7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지 제12호서식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식품표시 건강친화기업,건강친화기업
7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78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잉크스탬프관인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
7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
80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	방사선구역표시
8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봉함
8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장애인보조견표지, 장애인생산품상징표기
83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8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지정 표시방법
8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생태 도안

연 번	해당 법령	내 용
86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환경보건센터 지정서, 센터 표시
8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5, 관련 별지서식	신기술표시 환경표지등의 표시
88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표시 (부처 심볼마크 CI)
89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안내판
9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유독물의 표시규격
9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의료폐기물
9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및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9의2	안전・보건표지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표시 의무안전인증대상이 아닌 기계 등의 표시
9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출입금지표지, 경고표지 석면함유잔재물 등의 처리시 표시
94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지 도식	표찰
9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
96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별표 5, 별표 5의3, 별표 14의5, 별표 29 등	자동차표시장치식별표시 고전원전기장치의경고표시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어린이보호표지등

연 번	해당 법령	내 용
97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지 제1호도식, 별지 제2호도식	표찰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국제연합번호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복제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따른 복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등에서 그림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외 다수>

(2) 본문방식

현행 법령에 본문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 비밀보호규칙
- 선박안전 조업규칙
- 우편법 시행규칙

※ 개별 조문별로 예시방식과 확정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종이 법령집에는 그림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그림생략]으로 표시되어 있다.

1) 예시방식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 4 조 (버킷의 용적) ④ 제2항에서 “평적선”이란 버킷 후판 윗면의 중심점과 굴삭날의 중심점을 연결한 직선을 말하고, “평적표면”이란 평적선의 양 끝점과 버킷 측판의 최저점을 곡면의 네 개의 점으로 하는 원통형태 중 평적면 아래의 부분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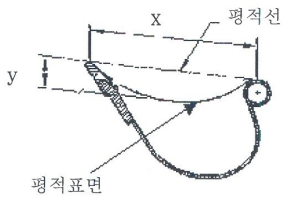

□ 제 7 조 (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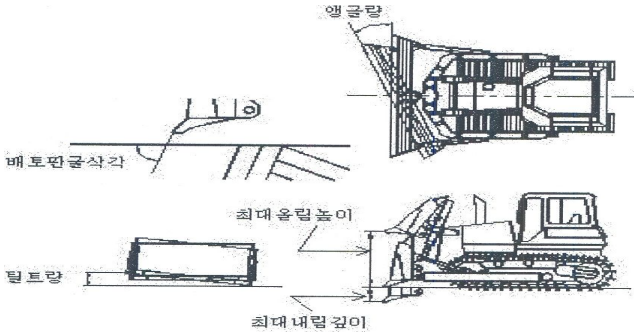

□ 제14조 (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 “로더의 전경각”이란 버킷을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버킷만을 가장 아래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로더의 후경각”이란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을 지면에 닿게 한 후 버킷만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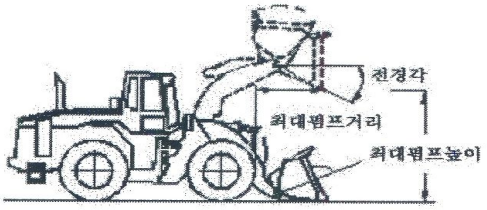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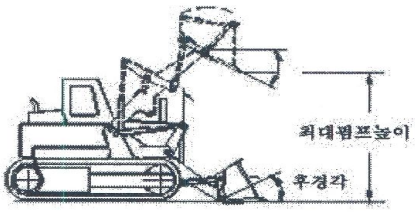

□ 제33조 (전도지선) ①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무한궤도의 하부트랙 롤러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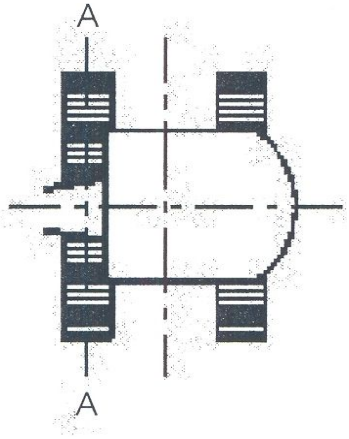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유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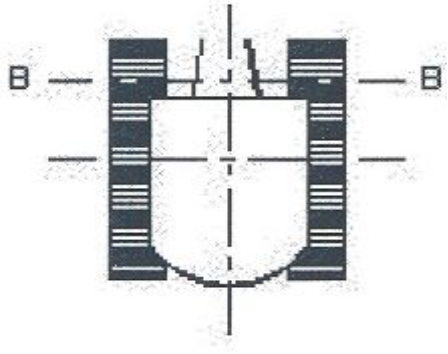

3.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기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

② 트럭적재식 및 휠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1>

1. 기중기의 좌측 또는 우측 방향 각각의 가장 전륜과 가장 후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이 조에서 “전후 바퀴 연결선”이라 한다)과 붐 수직면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 전도지선은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전후 바퀴 연결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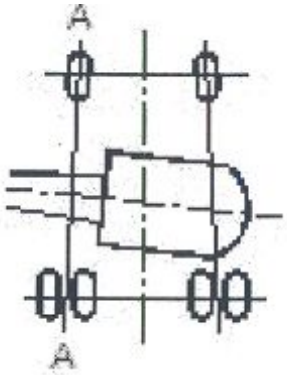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한 경우로서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가장 후륜의 축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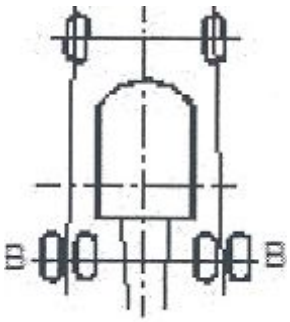

3. 기중기가 지면에 3점 지지된 상태인 경우 각각의 지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3변 가운데 붐 수직면과 직각을 이루는 일변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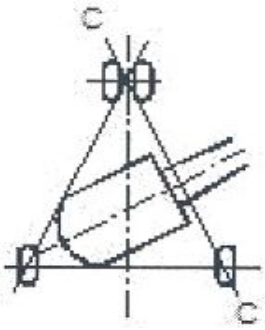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중기가 아웃리거를 사용하는 경우 아웃리거를 바퀴로 본다.

2) 확정방식

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드럼의 구동방식) ① “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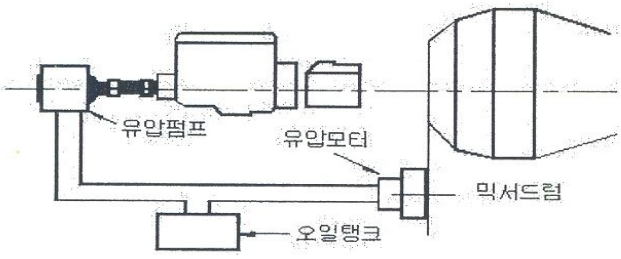

② “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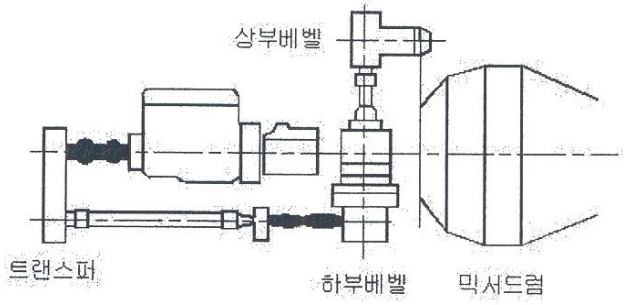

나)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표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1. 콘텐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화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나. 이용화면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우측 상단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다.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1초 이상의 정지화면으로 표시

라. 이용화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2.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나.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의 우측 상단에 그 겉표지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다.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 6 조 (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 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

②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③ 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건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곤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감 : **[문자 생략]**)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이 : **[문자 생략]**)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제21조 (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건 : **[문자 생략]**)괘가, 왼쪽에 이(이 : **[문자 생략]**)괘가 오도록 한다.

4) 비밀보호규칙 제44조 ③ 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발간 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그림 생략]

라) 우편법 시행규칙

제95조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표시) ①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4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림 생략] (지름 : 2.5센티미터 내지 3센티미터]

마)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 3 조 (어로한계선) ① 동해에서 어로(漁撈)를 할 수 있는 한계선(이하 “어로한계선”이라 한다)은 다음의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1. 북위 38도 33분 09.83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2.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 동경 132도 34분 17초)

② 서해에서 어로한계선은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1. 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끝단

2. ~ 19. <이하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로한계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부도 1 및 부도 2와 같다.

[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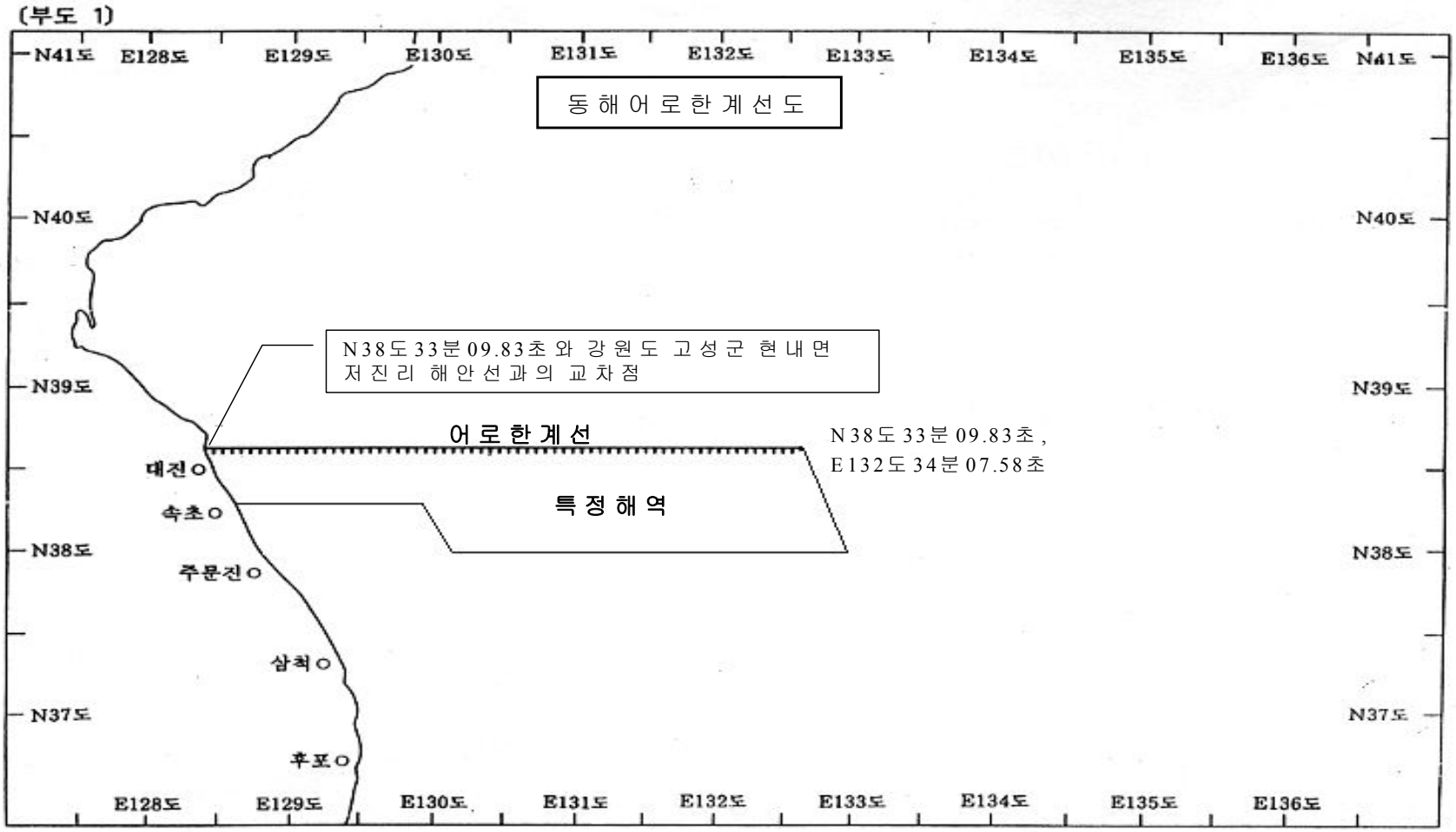
(부도 1)
N41도
E128도
E129도
E130도
E131도
E132도
E133도
E134도
E135도
E136도
동해어로한계선도
N40도
N39도
N38도
N37도
N38도33분09.83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어로한계선
N38도33분09.83초,
E132도34분07.58초
특정해역
대진
속초
주문진
삼척
후포

[부도 2]

(부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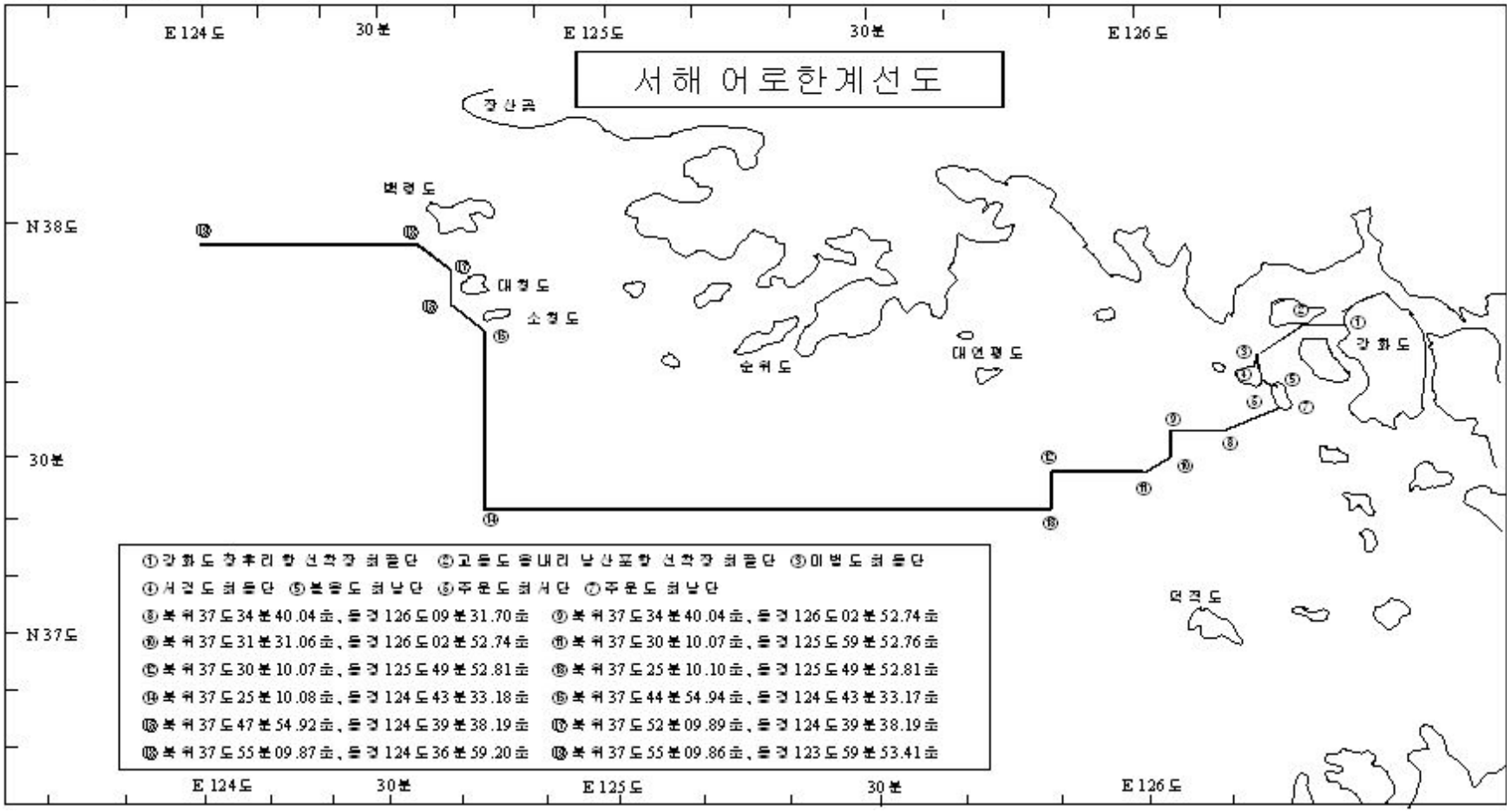
서해 어로한계선도
E 124도
30분
E 125도
30분
E 126도
N 38도
30분
N 37도
장산곶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순위도
대연평도
강화도
덕적도
①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끝단 ②고동도 응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 ③미법도 최동단
④서경도 최동단 ⑤분옹도 최남단 ⑥주문도 최서단 ⑦주문도 최남단
⑧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9분 31.70초 ⑨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
⑩북위 37도 31분 31.06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 ⑪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
⑫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⑬북위 37도 25분 10.10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⑭북위 37도 25분 10.08초, 동경 124도 43분 33.18초 ⑮북위 37도 44분 54.94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
⑯북위 37도 47분 54.92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 ⑰북위 37도 52분 09.89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
⑱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6분 59.20초 ⑲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3)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

고시・훈령 등의 행정규칙에는 본문에 구체적인 그림・표・계산식은 물론 절차도 등도 법령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사례] 「선박만재흘수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589호)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현용 길이(L)"**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방형계수"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말한다.

이 식에서

Cb는 방형계수

V는 금속제외판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형배수용적(부가물의 배수용적을 제외한다), 금속제외판 이외의 외판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선체의 외면에 대한 배수용적(세제곱미터)

L은 건현용 길이(미터)

B는 배의 너비(미터). 이 경우 다동선에 대하여는 선체 1개의 너비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d1은 기선으로부터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까지의 수직거리(미터)

12. "선루"라 함은 상부에 갑판을 가지는 건현갑판상의 구조물로서, 그 측벽이 한쪽 선측에서 다른 쪽 선측에 이르는 것 또는 선측외판에서 내측으로 향하여 배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그림 6 참조)**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선미루는 선루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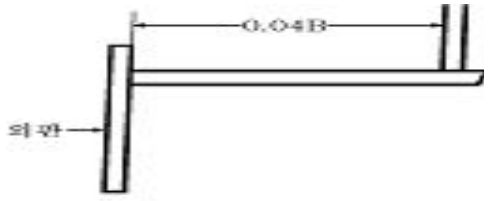

그림 6

18. “저선미루”라 함은 후부수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선루보다 낮은 높이의 선루로서 수밀의 전부격벽(유효한 안덮개가 설치된 비개방형 현창 및 볼트로 폐쇄되는 맨홀 커버를 갖는 전부격벽을 포함한다.)을 갖는 선루를 말한다. 이 경우, 전부격벽이 문 또는 출입구의 설치로 인하여 수밀이 되지 않는 경우, 이는 선미루로 간주된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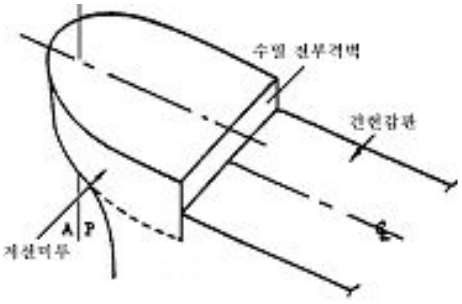

2. 반영가능한 그림 예시

- 정의규정 등에서 설명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
- 이미 별표 등에서 반영된 사항을 예시방안과 제시방안으로 나누어 본문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1) 예시방식

1) 본문의 내용이 길고 복잡하면서 괄호, 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나뉘어져 설명되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 또는 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법이 될 수 있다.

예1) 공직선거법 제64조 (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 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u><예시> : 그림 또는 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u>

* 게재내용	* 게재방법
1. 후보자(만)의 사진 2. 성명 3. 기호 4. 소속정당명(무소속) 5. 경력(학력 게재기준은 본문참조) 6.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7.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동 : 인구 500명에 1매 읍 : 인구 250명에 1매 면 : 인구 100명에 1매 규칙 : 인구 1천명에 1매로 조정 가능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

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권 총	소 총	기관총	포	엽 총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 (도검)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 및 예시와 같다.

(예시)

[칼날의 길이 15㎝ 이상의 도검류]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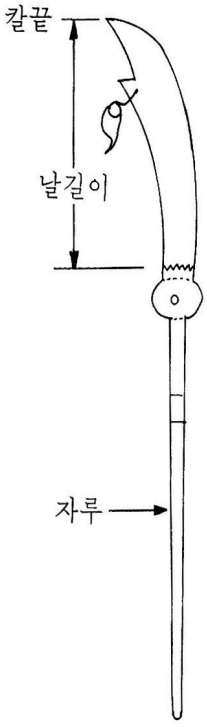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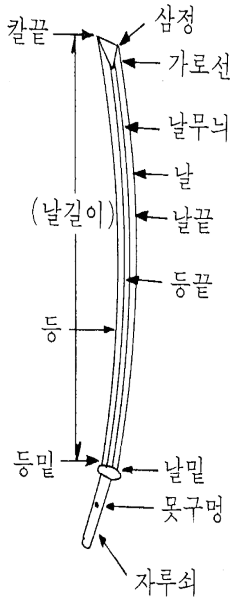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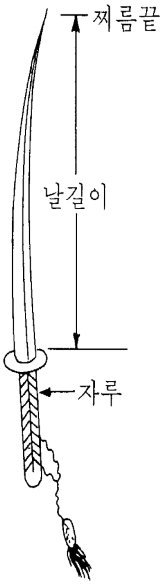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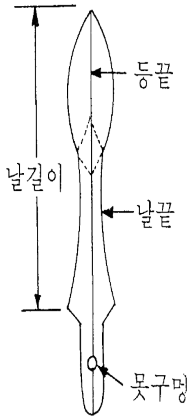

[칼날의 길이 15㎝ 이상의 도검류]			
5. 창	6. 치도	7. 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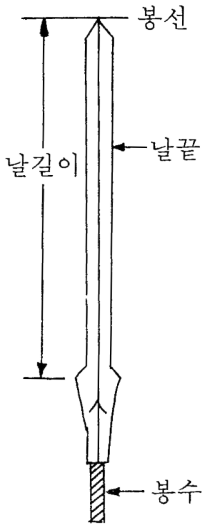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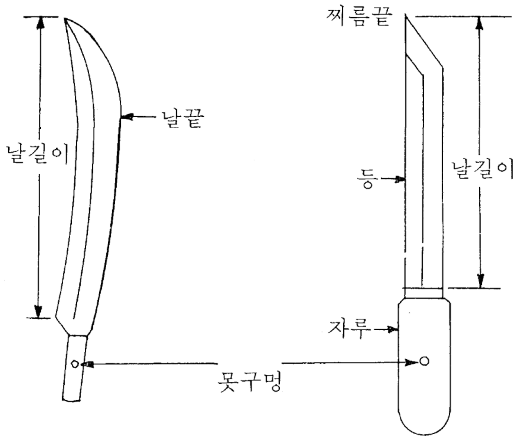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6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예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7 조 (신호등)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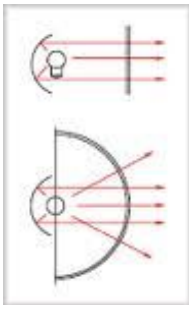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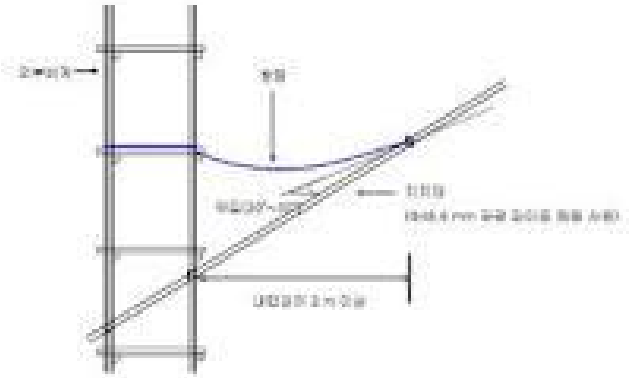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142조 (타워크레인의지지)

③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할 것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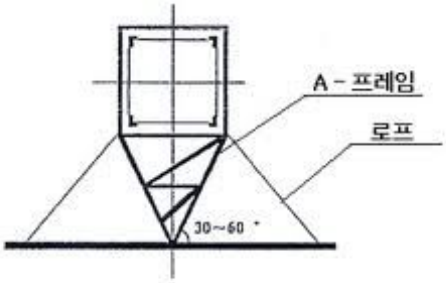

<그림 3> A-프레임과 로프 2개 방식

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 2 조 (정의)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예시> 축중과 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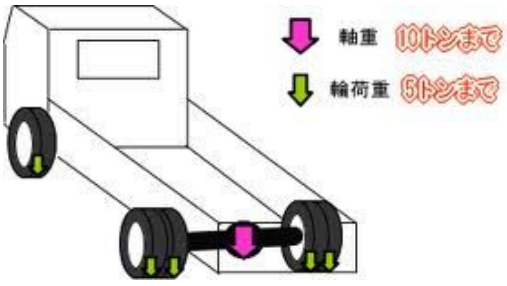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

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앞·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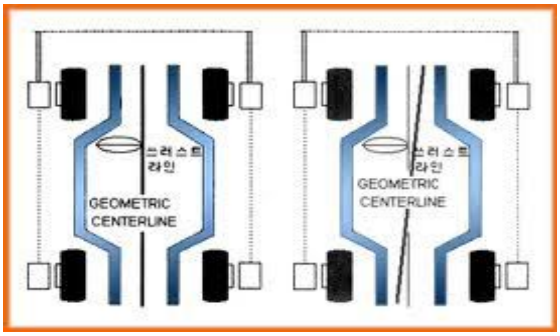

8. “풀트레일러”란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대부분을 해당 자동차의 차축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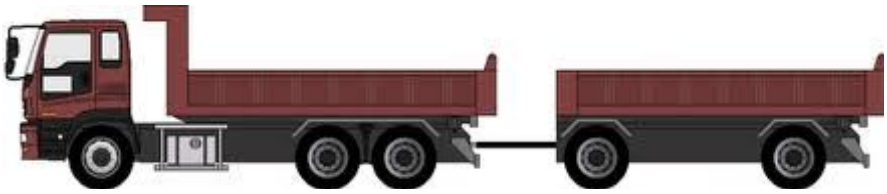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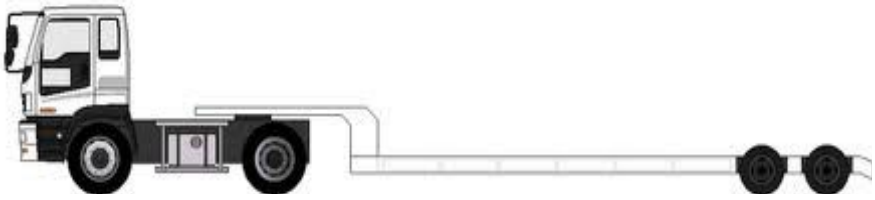

8의3. “세미트레일러”란 그 일부가 견인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예시)

10.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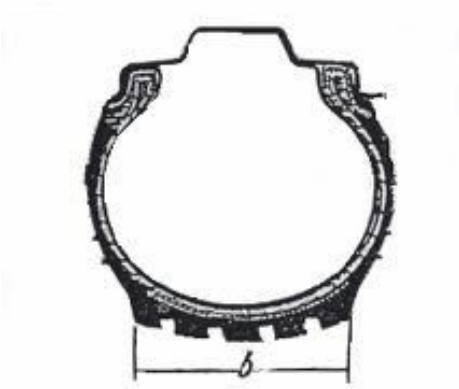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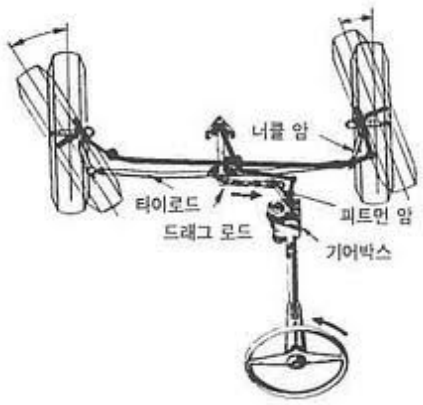

34. “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함은 운전자 및 승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층 구조로 하면서 위층에는 입석을 하지 아니하는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예시)

35. “굴절버스”란 각각 독립적인 차실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굴절이 되는 자동차로서 승객이 차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연결부분이 쉽게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예시)

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03조 (좌석안전띠장치 등)

②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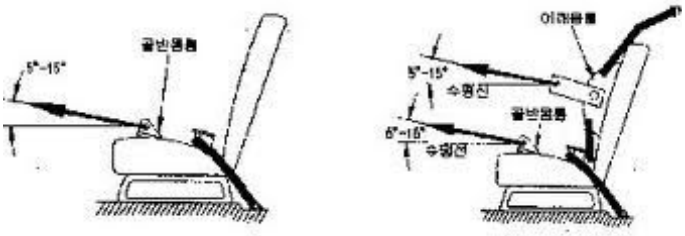

10) 선박법

제 1 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예시)

기 선	범 선	부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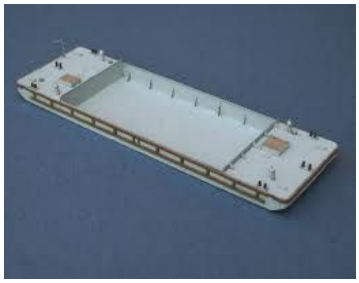

11)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 2 조 (정의)

1.~4. 생략

4. “건현”(乾舷)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 가운데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예시 1)

선고(height) : 기선에서 선박의 최고점까지의 수직거리
공기흘수(air draft): 수면상에서 선박의 최고점까지의 수직거리
깊이(depeth) : 선체중앙에 있어서 상갑판 현측상면에서 기선까지의 수직거리
건현(free board) : 흘수선에서 상갑판윗면까지의 수직거리
흘수(draft) : 선체가 수면의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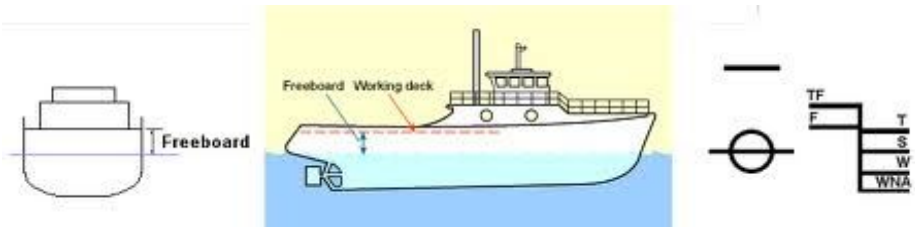

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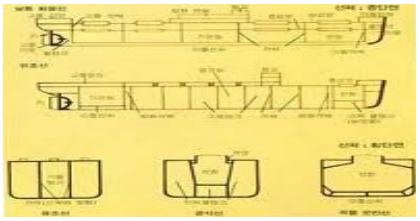

17. “정지각”(靜止角)이란 수평면과 그 물질의 원추 경사면 사이의 각도로서 비응집성물질의 최대 경사각을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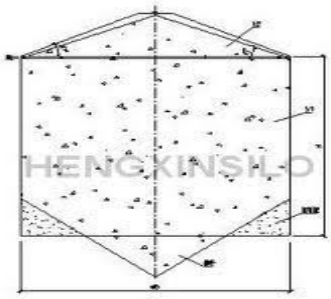

27.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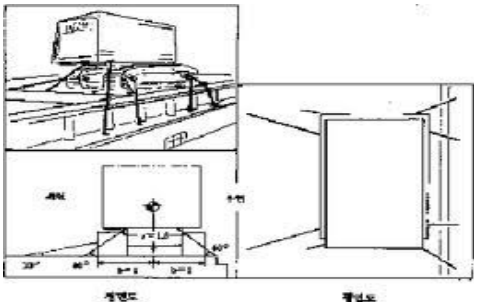

12)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21>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예시)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빈차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종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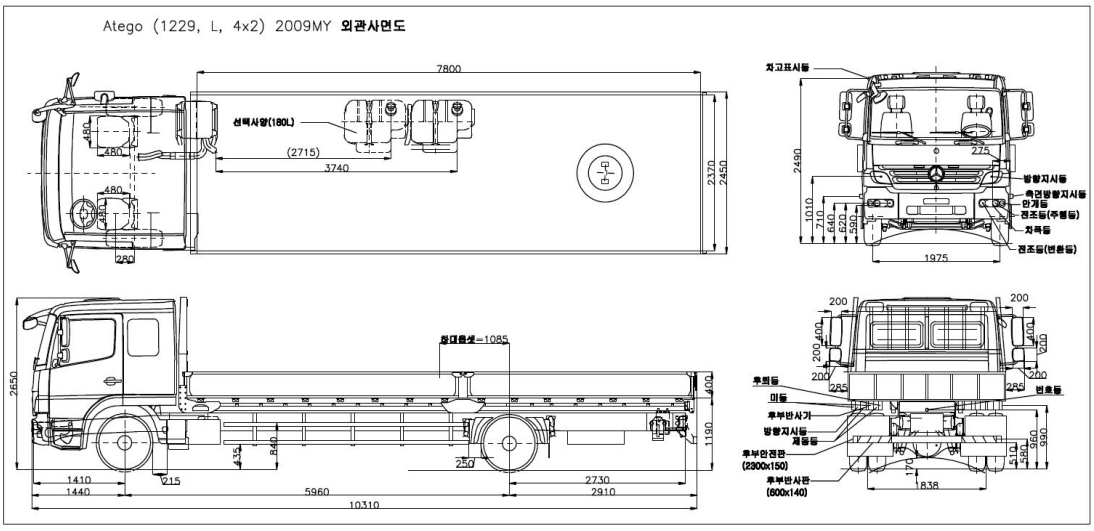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빈차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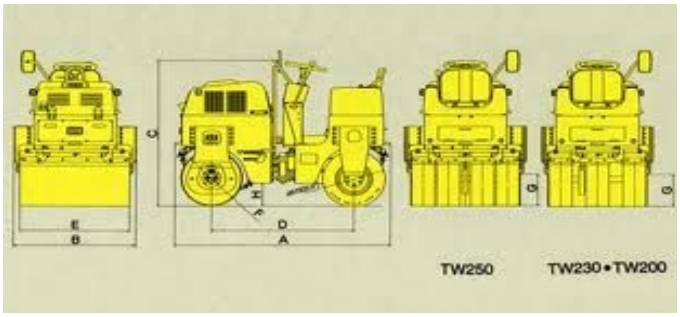

1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 조 (정의)

1.~5. 생략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예시)

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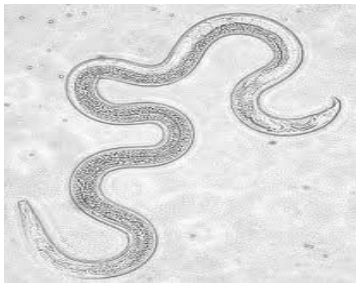

[소나무재선충]

15)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연결기)

① 철도차량의 양단에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연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편성차량은 선두 차량의 앞쪽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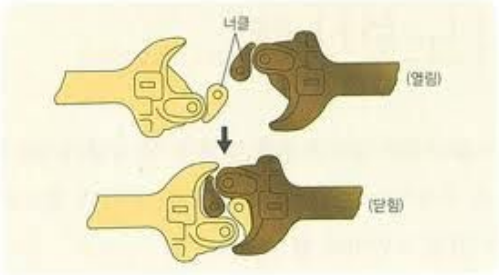

• 연결기 본체

16)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7 조 (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②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이 날아가는 각도가 수평각(水平角)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수평각 Θ 90도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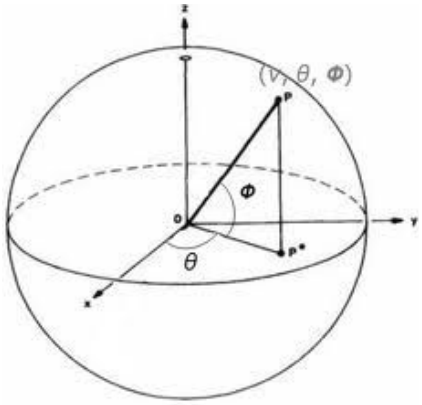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다음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PET	종이류 종이팩

18)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7 조의2 (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10조 또는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 전단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도로의 길이와 폭(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ㆍ끝지점ㆍ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과 기초번호
4. 도로구간의 도로에 부여할 도로명(이하 “예비도로명”이라 한다)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결정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의 시작지점ㆍ끝지점ㆍ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3. 도로명의 부여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예시 : 도로명 주소 부여방법)

1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 6 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제5호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안쪽 차로변 반지름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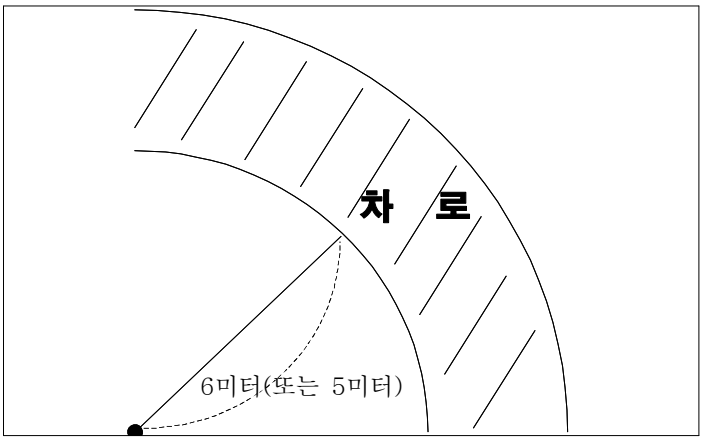

20)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 6 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 ① 제5호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다음 표와 같다

직선형		곡선형	
1차로	2차로	1차로	2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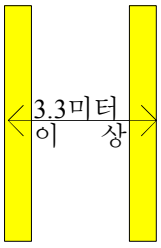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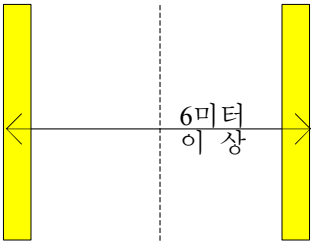	그림 삽입	그림 삽입
※ 노란색 부분은 **연석(沿石)【or 갓돌】**이며,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너비와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연석【or 갓돌】** 부분은 차로 너비에 포함됨.			

2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 6 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 ①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

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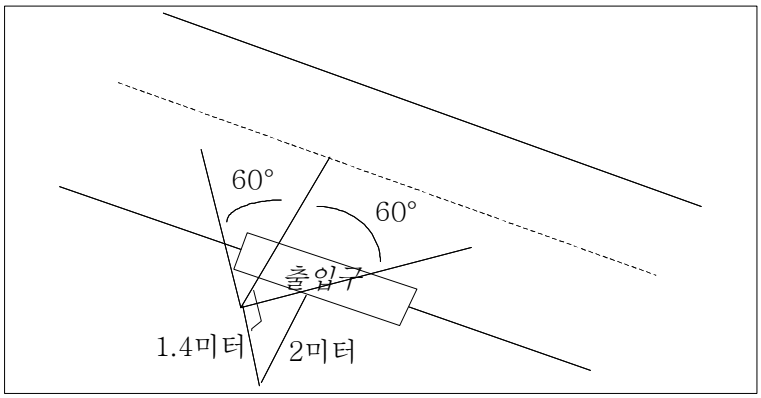

2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 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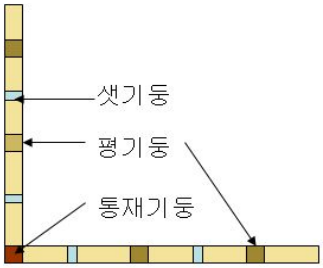

평면도

제25조 (가새) ① 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④ 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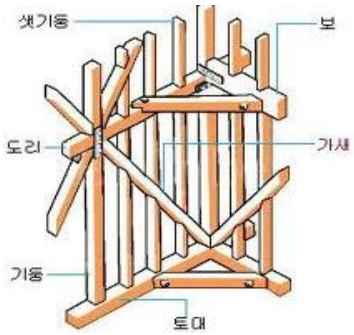

2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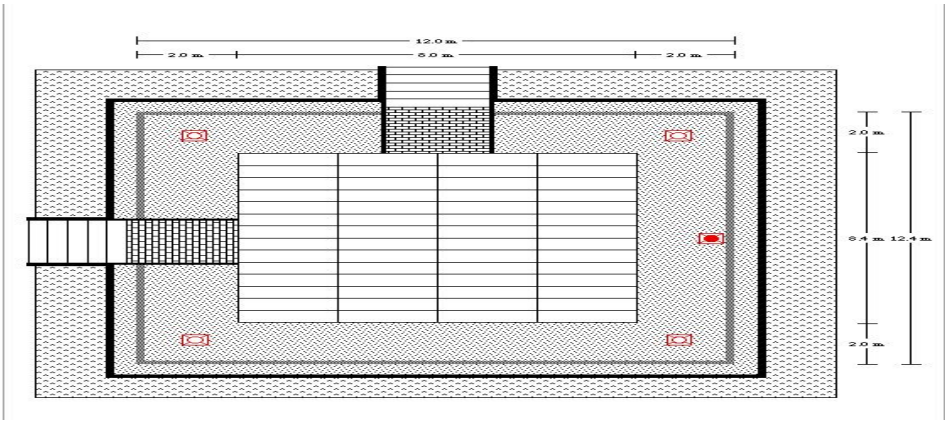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2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36조 (피뢰장치)

제36조 (피뢰장치)

4. 돌침 또는 가공지선의 가공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다. 피보호건물의 상단으로부터 돌침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돌침 또는 가공선은 피보호건물의 모든면과 돌침의 상단 또는 가공선의 어느 점과 연결하는 직선이 그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과 45도의 각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각도가 60도이내가 되도록 할 수 있다.

(1) 1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돌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중 2개의 돌침의 상단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대하여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다른 돌침의 상단을 통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2) 2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가공선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가공선의 양끝중 어느 한 끝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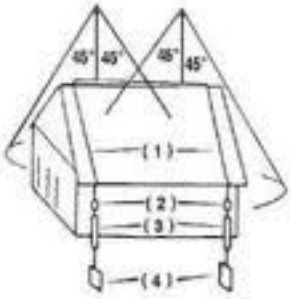

(1) 인하도선
(2) 시험단자
(3) 보호파이크
(4) 접지극(지중)

[위험물을 보유한 건물의 피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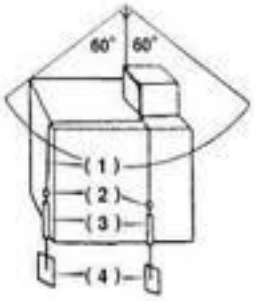

[건축법에 기초한 피뢰침]
(높이 20 m 이상)

2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9조 (복원성의 요건)

제 9 조 (복원성의 요건)

2. 복원력 곡선도에서 경사우력정곡선(직각좌표에서 가로축에는 선박의 횡경사각을, 세로축에는 선박의 경사우력정을 잡아 산적곡류의 가로 이동으로 인한 경사우력정을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과 복원력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 이 2개 곡선의 세로좌표의 차가 최대치로 되는 각도, 40도 또는 해수 유입각 중에서 최소 각도까지의 면적이 0.0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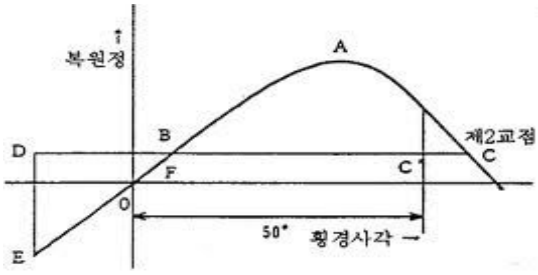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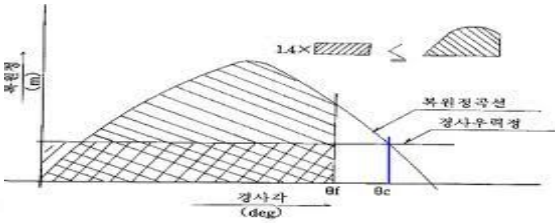

그림 6

26)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제 2 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에서 “가축외의 동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 (에뮤・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오소리 및 뉴트리아(이하 “가축외 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예시)

타 조	오소리	뉴트리아

27) 동물보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 · 말 · 돼지 · 개 · 고양이 · 토끼 · 닭 · 오리 · 산양 · 면양 · 사슴 · 여우 · 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예시)

산 양	면 양	사 슴

여 우	밍 크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 조 (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예시)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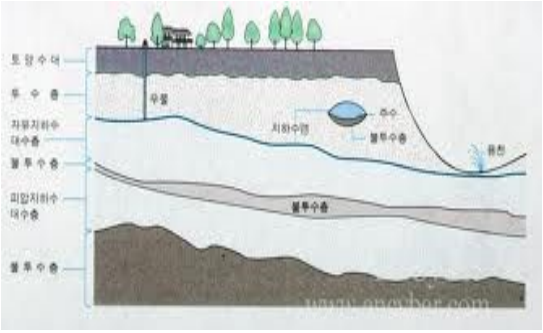	

하수관거	운하

2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 3 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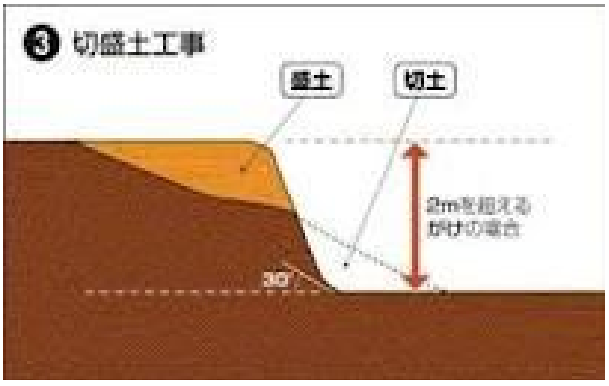

[절토(切土)와 성토(盛土)]

(2) 확정방식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6 조 (임시운행)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그림과 같은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임시운행번호표

임시 07-0001 (임시운행기간) 상 호 (출고지)

1. 번호판 크기 : 400mm×220mm
2. 재질 : 목판
3. 색칠 : 흰색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4. 번호 : 발행월별 일련번호(예 : 7월의 1호→07-0001)를 기재한다.
5. 상호 :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출고장소
6. 글자크기 : 임시 및 숫자 : 40mm×100mm
   임시운행기간 및 상호(출고지) : 40mm×40mm

※ 실제 색깔과 모양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전체를 금색으로 도금하되, 중앙에 태극문양을 에폭시 수지로 부착한다.

(단위 : 밀리미터)

2. 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전체를 금색으로 도금하되, 중앙에 무궁화꽃문양을 에폭시 수지로 부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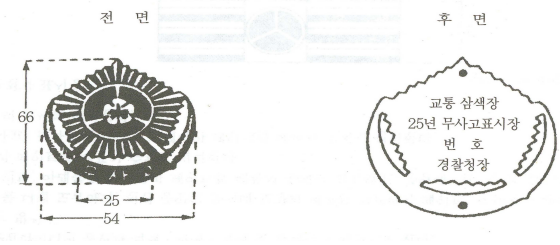

(단위 : 밀리미터)

3.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전체를 니켈 도금하되, 중앙에 “20”을 음각하고 감색 락카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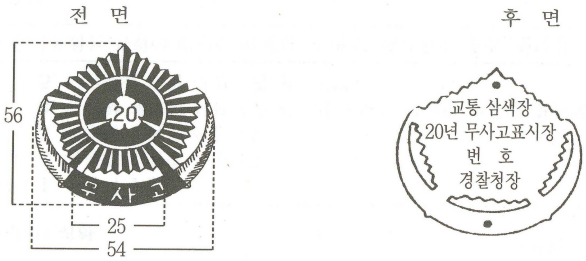

(단위 : 밀리미터)

4.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전체를 니켈 도금하되, 중앙에 “15”를 음각하고 감색 락카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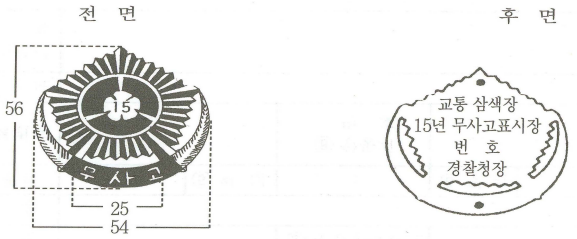

(단위 : 밀리미터)

5.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전체를 니켈 도금하되, 중앙에 “15”를 음각하고 감색 락카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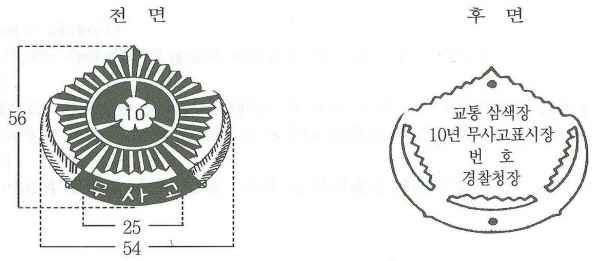

(단위 : 밀리미터)

② 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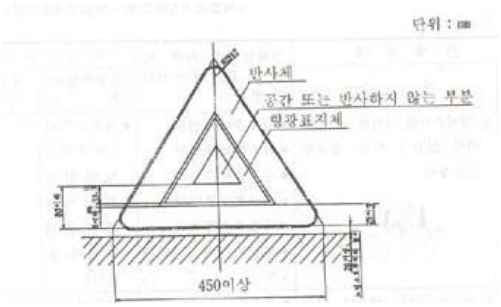

비 고

1.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R 5050 “자동차용 정지표지판”과 같다.
2. “*”는 반사체를 부착하는 틀이며, 5밀리미터 이하의 부분이 형광표지체와 동일재료인 경우는 형광표지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반사체를 부착하기 위하여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깥 틀의 3각의 꼭지점에 반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둥글기를 붙인다.

3. 법령 본문 그림 삽입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현행법상 그림의 규정방식은 예시 방식과 확정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즉, 예시 방식은 그림이 하나의 예로서 제시되는 것으로 법령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통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확정방식은 그림이 법령이 요청하는 전체의 내용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그림 이외의 다른 내용은 배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림을 본문에 반영하는 경우는 예시방법이 많이 활용될 것이며, 확정 방식은 기술기준 등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활용되거나, 표시나 지도 등과 같이 단일한 이미지로 구현이 가능한 분야가 될 것이다.

법령 본문에 그림을 삽입하는 입법방식은 법령정보화의 방안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안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그림의 효과가 본문과 별

표로 나누어 진 경우의 법령이해도의 증감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법문에 그림이 삽입될 경우에는 법령문의 증가로 법문의 절대분량의 증가를 초래하여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법령이 어렵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법령정보화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링크방식의 그림삽입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방안은 정보화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 2 절 법령 본문에 표를 삽입하는 방안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표가 삽입된 경우

표 방식은 일반적으로 별표와 서식의 형식으로 법령에 반영되어 있음.

(1) 표를 본문에 반영한 예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호 별	연간 총 매출액	세 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0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2)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 3 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4)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119조 (배선의 종류) ① 갑종탄광의 갱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등선·신호선과 전화선에는 케이블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다만, 입기측 권양기신호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선에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장갑케이블선을 사용할 것

가. 이동용 동력선은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하여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사 용 전 압	사 용 상 황	캡타이어케이블의 종류
600볼트미만의 전압	채탄기계등에 손상을 받을 염려가 많을 때	제4종
	기 타	제3종
250볼트미만의 전압	채탄기계등에 손상을 받을 염려가 많을 때	제3종
	기 타	제3종

나. 저압동력선으로 제3종의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다. 전기철도전용 갱도에서 궤조면으로부터 높이가 1.8미터이상인 전기철도용 급전선에 면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②을 종탄광 및 일반광산의 갱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으로 케이블·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지름 1.6밀리미터이상의 고무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애자로 받쳐서 철판·측면벽·풍문·지주등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저압동력선으로 케이블·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3. 고압전선에는 장갑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만, 고압용특별고무케이블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설계기준차량) ①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제원 자동차종별	길이	폭	높이	축거	앞내면길이	뒷내면길이	최소회전반결
소형자동차	4.7	1.7	20.	2.7	0.8	1.2	6.0
중·대형자동차	13.0	2.5	4.0	6.5	2.5	4.0	12.0

비고) 1. 축거: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면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뒷내면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 4 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구 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면 도	평 지	50
	산 지	40
리 도		40
농 도		40

제 5 조 (차선 및 차도) ①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 분	차선수
면 도	2
리 도	1
농 도	1

②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 분	차선폭(미터)
리 도	5.0
농 도	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 (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

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미터)

구 분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면 도 리 도 농 도	1.0 0.75 0.5	0.5 0.5 -

③ 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28, 2010.10.14>

⑤ 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8, 2010.10.14>

⑦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길어깨의 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구 분	보도의 최소폭(미터)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리 도 농 도	1.0 0.75	0.5 0.5

③ 보도에 노상사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

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6) 비밀보호규칙

제53조 (보안조치) ①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인적사항
2. 성명, 본적 및 주소(외국인일때는 국적), 생년월일, 직업, 비밀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장소
6. 자체보안책
7. 기타참고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비밀의 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자체보안책
6. 장소
7. 기타 참고 사항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 기 년 월 일		발간
발간업체명		전화( )
대 표 자		
인 가 근 거		
참 여 자	소 속	
	성 명	

6㎝

10㎝

④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제44조에 의한 비밀의 발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발간업체의 보안상 적격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아 발간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7)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0조 (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756킬로그램인 경우

최대적재중량 14,700 kg

2. 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 제100조 (와이어로프의 지름)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권상, 주행 및 횡행 등의 작동을 하는 장치(이하 이 절에서 “권상장치등”이라 한다)의 드럼피치원 지름과 해당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비 및 권상장치등의 시브피치원 지름과 해당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권상장치등의 이퀄라이저 시브피치원 지름과 해당 이퀄라이저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10 이상으로 하고, 과부하방지 장치용의 시브 피치원 지름과 해당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 구성	드럼피치원 지름/와이어로프 지름 또는 시브피치원 지름/와이어로프 지름
19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25 이상
24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20 이상
37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필라형 25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20 이상
필라형 29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워링톤 시일형 26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워링톤 시일형 31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 제102조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① 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트롤리 프레임 및 훅블록 등과의 연결은 배빗메탈 채움, 소켓 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 아이스플라이스 및 클립 고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 클립 고정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클립 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와이어로프 지름(㎜)	클립 수
16 이하	4개
16 초과 28 이하	5개
28 초과	6개 이상

□ 제104조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중량 및 시브의 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권상용 와이어로프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횡행용 와이어로프	5.0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	4.0

□ 제152조 (스위치, 페달 및 레버) ① 주요 페달 및 레버는 조종사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설치되어야 하고, 인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주요 페달 및 레버의 조작력과 행정거리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조작력(㎏)	행정(㎝)
속도가 60km/h 미만인 경우	페달	90 이하	30 이하
	레버	5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페달	70 이하	30 이하
	레버	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구 분		조작력(kg)	행정(㎝)
타워크레인	페달	50 이하	30 이하
	레버	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②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스위치 및 레버는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조종 중 접촉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페달의 표면은 미끄럽지 아니하고, 가장자리는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text{주 또는 1좌장 장부가액} = \frac{\text{구주식등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text{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3호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text{상가범위액} = \left(\text{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 초과액}\right) \times \frac{\text{당해사업연도의 채굴량}}{\text{총채굴예정량-변경전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28조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text{(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frac{12}{\text{사업연도의 필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text{대손실적률} =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text{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제80조의3 (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text{합병매수차익} =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월수}}{60\text{일}}$$

9)「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5 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과목	출제범위	배점배율
기초간호학개요 (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	40퍼센트

시험과목	출제범위	배점배율
	모성・아동・노인・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학개요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20퍼센트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 포함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20퍼센트
실기	병원간호 실기학	20퍼센트

10)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119조 (배선의 종류) ① 갑종탄광의 갱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등선・신호선과 전화선에는 케이블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다만, 입기측 권양기신호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선에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장갑케이블선을 사용할 것
   가. 이동용 동력선은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하여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사 용 전 압	사 용 상 황	캡타이어케이블의 종류
600볼트미만의 전압	채탄기계등에 손상을 받을 염려가 많을 때	제4종
	기 타	제3종
250볼트미만의 전압	채탄기계등에 손상을 받을 염려가 많을 때	제3종
	기 타	제3종

   나. 저압동력선으로 제3종의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다. 전기철도전용 갱도에서 궤조면으로부터 높이가 1.8미터이상인 전기철도용 급전선에 면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소송행위승인) ①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물가액과 승인권자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1993.10.7>

소송물가액	승인권자
2억원이상 5억원미만 사건	고등검찰청 검사장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사건	검찰총장
10억원이상 사건	법무부장관

② 이하 생략

12)「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교육성적의 평정점) ①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 ~ 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 ~ 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2.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②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2008.2.29>

성 적	평 정 점
A학점 이상 B학점 이상 D학점 이상	만점의 90퍼센트 만점의 85퍼센트 만점의 80퍼센트

2. 반영가능한 표 예시

(1) 지도도식규칙

1) 현행법령

제8조 (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지물・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명・도엽번호・인접지역 색인・행정구역색인・범례・발행자・편집연도・수정연도・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2) 개선안

제 8 조 (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표시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호	구 분	표시방법
1	지도의 내도곽 안쪽	지형・지물・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
2	지도의 외도곽 바깥쪽	도엽명・도엽번호・인접지역 색인・행정구역색인・범례・발행자・편집연도・수정연도・인쇄연도 및 축척 등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현행법령

제11조 (분양대금)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 시기에 받을 수 있다.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2.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3. 잔금: 사용승인일 이후. 다만,「건축법」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2) 개선안

제11조 (분양대금)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호	구 분	해당 시기
1	계약금	계약체결시
2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3	잔금	사용승인일 이후. 다만,「건축법」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의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3) 의료법 시행규칙

1) 현행법령

제 7 조 (수수료 등) ①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3. 등록증명 수수료 : 5백원

② ~ ⑤ 생략

2) 개선안

제 7 조 (수수료 등) ①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호	구 분	수수료
1	면허증 발급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2천원
3	등록증명	5백원

(4) 의료법 시행령

1) 현행 법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개선안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호	구 분	위탁 업무
1	의사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호	구 분	위탁 업무
2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5)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1) 현 행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량”이라 함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일평균 열차의 수(계속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1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 참조 : 별표1 철도교통량환산율

열차종별	환산율	기 사
입환차량및단기	0.5	
일반차량	1	

2. “도로교통량”이라 함은 건널목을 횡단하는 일평균 인마 및 차량의 수(계속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2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 참조 : 별표2 도로교통량환산율

종 별	환산율	기 사
보행자	1	
자전거	2	자전거 및 리어카
우마차	3	
2륜자동차	4	오토바이 · 원동기부자전거 · 경운기
3륜자동차	8	

종 별	환산율	기 사
4륜소형자동차	10	버스·트럭 이외의 보통자동차
4륜대형자동차	12	버스·트럭·특수자동차

3. “건널목시설물”이라 함은 건널목의 보안설비·교통안전표지 및 간수 처소를 말한다.

2) 개선안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량”이라 함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일평균 열차의 수(계속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다음 표에서 정한 철도교통량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호	열차종별	환산율	기 사
1	입환차량 및 단기	0.5	
2	일반차량	1	

2. “도로교통량”이라 함은 건널목을 횡단하는 일평균 인마 및 차량의 수(계속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다음 표에서 정한 도로교통량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호	종 별	환산율	기 사
1	보행자	1	
2	자전거	2	자전거 및 리어카
3	우마차	3	
4	2륜자동차	4	오토바이 · 원동기부자전거 · 경운기
5	3륜자동차	8	
6	4륜소형자동차	10	버스 · 트럭 이외의 보통자동차
7	4륜대형자동차	12	버스 · 트럭 · 특수자동차

3. “건널목시설물”이라 함은 건널목의 보안설비·교통안전표지 및 간수 처소를 말한다.

(6)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1) 현행법령

제 7 조 (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 교차화의 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체 교차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형 조건으로 인하여 입체 교차화 하기 곤란하거나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의하여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의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

※ 참조 :

[별표 4]

철도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의 기준

선로조건	도로의 노폭
단선일 때	6m 이상
복선 이상일 때	4m 이상

2. 기존의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

※ 참조 :

[별표 5]

도로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의 기준

철도교통량	도로의 노폭
30 미만일 때	10m 이상
30 이상 60 미만일 때	6m 이상
60 이상일 때	4m 이상

2) 개선안

제 7 조 (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 교차화의 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체 교차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형 조건으로 인하여 입체 교차화 하기 곤란하거나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의하여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의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

호	선로조건	도로의 노폭
1	단선일 때	6m 이상
2	복선 이상일 때	4m 이상

2. 기존의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

호	철도교통량	도로의 노폭
1	30 미만일 때	10m 이상
2	30 이상 60 미만일 때	6m 이상
3	60 이상일 때	4m 이상

※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로 본문으로 올려서 정비하는 것이 수범자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임

(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현행법령

제10조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1.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6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심야시간 운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개선안

제10조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고

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1안>

호	항공기 소음등급	소음부담금
1	제1등급 · 제2등급 · 제3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6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안>

호	항공기 소음등급	소음부담금
1	제1등급 · 제2등급 · 제3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 × 0.3
2	제4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 × 0.25
3	제5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 × 0.2
4	제6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 × 0.15

※ 제1안은 각 호의 내용을 표로만 정비한 것이고, 제2안은 표에 간단한 산식까지 포함하여 정비한 것임.

③ 이하 생략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 현행법령

제 9 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중형: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개선안

제 9 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09.12.2>

호	형 태	배기량	해당 승차정원
1	경 형	1,000cc 미만	5인승 이하
2	소 형	1,600cc 미만	5인승 이하
3	중 형	1,600cc 이상	5인승 이하
4	대 형	2,000cc 이상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5	모범형	1,900cc 이상	5인승 이하
6	고급형	3,000cc 이상	·

(9)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1) 현행법령

제 3 조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급 화약류

가.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나.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다.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라. 등급 1.4: 대폭발위험성·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바.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가. 제2.1급: 인화성 가스

나. 제2.2급: 비(非) 인화성·비 독성 가스

다. 제2.3급: 독성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 제4.1급: 가연성 물질

나.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다.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가. 제5.1급: 산화성 물질

나. 제5.2급: 유기과산화물

6. 제6급 독물류

가. 제6.1급: 독물

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 제7급 방사성 물질

8. 제8급 부식성 물질

9. 제9급 유해성 물질

2) 개선안

제 3 조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한다.

호	등급 및 종류	세분	내용
1	제1급 화약류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4	대폭발위험성·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제2.1급	인화성 가스
		제2.2급	비(非)인화성·비 독성 가스
		제2.3급	독성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	·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제4.1급	가연성 물질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제5.1급	산화성 물질
		제5.2급	유기과산화물
6	제6급 독물류	제6.1급	독물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	제7급 방사성 물질	·	·
8	제8급 부식성 물질	·	·
9	제9급 유해성 물질	·	·

(10)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4조

1) 현행법령

제34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험물의 송하인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번호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유기과산화물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명, 부위험성,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5. 위험물의 수량 및 질량 또는 용적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사전에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며, 제2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제16조의 위험물 명세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함과 아울러, 해당 위험물의 수납방법 및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 관련서류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또는 비세정빈용기인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개선안

제34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①~④ 생략

⑤ 해당 위험물 및 용기에 대하여 관련 서류에 다음 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호	종 류	기재사항
1	해양오염물질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2	폐기물	폐기물(WASTE)
3	소량의 위험물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4	극소량의 위험물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
5	회수용기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6	비세정빈용기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

(11) 주차장법 시행규칙

1) 현행법령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개선안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목	종 류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	비 고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3. 주차구획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목	종 류	주차구획의 크기	비 고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1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	

4. 운반기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목	종 류	운반기의 크기(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1.85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1.95미터 이상

5. (이하 생략)

(1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 9 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ㆍ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2) 개선안

제 9 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ㆍ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목조규모제한

호	구조형태		규 모
1	목구조	건축물의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
2	비보강조적조	건축물의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층높이	3층 이하
비고 : 스플링클러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1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18조 (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 개선안

제18조 (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45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2) 개선안

제45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다.

(단위 : kN/㎡)

호	지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1	경암반	화강암 · 석록암 · 편마암 · 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0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배로 한다.
2	연암반	판암 · 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혈암 · 토단반 등의 암반	1000	
3	자갈		300	
4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5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6	모래 또는 점토		100	

호	기 준	담의 구조
1	높 이	3미터 이하
2	두 께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내 부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1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2) 개선안

제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다.

호	옥내/옥외여부	철근의 종류	두께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60밀리미터 이상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50밀리미터 이상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40밀리미터 이상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슬래브, 벽체, 장	20밀리미터 이상
		보, 기둥	40밀리미터 이상

(1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58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개선안

제58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	건축물 종류	서 식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2) 개선안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호	기 준		내 용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와의 거리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간격	회전문과 문틀 사이	5센티미터 이상
		회전문과 바닥 사이	3센티미터 이하
3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		140센티미터 이상
4	회전문의 회전속도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자동회전문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비고 :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1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2) 개선안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호	시설 기준	복도의 유효너비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4미터 이상

(1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1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 개선안

제1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호	구 조	두 께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비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0) 하천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 9 조 (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유역특성조사: 하천유역의 지형・토양 등에 대한 조사
2. 하천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산업・경제・자원 등에 대한 조사
3.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현황・이수시설현황・물이동특성 등에 대한 조사
4.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5.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 조사. 이 경우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 자연환경, 습지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개선안

제 9 조 (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호	유역조사의 종류	내 용
1	하천유역특성조사	하천유역의 지형・토양 등에 대한 조사
2	하천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산업・경제・자원 등에 대한 조사
3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현황・이수시설현황・물이동특성 등에 대한 조사
4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비고 :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 조사의 경우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 자연환경, 습지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1) 하천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47조 (수문조사기기의 설치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계는 댐의 수위·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댐 상류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우량계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댐등의 집수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다. 집수지역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2) 개선안

제47조 (수문조사기기의 설치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계는 댐의 수위·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댐 상류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우량계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댐등의 집수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목	집수지역 면적 기준	설치 개수
가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	2개 이상
다	집수지역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22) 하천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6>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개선안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6>

호	용수의 종류	사용료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23)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18조 (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2. 소형차도로인 경우: 3미터까지 축소 가능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까지 축소 가능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개선안

제18조 (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표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호	도로의 형태	시설한계 높이 기준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2	소형차도로인 경우	3미터까지 축소 가능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까지 축소 가능

(24) 도로표지규칙

1) 현행법령

제 2 조 (도로표지의 구분)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2) 개선안

제 2 조 (도로표지의 구분) 도로표지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호	도로표지	내용
1	경계표지	도ㆍ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25)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1) 현행법령

제51조 (작업장의 소음 및 충격소음) ①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내에서의 작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최대소음의 강도가 115데시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장구의 착용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대소음의 강도가 90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 일 8시간이내의 노출
2. 최대소음의 강도가 90데시벨(dB)초과 95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 일 4 시간이내의 노출
3. 최대소음의 강도가 95데시벨(dB)초과 100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 일 2 시간이내의 노출
4. 최대소음의 강도가 100데시벨(dB)초과 105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 일 1 시간이내의 노출
5. 최대소음의 강도가 105데시벨(dB)초과 110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 일 30분이내의 노출

6. 최대소음의 강도가 110데시벨(dB)초과 115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 일 15분이내의 노출

②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내에서의 작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고, 충격소음의 강도가 140데시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장구의 착용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대충격소음의 강도가 115데시벨(dB)초과 120데시벨(dB)이하 : 1 일 1 만회이내의 노출
2. 최대충격소음의 강도가 120데시벨(dB)초과 130데시벨(dB)이하 : 1 일 1 천회이내의 노출
3. 최대충격소음의 강도가 130데시벨(dB)초과 140데시벨(dB)이하 : 1 일 100회이내의 노출

2) 개선안

제51조 (작업장의 소음 및 충격소음) ①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내에서의 작업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최대소음의 강도가 115데시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장구의 착용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	최대소음강도 범위	노출시간
1	90데시벨(dB)이하	1 일 8시간이내의 노출
2	90데시벨(dB)초과 95데시벨(dB)이하	1 일 4시간이내의 노출
3	95데시벨(dB)초과 100데시벨(dB)이하	1 일 2시간이내의 노출
4	100데시벨(dB)초과 105데시벨(dB)이하	1 일 1시간이내의 노출
5	105데시벨(dB)초과 110데시벨(dB)이하	1 일 30분이내의 노출
6	110데시벨(dB)초과 115데시벨(dB)	1 일 15분이내의 노출

(26) 주세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 2 조 (첨가재료의 종류) ② 제1항에 규정된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첨가재료의 종류(제2조제2항관련)

구 분	첨가물료의 종류
1. 당분	설탕(백설탕ㆍ갈색설탕ㆍ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ㆍ포도당(액상포도당ㆍ정제포도당ㆍ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ㆍ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ㆍ엿류(물엿ㆍ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ㆍ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ㆍ올리고당류 또는 꿀
2. 산분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ㆍ글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 또는 탄닌산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 향료	퓨젤유ㆍ에스테르류ㆍ알데히드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5. 색소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

2) 개선안

제 2 조 (첨가재료의 종류) ② 제1항에 규정된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호	구분	첨가물료의 종류
1	당분	설탕(백설탕ㆍ갈색설탕ㆍ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ㆍ포도당(액상포도당ㆍ정제포도당ㆍ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ㆍ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ㆍ엿류(물엿ㆍ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ㆍ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ㆍ올리고당류 또는 꿀
2	산분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ㆍ글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 또는 탄닌산

호	구분	첨가물료의 종류
3	조미료	아미노산류 · 글리세린 · 덱스트린 · 홉 · 무기염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	향료	퓨젤유 · 에스테르류 · 알데히드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5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

(27) 주세법

1) 현행법령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선안

제21조 (과세표준)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대상 주류		과세표준
주정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주정 외의 주류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비고: 해당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

과세대상 주류		과세표준
	출고하는 경우	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28) 선박안전 조업규칙

1) 현행법령

제 4 조 (성어기의 설정 등) ① 어획고의 증대와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성어기(盛漁期)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동해

가. 명태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나. 오징어 성어기 :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서해

가. 오징어 성어기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 홍어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 병어 성어기 :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꽃게 성어기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개선안

제 4 조 (성어기의 설정 등) ① 어획고의 증대와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성어기(盛漁期)를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다.

호	구 분	종 류	성어기
1	동해	명태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까지
		오징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서해	오징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홍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병어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호	구 분	종 류	성어기
		꽃게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 해상교통안전법 제6조의7

1) 현행법령

제 6 조의7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가 제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진단업무를 계속한 경우
9.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개선안

제 6 조의7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진단대행업자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등록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제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진단업무를 계속한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30)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1) 현행법령

제11조 (인증심사) ①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행하는 심사
3. 중간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 수시인증심사 :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

2) 개선안

제11조 (인증심사)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호	구 분	정 의
1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행하는 심사
3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	수시인증심사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

(3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1) 현행법령

제38조의2 (안개등) ① 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1.17]

2) 개선안

제38조의2(안개등)

자동차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 표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하고, 자동차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 표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표1]

호	안개등 설치구분	자동차의 앞면
1	비추는 방향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구조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표 2]

호	안개등 설치구분	자동차의 뒷면
1	설치 개수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광색	적색
5	등화의 중심점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호	안개등 설치구분	자동차의 뒷면
6	1등당 유효조광면적	14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구조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표시장치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안개등 점등시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1) 현행법령

제40조 (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2) 개선안

제40조 (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호	구 분	차폭등 기준	
1	1등당 광도	등화중심선의 위쪽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 이하
		등화중심선의 아랫쪽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
2	등화의 중심점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33)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

1) 현행법령

제15조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조제32호나목 및 제33호나목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점간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전문개정 2009.9.10]

2) 개선안

제15조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조제32호나목 및 제33호나목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	구 분	부정기편 운항
1	지점 간 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 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

호	구 분	부정기편 운항
3	전세 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33)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

1) 현행법령

제16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기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手荷物)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로부터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조업사업: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 대여,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9.10]

2) 개선안

제16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 취급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	구분	항공기취급업
1	항공기 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 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手荷物)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로부터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 조업 사업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 대여,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3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1) 현행법령

제 4 조 (안전한 속력) 선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시계의 상태
2. 해상교통량의 밀도
3. 선박의 정지거리 · 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
4. 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 바람 · 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8. 해면상태 · 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9. 레이다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 · 위치 및 동향

2) 개선안

제 4 조 (안전한 속력) 선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	고려사항	비 고
1	시계의 상태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
2	해상교통량의 밀도	
3	선박의 정지거리 · 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	
4	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	바람 · 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8	해면상태 · 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9	레이다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 · 위치 및 동향	

(35) 해운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가격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3.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건조 자금 중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2) 개선안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따른다.

호	구 분	보조 또는 융자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가격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3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건조 자금 중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제 3 절 법령본문에 산식을 삽입하는 방안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산식이 삽입된 경우

(1) 국세기본법

1)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4) 소득세법

1)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65조 (중간예납)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3)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0.12.27>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4)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5)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 제3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 ①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접지압} = \frac{\text{운전중량(킬로미터)}}{\text{트랙의수} \times \text{슈폭(센티미터)} \times \text{접지길이(센티미터)}}$$

② 제1항에서 "접지길이"란 텀블러중심간거리와 무한궤도 높이(기동륜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무한궤도 윗면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2) 제4조 (버킷의 용적) ① 버킷에 담을 수 있는 용적은 평적 및 산적으로 구분하고, 버킷의 용적 표시는 산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평적"이란 버킷의 평적면 또는 평적표면 아래 부분의 용적을 말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평적 = S1 · W1 (x/y ≥ 12 인 경우)

평적 = S1 · W1 · (1-y/x) (x/y 〈 12 인 경우)

W1 : 버킷의 양쪽 측판 내측 사이의 최단거리

S1 : 버킷 한쪽 측면 중 평적면 아래 부분의 단면적(x/y 〈12 인 경우에는 실제 버킷의 단면적을 말한다)

x : 평적선의 길이

y : 평적면으로부터 평적표면 최저점까지의 최단거리

③ 이하 생략

3) 제24조 (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 ① 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최소파단하중비=(체인의 최소파단하중×체인수)/(지게차의 최대하중＋체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리프트 작업장치의 중량)

② 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은 최소파단하중비가 5 이상이어야 한다.

4) 제146조 (타이어 부하율) ① 타이어 부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겹 타이어인 타이어의 수는 2로 한다

$$\text{타이어 부하율} = \frac{\text{축하중}}{\text{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 \times \text{타이어의 수}} \times 100$$

② 제1항에 따른 타이어 부하율은 최대적재중량 상태와 빈차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③ 건설기계의 타이어 부하율은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대적재중량 상태일 때 조향축 외의 축의 타이어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및 N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값은 이륙·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 중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2. N값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_1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_2 ,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_3 ,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_4 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공항을 이륙·착륙하는 비행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항공법」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수요를 기

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항공 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출연금의 50퍼센트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④ 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2. 기관운영경비
3.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반영가능한 산식 예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식>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예시안 1 :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 예시안 2 :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1) −총비용2)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1)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한정

2)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 예시안 3 :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A + B - C) × r

A :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B :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

C :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r :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① 제8조제9호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과세표준} = \frac{\text{동종·동질물품의 판매금액의 합계}}{\text{동종·동질물품의 판매수량의 합계}} \times \text{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기준초과배출량 =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 배출기간의 일수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배출량 =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 - 배출허용기준농도) ×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

기준초과배출량 = ∑ 반기별(半期別) 초과배출량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4) 국세기본법

1) 현행법령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개선안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총액 또는 출자총액〕 ×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5) 관세법 제69조

1) 현행 법령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선안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100 - 해당물품의 기본세율) + 기본세율

(6) 관세법 제71조

1) 현행 법령

제71조 (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선안

제71조 (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 - 40/100

(6) 소득세법

1) 현행 법령

제 4 조 (소득의 구분) ①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개선안

제 4 조 (소득의 구분) ①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7) 소득세법 제35조

1) 현행법령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개선안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 / 12

(8) 소득세법 제58조

1) 현행 법령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2) 개선안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 자산상실비율(상실된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자산상실비율(상실된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9) 소득세법 제65조

1) 현행 법령

제65조 (중간예납)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2) 개선안

제65조 (중간예납)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10) 소득세법 제115조

1) 현행 법령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

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 개선안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기장 불성실 가산세 =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산출세액) × 10/100

(11) 소득세법 제118조의6

1) 현행 법령

제118조의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개선안

제118조의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12) 소득세법 제136조

1) 현행법령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개선안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 -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여등의 금액/지급대상기간) +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

(1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현행법령

제53조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개선안

제53조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표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

(단위 : ㎜)

지지조건	주변이 고정된 슬래브	캔틸레버 슬래브
$\beta \le 2$의 경우 (2방향 슬래브)	$\ell n / (36 + 9\beta)$	-
$\beta > 2$의 경우 (1방향 슬래브)	$\ell / 28$	$\ell / 10$

비고 β : 슬래브의 단변에 대한 장변의 순경간(純徑間) 비
ℓn : 2방향슬래브 장변의 순경간(㎜)
ℓ : 1방향슬래브 단변의 보 중심간 거리(㎜)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현행법령

제11조 (점용·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면적은 직접 점용·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용·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 개선안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면적 = 직접 점용·사용하는 면적
+ 간접 점용·사용하는 면적

(1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현행법령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개선안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⑤

1. 거래금액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보증금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 = (월 단위의 차임액 × 70) + 보증금

(16) 관광진흥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53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 ·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2) 개선안

제53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은 계산식으로 한다.

건설비용 = 공사비(조사측량비 · 설계비 및 관리비 제외) +보상비(감정비 포함)

(17) 교육세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 4 조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2) 개선안

5. 다음 계산식 후의 순이익

순이익 = 외환 매매손익 +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비고 : 외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58조

③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개선안

제58조

③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한다.

조성원가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현행법령

제 2 조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개선안

제2조

8.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 3 조 (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개선안

제 3 조 (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 기타소득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현행법령

제68조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2) 개선안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22) 근로복지기본법

1) 현행법령

제41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제1호가 제2호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신규로 발행하는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수

2) 개선안

제41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제1호가 제2호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식수 =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 신규로 발행하는 우선배정 주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2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현행법령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2) 개선안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다. 1인당 월평균 소득액(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 가구원수)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24)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1) 현행법령

제 6 조 (비과세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 개선안

제 6 조 (비과세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감면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 {감면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 현행법령

제 8 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개선안

제 8 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과세표준=(A — 6억원) × B

A: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B: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26)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1) 현행법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개선안

제13조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구 분	계산식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A — 5억원) × B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A —80억원) × B

A: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B: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 8 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2) 개선안

제 8 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 자동차 대수	교통사고 건수
300대 미만	1건 이상
300대 이상 600대 미만	2건 이상
600대 이상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가 다음 표에 나타난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교통사고지수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다).

$$\text{교통사고지수} = \frac{\text{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text{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 \times 10$$

구 분	교통사고지수
시내버스운송사업 ·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4 이상

구 분	교통사고지수
시외버스운송사업	3 이상((운행형태 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	2 이상
전세버스운송사업	2 이상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이상

(28) 국민건강보험법

1) 현행법령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개선안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사용자 등
근로자: $\frac{50}{100}$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 $\frac{50}{100}$
공무원: $\frac{50}{100}$	소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frac{50}{100}$
교직원: $\frac{50}{100}$	소속 사립학교의 설립 · 운영자: $\frac{30}{100}$(부족액은 학교의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 $\frac{20}{100}$

(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1. 연·분기·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2) 개선안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1. 연·분기·월·주 또는 그 밖의 일정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frac{A}{B} \times 30$$

A: 연·분기·월·주 또는 그 밖의 일정 기간으로 정해지는 보수액

B: 그 기간의 총일수

(30)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1) 현행법령

제 5 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3조 각 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8.14, 2009.12.31, 2010.3.19>

2) 개선안

제 5 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frac{(A - B) \times C}{12}$$

A: 제3조 각 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

B: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

C: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률

※ 괄호안의 금액(A - B)이 0보다 적을 때에는 0으로 한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현행법령

第17條 (課徵金)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8 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나. 삭 제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2) 개선안

제17조 (과징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frac{\text{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times \left(\frac{20}{100} - \text{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right)}{\text{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or

$$\frac{\text{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times \left(\frac{20}{100} - A\right)}{A}$$

※ A: 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frac{\text{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times \left(\frac{40}{100} - \text{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right)}{\text{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or

$$\frac{\text{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times \left(\frac{40}{100} - A\right)}{A}$$

※ A: 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3. 제8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frac{\text{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times \left(\frac{20}{100} - \text{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right)}{\text{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or

$$\frac{\text{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times \left(\frac{20}{100} - A\right)}{A}$$

※ A: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

$$\frac{\text{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times \left(\frac{40}{100} - \text{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right)}{\text{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or

$$\frac{\text{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times \left(\frac{40}{100} - A\right)}{A}$$

※ A: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32) 고용보험법

1) 현행법령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개선안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② 연장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1조에 따른 훈련연장급여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frac{100}{100}$
2.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frac{70}{100}$
3.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frac{70}{100}$

or

② 연장급여일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에 따른 훈련연장급여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frac{100}{100}$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frac{70}{100}$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	

(33) 고용보험법 시행령

1) 현행법령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재취직한 때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2) 개선안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구직급여일액 \times 미지급일수 \times \frac{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구직급여일액 \times 미지급일수 \times \frac{2}{3}$$

1. 재취직한 때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현행법령

제33조 (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②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수당은 1명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개선안

제33조 (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②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명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times \frac{70}{100}) + 월\ 3만원의\ 교통비$$

제 4 절 절차도 도입

1. 현행 법령상 절차도 예시

(1) 법령에 반영된 경우

1)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품질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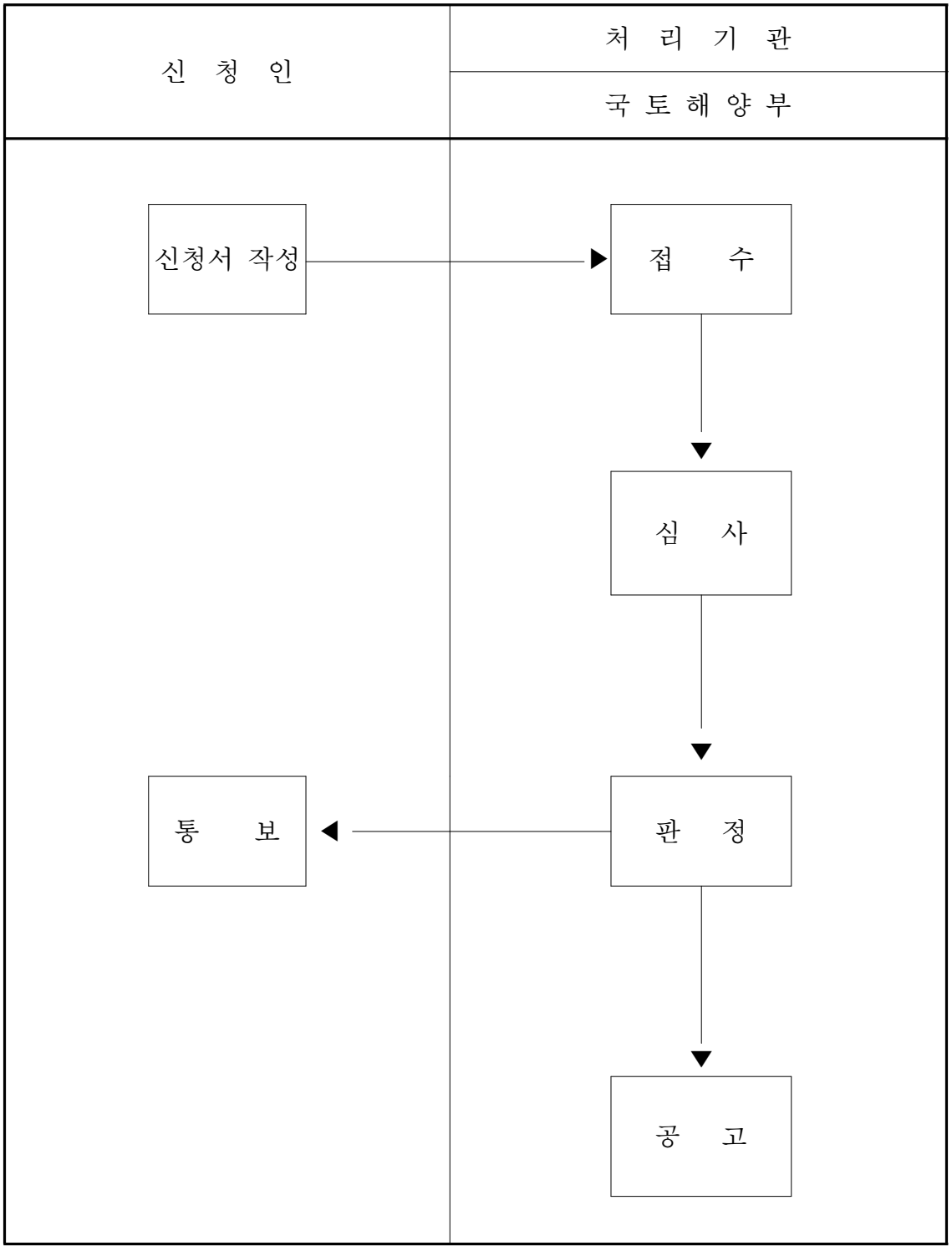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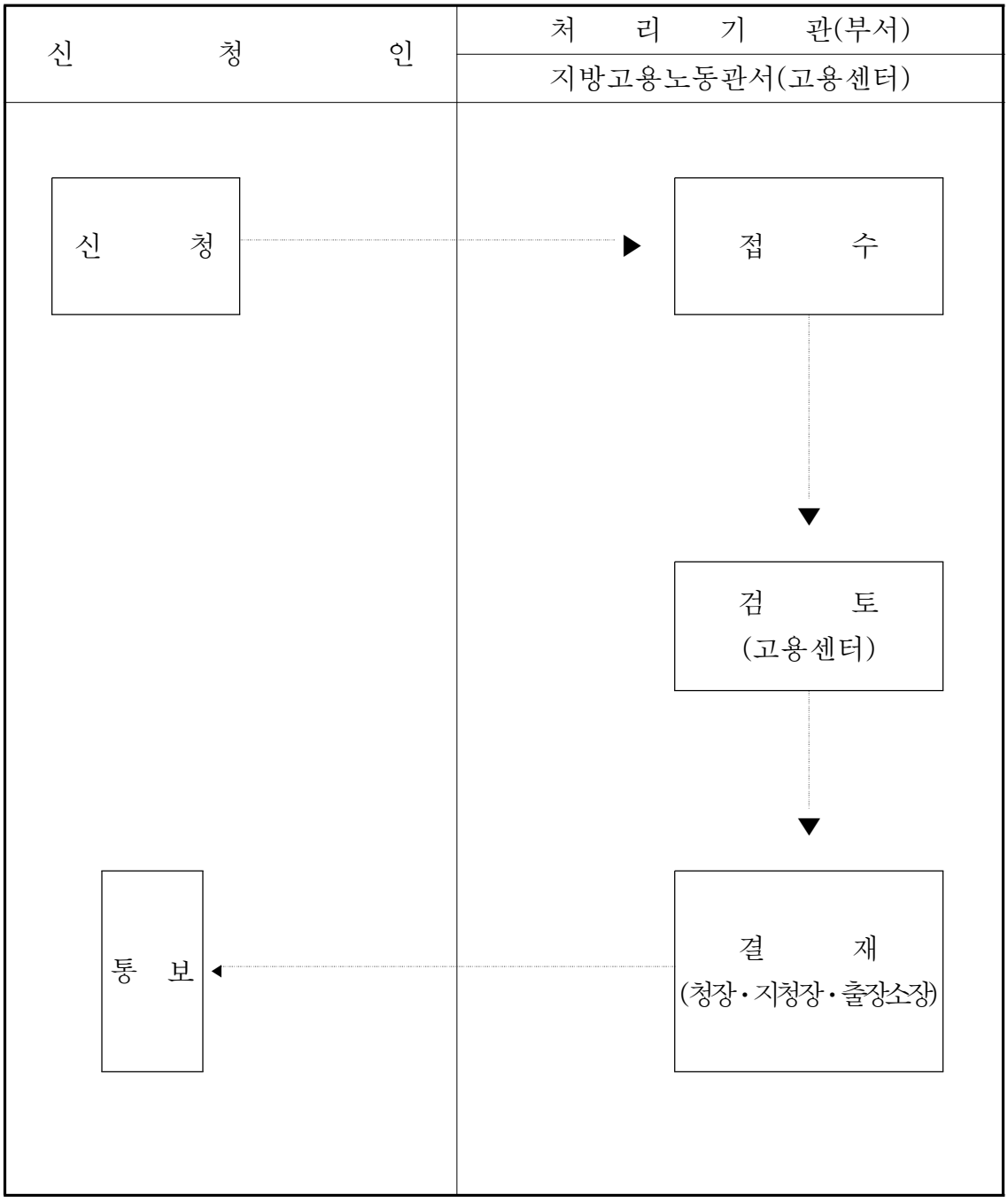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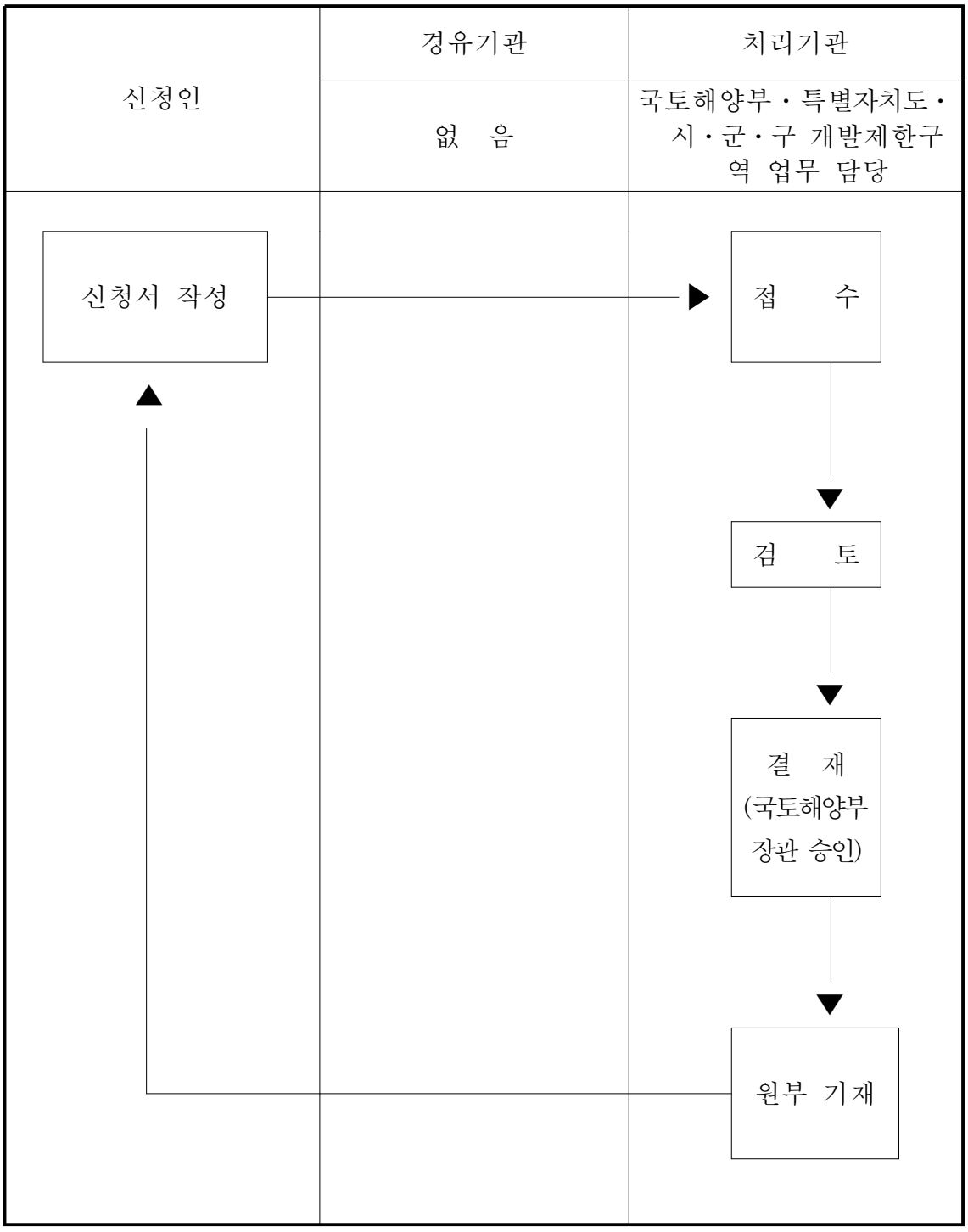

4) 「골재채취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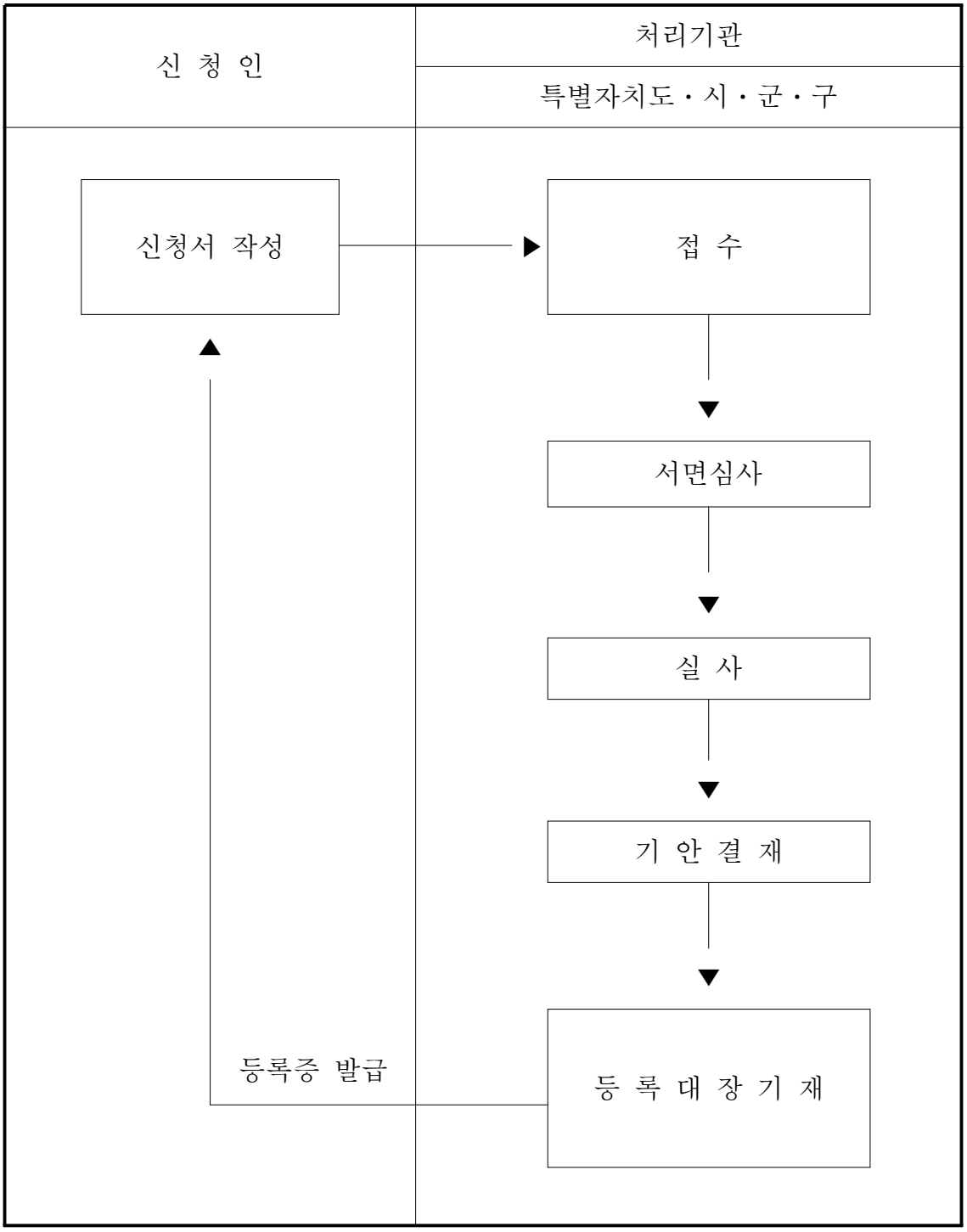

(2)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

1) 「도로교통량 조사 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01호)

5.3 상시조사 장비의 유지 관리

3) 수시 점검

일상 점검이나 정기 점검에서 장비의 이상이 발견될 경우, 장비 이상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장비 각 부분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할 경우 등과 같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이다. 즉, 센서의 감도나 전자 장치, 모뎀 장치 내부 등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의 점검을 실시하여 부품의 수리 및 교체 여부 판단, 소요 비용 산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그림 5-1>은 상시조사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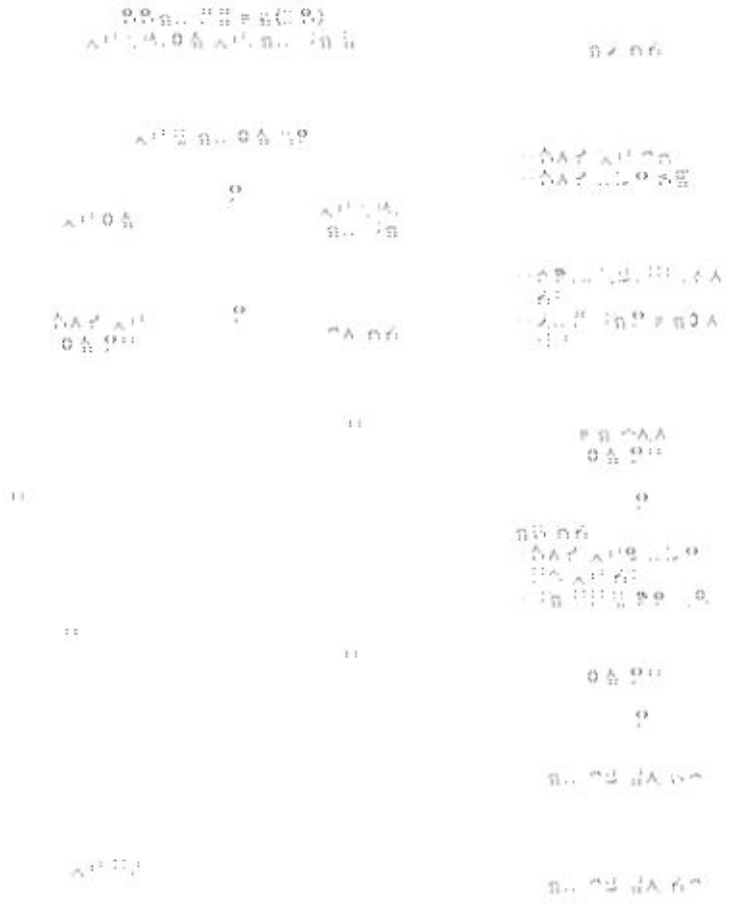

2. 본문에 반영가능한 절차도/흐름도 예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개요도]

① 공익사업의 준비(제9조부터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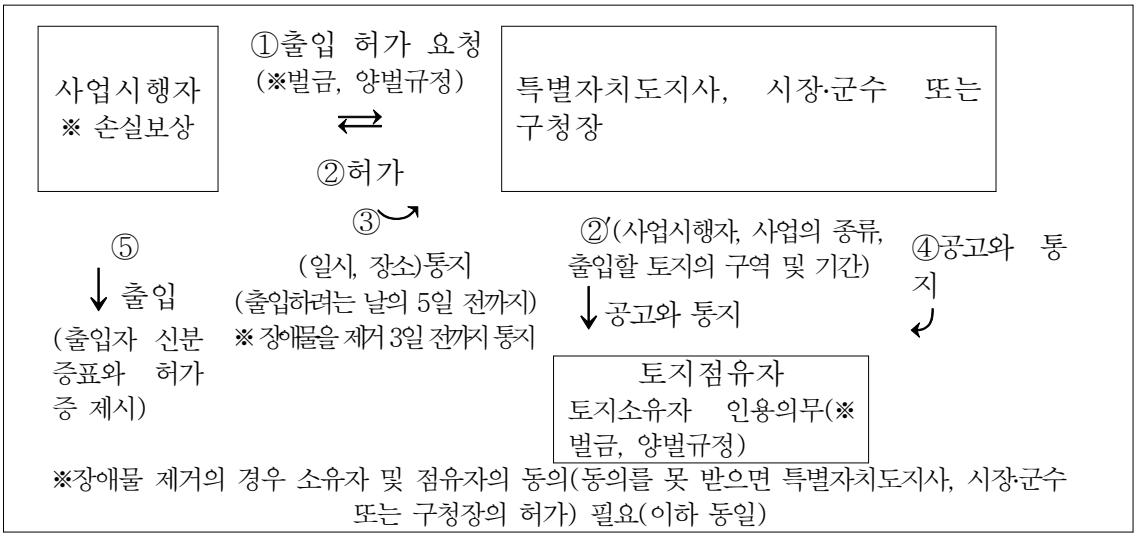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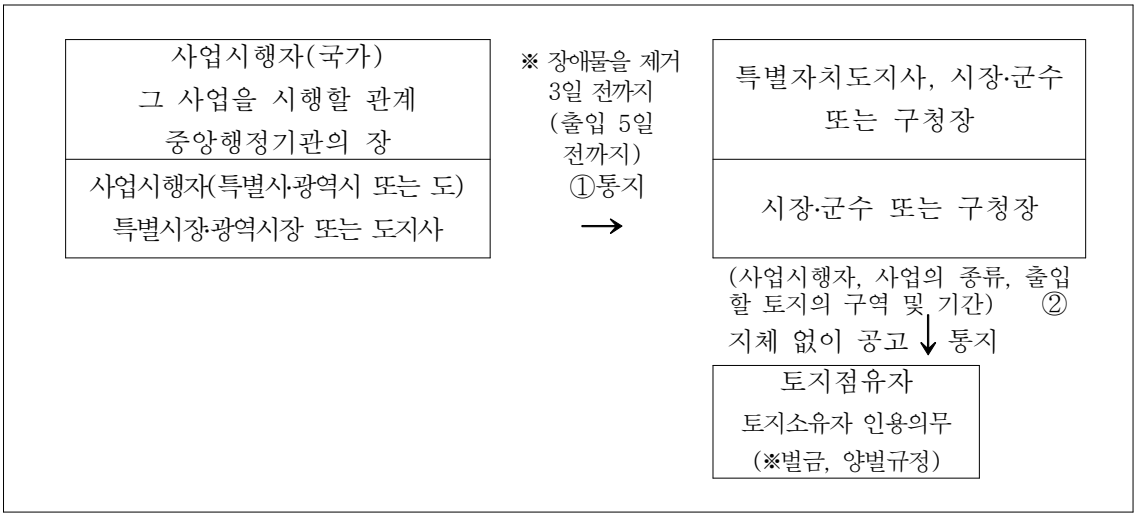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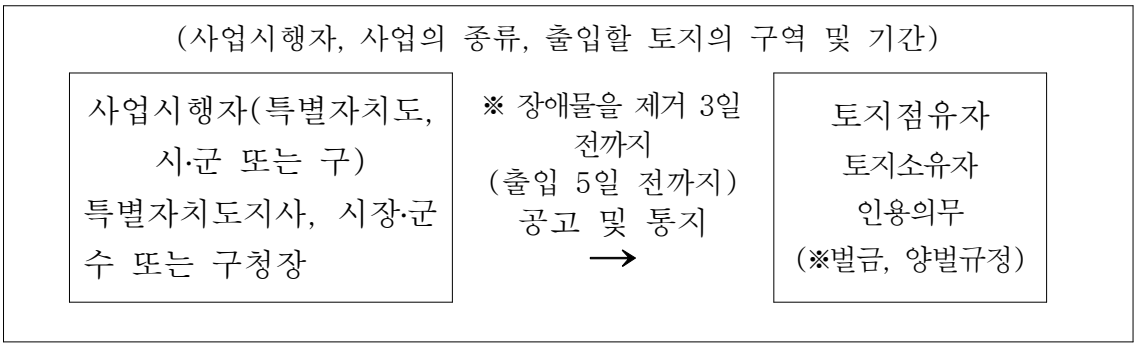

②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제3장, 제4장, 제5장 일부, 제7장, 제8장, 제9장 포함)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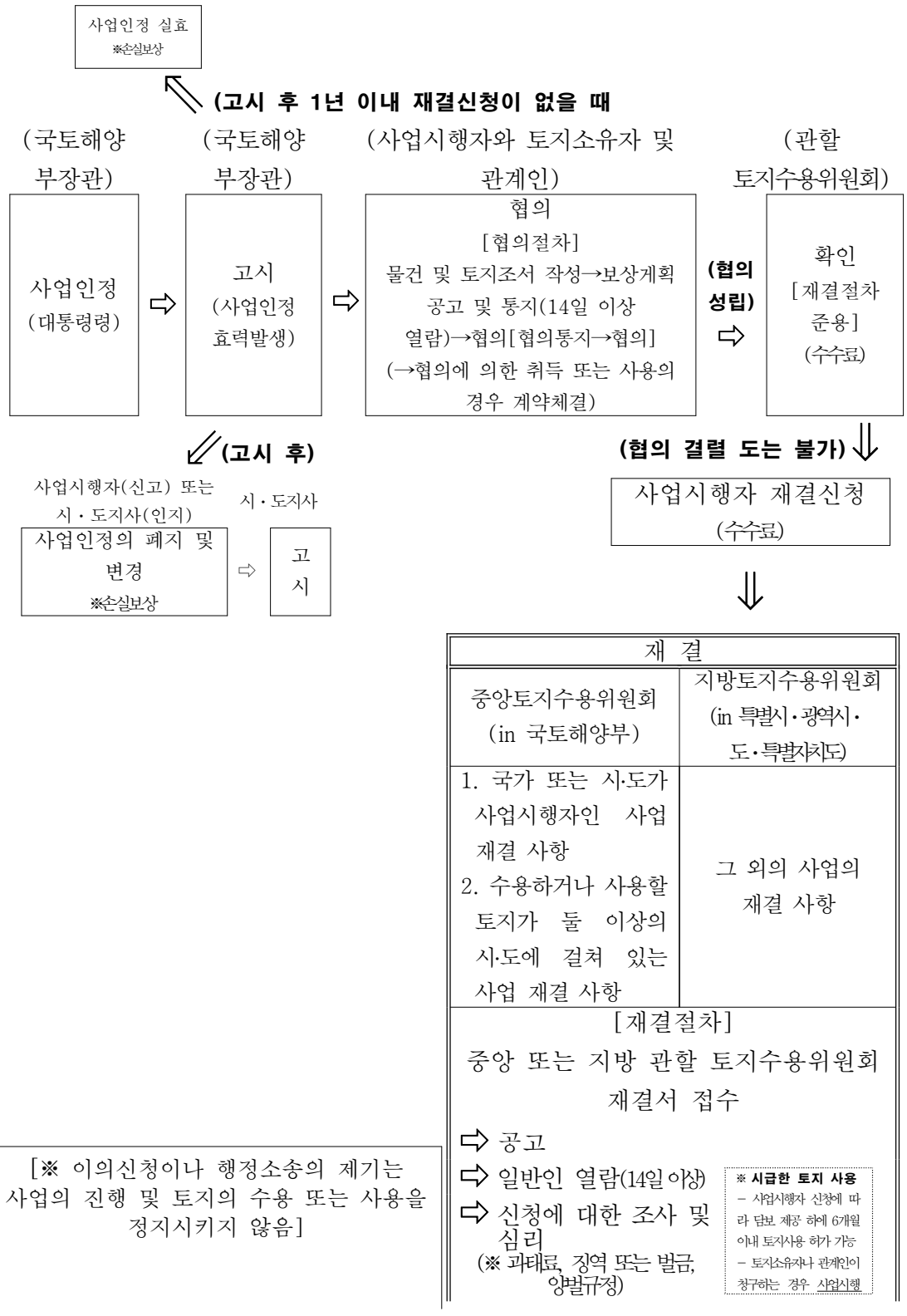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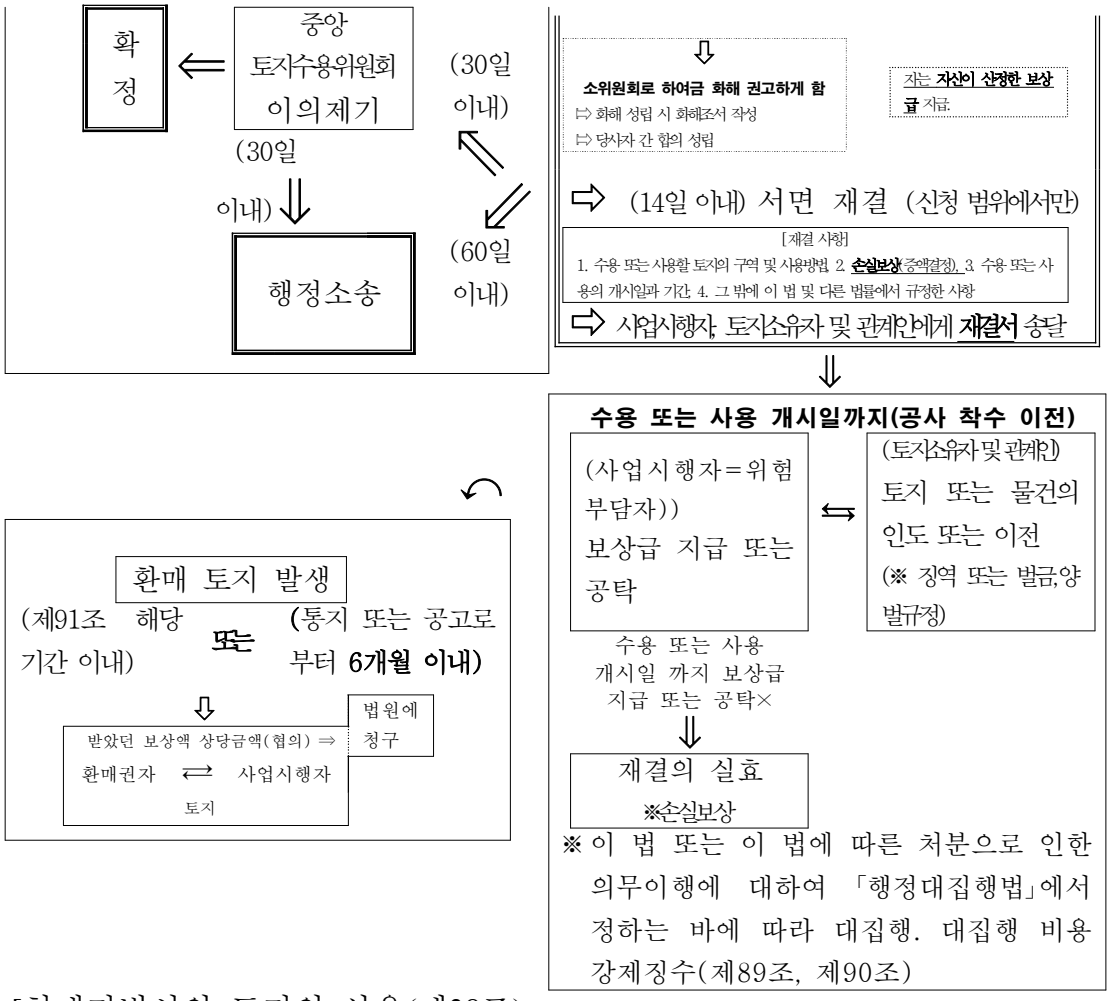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제38조)

천재지변 시 토지사용 요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 손실보상 사업시행자 (허가 받고 사용)	허가 요청 ⇄ 허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국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지 후 사용)→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통지 후 사용)→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 즉시 통지)
(통지를 받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통지)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

③ 이의신청 등(제7장 : 제83조부터 제9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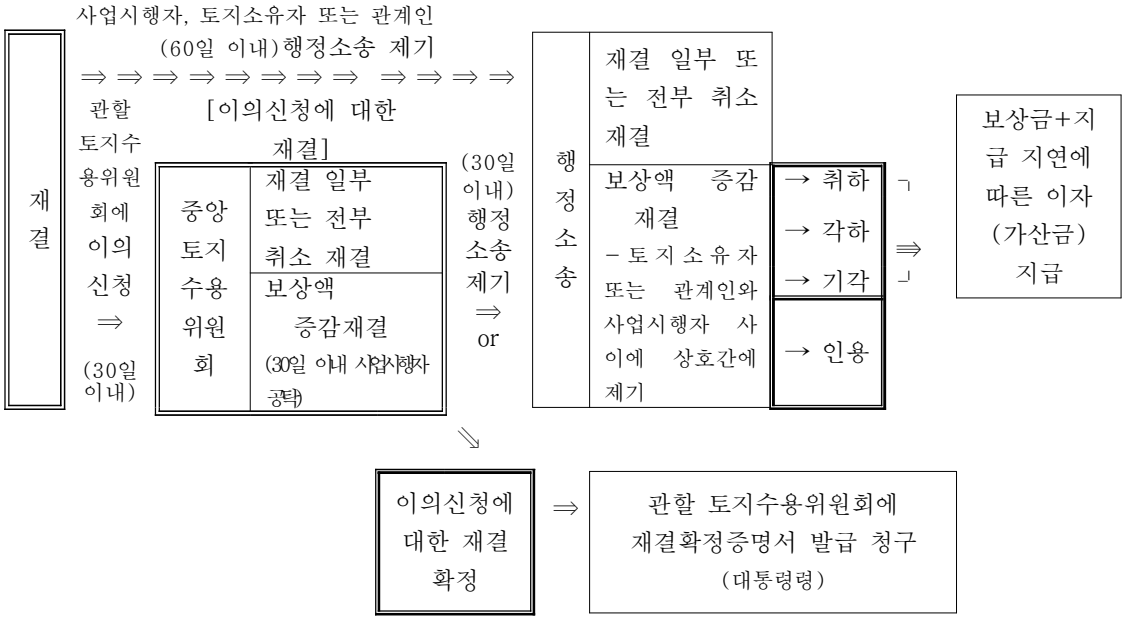

(2) 계량에 관한 법률

1) **제3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업자·수리업자·자체수리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검사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제3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자·수리업자·자체수리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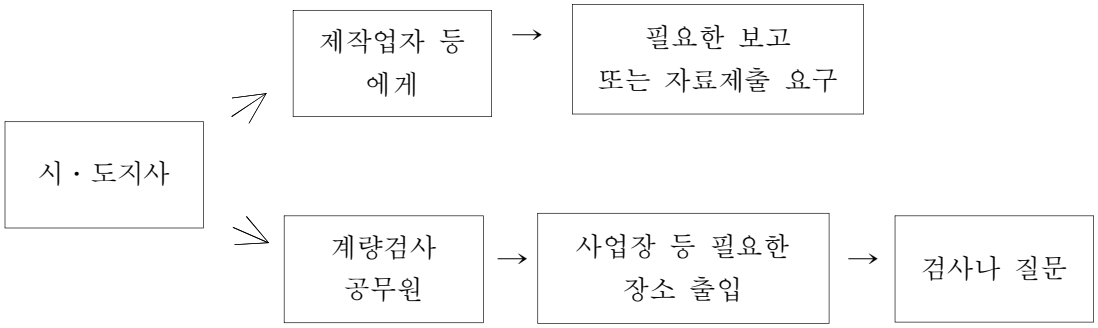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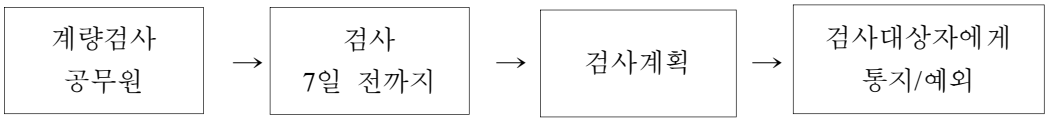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검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 제 8 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등과 협의한 후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등과 협의한 후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등과의 협의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	→	관보 고시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등과의 협의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	→	관보 고시

(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제 7 조 (신고·납부 및 환급)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첨

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납부처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관할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

(5) 변호사시험법

제1조-11조 흐름도

시험 공고	시험 응시	시험
법무부장관이 공고(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	1. 응시자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석사학위 취득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2. 수수료: 5만원	1. 필기시험 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 혼합 출제 나. 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응시자가 선택하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2.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결정	**합격자 공고**	**합격증서 발급**
1.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2.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총득점에 포함시키지 않음	법무부장관이 공고	법무부장관이 발급(수수료 200원)

(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현 행

제 3 조 (고도지정 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도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2) 개정안

제 3 조 (고도지정 신청)

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신청
제출 서류	1. 별지 제1호서식의 고도 지정 요청서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3,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4.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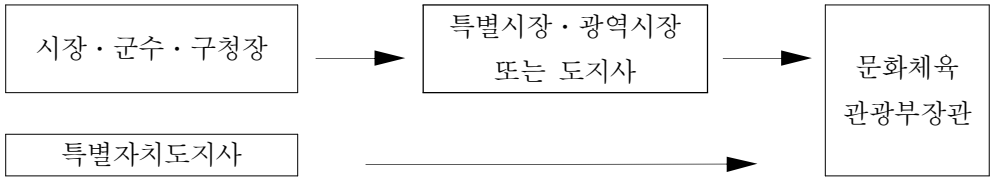

(7)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요도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요도]

목표	자연현상으로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발생하는 재해(災害)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방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재해 발생 시의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알선
	2.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3. 응급조치와 재해대책명령서(서식)
	4. 보상금 지급 신청(서식)과 이의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준용
	5. 과태료 부과 기준(별지)

(8) 도로교통법

제 1 조 (목적) ①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서 규율하는 주요 사항의 <u>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다</u>.

(개요도)

제 4 장 법령 시각화 활성화 관련 입안방법론

Ⅰ. 기본원칙

법령의 시각화를 위한 그림, 표, 계산식 및 절차도를 법령의 본문에 삽입하는 방안은 개별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으로서 법령의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단계에서는 별표·서식 등 별도의 법령 부록에서만 활용되고 그 정도도 매우 제한적이다. 하위법령의 경우에도 본문에서 직접 활용되는 경우는 그림으로 삽입되어 기술적인 관계에 따라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 경우와 예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세법령을 중심으로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조세부과의 기준에 관한 계산방법 등을 복잡한 기술식 방식보다는 본문에 직접 계산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즉, 여전히 그림, 표, 계산식, 절차도는 법령입안기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문에 기술하기 보다는 별표, 서식 등 법령의 부록에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령을 일반국민이 알기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법령의 시각화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그림, 표, 계산식, 절차도 등 법령의 시각화를 본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활성화할 경우 어떠한 입안원칙과 기준으로 입법의 방향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례와 예시를 제시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입법론적 검토 - 그림 삽입 활성화 방안

그림을 법령의 본문에 삽입하는 것은 법령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본문의 일부내용만을 표시하는 그림의 경우에는 법령의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문에 무분별하게 삽입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령의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전히 별표, 서식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림으로 법령에 표시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법령을 직접적이고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림 삽입의 원칙

법령에 그림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칙과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각화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의 원칙이 본질적인 기준이 아닌 보충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문에 그림을 삽입할 경우, 적절한 기준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이 본문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법률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가보다는 일반국민이 법령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은 형벌 혹은 징벌적 처분이 따르는 법령으로서 그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물론 이해가능성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 별표 등 법령의 부록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용어 등이 법령용어로서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그림으로 시각적인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매우 의미 있는 방법일 것이다.

[예 시]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u>다음 그림과 같다</u>.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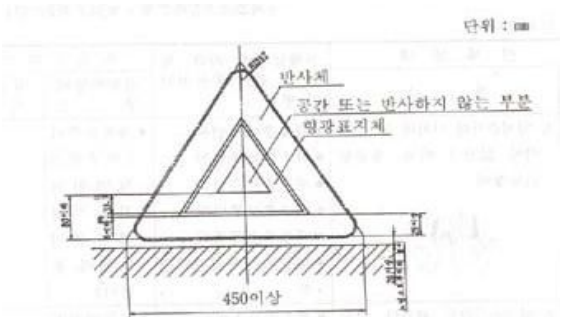
비 고 1.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R5050 “자동차용 정지표지판”과 같다. 2. “*”는 반사체를 부착하는 틀이며, 5밀리미터 이하의 부분이 형광표지체와 동일재료인 경우는 형광표지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반사체를 부착하기 위하여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깥 틀의 3각의 꼭지점에 반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둥글기를 붙인다.

두 번째로 매우 기술·안전 등 전문적인 분야의 법령 중에서 기술적 사항과 제품의 설명등에 있어서 문장으로 표현할 경우 매우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표현되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그림의 표시방법은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고 그림을 예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예시방법)이 있을 것이며, 그림의 확정된 내용을 그림만으로 모두 표시할 수 있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방안(확정방안)으로 별도의 문장이 없이 그림만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시]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 설명]

	<교차로에서의 회전 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고, 좌회전 하려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① 좌회전 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② 우회전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 교차로 회전 시 앞차의 진행 방해 금지 >** •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 시]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림 설명]

〈 교차로에서의 양보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의 도로 폭에 따른 양보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의 우측도로 차의 우선 〉

·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차량의 양보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예 시]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림 예시]

세 번째로 용어의 설명이나 정의규정의 설명을 위하여 그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에는 매우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활용되고, 전문적인 용어가 쓰이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간략한 그림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예시)

<table>
<tr><td colspan="4">[칼날의 길이 15㎝ 이상의 도검류]</td></tr>
<tr><td>1. 월도</td><td>2. 장도</td><td>3. 단도</td><td>4. 검</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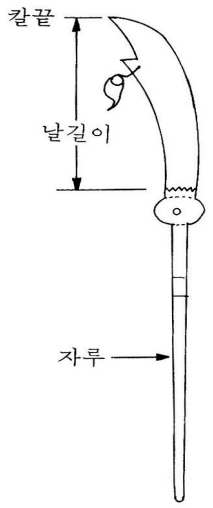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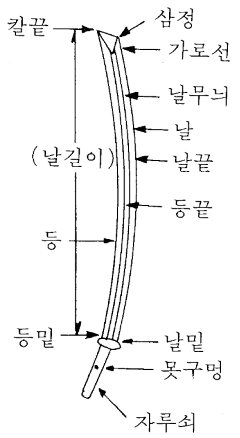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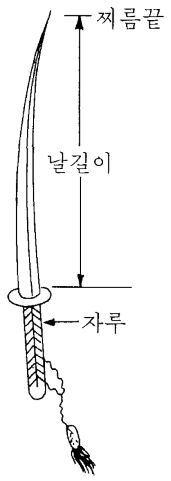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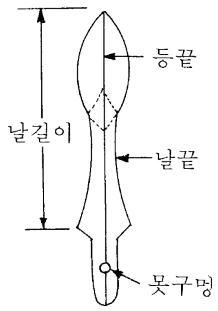
</td></tr>
<tr><td>5. 창</td><td>6. 치도</td><td>7. 비수</td><td></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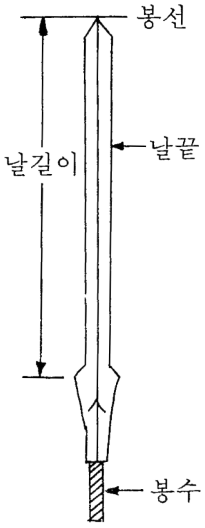
</td><td col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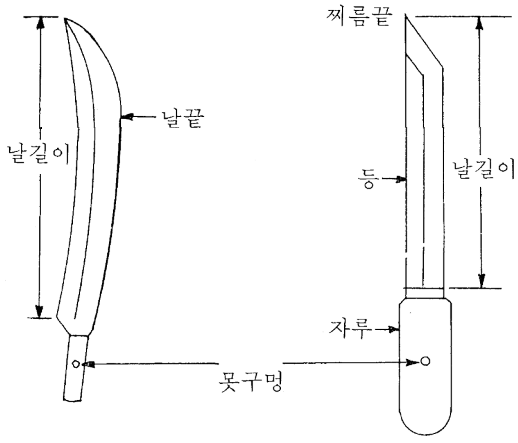
</td><td></td></tr>
</table>

2. 입안방법

본문에 그림을 삽입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입안할 것인지는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법령과 행정규칙에 이미 그림으로 제시된 사항을 재검토하여 본문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조문의 간결화를 위하여 별표·서식등 법령 부록에서 정리하는 법령과 행정규칙의 사항에 대하여 본문에 삽입하는 것이 법령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령의 부록은 법령에 부속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행정규칙에 위임된 경우에는 일반국민은 물론 법전문가 조차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문장과 용어의 이해에 어려움을 주고 해석상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그림의 방식으로 삽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그림을 본문에 삽입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그림의 법령상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령의 본문에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에 “예시방식”과 “확정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문에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예시방식은 그림은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예를 들어 표시하는 것으로 그 법률적 효력은 법령의 이해도 증대의 목적이며,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반면에 확정방식은 법령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림 이외의 것은 법령의 그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림의 효력은 그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시방식과 확정방식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로서 제시되는 경우에는 예라는 점을 분명히 본문에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법령의 본문에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에 위의 원칙 중 용어의 이해를 돕거나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한하여 예시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무분별한 예시그림의 제시로 법령의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확정방식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가능하며, 이에 따른 효과의 완결성은 복잡한 서술형 법문을 간결하고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제5호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안쪽 차로변 반지름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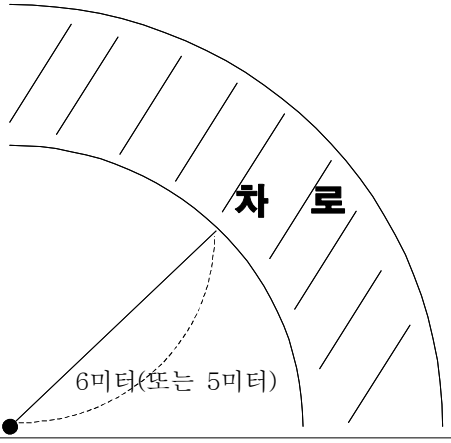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법령 입안시 예시방식은 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이 서술되고 그림이 예시로서 삽입하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확정방식의 경우에는 법령본문에 그 내용을 서술하고 그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본문의 서술식 설명을 제외하고 그림만으로 법령의 효력규정으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병행하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정방식의 경우에 본문에 문장형식의 서술을 두고 그림을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수 있지만, 법령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일반국민의 법령접근에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점으로 지적될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같은 종이법령집의 경우만을 산정한다면 이러한 단점이 많이 부각되겠지만, 최근의 법령정보화에 따른 법령의 다양한 접근과 활용방안을 고려할 때에는 그림을 본문에 직접 삽입하는 방법보다는 팝업방식의 별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서술방식으로 법문을 구성하고 그림은 링크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정방식

법령 본문에 그림이 삽입될 경우, 개정방식과 개정문의 작성 등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은 다수의 법제전문가 및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개정방식은 개정사항을 현재의 개정방식에 맞게 서술식으로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기술하는 방식과 그림전체를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정문의 작성과 이해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그림을 개정할 경우를 상정하여 입법방법을 제시한다면, 그림이 포함된 법령의 개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그림은 [그림]으로 표시하고,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1], [그림2]로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그림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전체를 개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정사항을 개별적인 단위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전체의 변경을 표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개정의 표시를 위한 기호표시(⇒, →, ≫, ▷ 등)를 통일화하여 현행과 개정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u>[개정안 예시]</u>

00법 제22조제1항 하단의 [그림]을 다음 [그림]으로 개정한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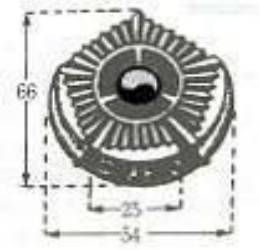

⇒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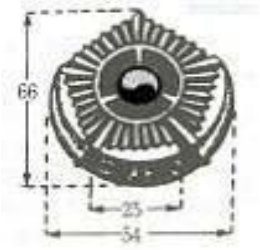

<개정표 예시>

현 행	개정안
제00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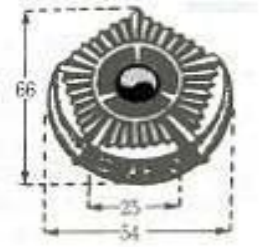	제00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교통안전장 : 25년 이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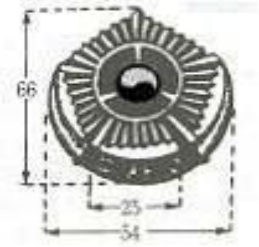

Ⅲ. 입법론적 검토 - 표 삽입 활성화 방안

법령에서 표를 본문에 삽입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법령의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안전・기술분야에 있어 제품의 제원이나 설계기준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형 법령의 입안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법령본문에 표를 직접 삽입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별표를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안전・기술 등 전문입법의 증대로 법령본문에 직접 관련 사항을 표시하고자 하는 입법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길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문을 표방식으로 시각적인 효

과를 통한 접근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조세법상 계산식을 법령본문에 제시하는 경우가 증대하면서 계산식과 법령문의 구별을 위하여 산식을 표로 제시하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어서 표의 본문삽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1. 표 삽입의 원칙

법문에 표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령문의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법전문가나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문의 이해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특정 법령의 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은 모든 법령에 적용하여야 할 원칙일 것이다. 두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입안기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법령의 문장과 문장이 중의적이고 다중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여러 문장으로 제시하여야 하지만, 이를 다른 항이나 조로 분리할 경우 포괄적인 입법해석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문의 단순한 이해도의 증가방식이 오히려 법령적용의 오해와 해석의 한계를 유발할 수 있는 법령문을 포괄적이고 일원적으로 제시하여 법령문의 이해도 증대와 법령해석과 효력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법령영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법령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ㆍ성명ㆍ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 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 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예시> : 그림 또는 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

* 게재내용	* 게재방법
1. 후보자(만)의 사진 2. 성명 3. 기호 4. 소속정당명(무소속) 5. 경력(학력 게재기준은 본문참조) 6.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7.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동 : 인구 500명에 1매 읍 : 인구 250명에 1매 면 : 인구 100명에 1매 규칙 : 인구 1천명에 1매로 조정 가능

세 번째로 법령의 본문과 구별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별도의 호나 항 또는 조문으로 표시하기 보다는 법령문의 일체성을 위하여 표로 표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세법상의 계산식과 기

술법상의 기술·안전기준 등은 본문과 일체를 이루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계산식이며, 별도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로 본문과 구분하여 적시하여 이해도와 체계성을 완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례 예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9 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중형: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개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9 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호	형태	배기량	해당 승차정원
1	경형	1,000cc 미만	5인승 이하
2	소형	1,600cc 미만	5인승 이하
3	중형	1,600cc 이상	5인승 이하
4	대형	2,000cc 이상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5	모범형	1,900cc 이상	5인승 이하
6	고급형	3,000cc 이상	·

네 번째로 복잡하고 다의적인 호·목 등을 표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전문법령의 경우에는 조·항·호는 물론 목 이하의 기술방식이 하나의 조문에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에 표의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다 알기 싶고 이해도를 증대할 수 있는 법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예시>
<현행>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 3 조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급 화약류 가.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나.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다.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라. 등급 1.4: 대폭발위험성·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바.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가. 제2.1급: 인화성 가스 나. 제2.2급: 비(非) 인화성·비 독성 가스 다. 제2.3급: 독성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 제4.1급: 가연성 물질 나.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다.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가. 제5.1급: 산화성 물질

나. 제5.2급: 유기과산화물

6. 제6급 독물류

가. 제6.1급: 독물

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 제7급 방사성 물질

8. 제8급 부식성 물질

9. 제9급 유해성 물질

<개선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 3 조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한다.

호	등급 및 종류	세분	내용
1	제1급 화약류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4	대폭발위험성・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제2.1급	인화성 가스
		제2.2급	비(非)인화성・비 독성 가스
		제2.3급	독성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	.

호	등급 및 종류	세분	내용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제4.1급	가연성 물질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제5.1급	산화성 물질
		제5.2급	유기과산화물
6	제6급 독물류	제6.1급	독물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	제7급 방사성 물질	.	.
8	제8급 부식성 물질	.	.
9	제9급 유해성 물질	.	.

2. 입안방법

법령에서 표를 본문에 삽입하는 방식은 먼저,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미 법령과 행정규칙 등의 별표·산식 등 법령부록에 반영된 사항 중에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사항을 표방식으로 본문에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본문 삽입과 부록방식 중 모두 선택이 가능하지만, 부록방식으로 규정된 사항을 가능하면 본문에 삽입하면서 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별표·서식 등 부록과 행정규칙의 규정 중에서 본문에 삽입하는 것이 보자 적정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 호·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기술·안전 입법분야와 과학기술 법제분야의 법령을 표 방식으로 전환하여 본문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모든 호를 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복잡하고 호·목에서 다양한 방식의 해석과 추가적인 설명 및 단서 등이 있는 조문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길고 복잡한 법령문을 간결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일견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본문이 길고 복잡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문장으로 표시하여야 할 법령문을 표로 간략하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안은 단순하게 긴 문장을 잘라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다의적인 본문과 단서, 전단·후단은 물론 괄호 설명 등으로 구성된 법령문을 표로 전체적인 방향과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표의 구체적인 입안방식으로는 가로와 세로의 각 줄과 칸에 고유기호를 부여하여 개정과 법령지시에 보다 쉽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입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시>

호＼내용	가	나	다	라
1				
2				
3				

이 경우 각 개별 단위의 내용을 적시할 때, 전체적인 사항을 절차적인 순서가 아닌 가-2), 라-3) 등으로 각 칸별로 적시하고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문의 적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식을 개정문을 보다 간결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분양대금)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호	구 분	해당 시기
1	계약금	계약체결시
2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3	잔금	사용승인일 이후. 다만, 「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의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목	종 류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	비 고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3. 주차구획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목	종 류	주차구획의 크기	비 고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1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	

4. 운반기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목	종 류	운반기의 크기(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1.85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1.95미터 이상

3. 개정방식

표의 개정 방식 역시 개별적인 사항제시 방식과 포괄적인 개정방식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림과는 달리 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로/세로의 사항을 적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표의 순서를 호로 지정방식으로 좌면에 적용하고, 상단을 본문 혹은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지정하여 각 칸별도 지정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제시된 표의 방식에 기초하여 라-3)을 개정할 경우

[00법 제00조제0항의 [표] 중 라-3)의 “내용1”을 “내용1-1”로 개정한다.]라는 방식으로 개정문을 복잡하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정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00법 제00조 ① <생략> 표 나-2 내용 1(현행) 표 라-3 내용 2(현행)	00법 제00조 ① <생략> 표 나-2 내용 1-1(개정안) 표 라-3 내용 2-1(개정안)

Ⅳ. 입법론적 검토-계산식 삽입 활성화 방안

법령 본문에 있어서 계산식은 문장서술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인 경우 문장형 서술식으로 입안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별표·서식 등 법령 부록이나 시행규칙에서 수학식이 포함된 계산식을 나열하거자 제시하는 방법으로 입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에 조세법 분야와 기술·안전 등 전문 법령분야에 있어서 서술식 문장을 통한 계산식 표현방법이 문장서술식이 아닌 수학적인 표시에 기초한 계산식으로 입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문기술문야에서 법령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여 입법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인 입안기준과 방법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개별적인 입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입안원칙

계산식을 법령 본문에 반영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계산식으로 표현가능한 서술식 문장을 그 기초로 한다. 시각화의 방향에 비추어 계산식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식으로 입안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계산식을 별도의 계산식으로 독립적이고 시각적으로 구현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계산식으로 표현할 경우 보다 알기 쉽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그림, 표, 절차도의 본문 표현의 입안원칙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비해 계산식의 입안은 원칙적인 부문이 매우 명확하다는 것이다.

즉, 계산식의 법령삽입대상법령은 세법, 도로교통법, 선박・기계 등 산업시설과 장비관련법령, 디자인 관련 법령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분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입안방법

먼저 구체적인 입안방법으로서 부기방식과 계산식 방식이 있다. 부기방식은 본문에 서술식 문장을 두고 계산식을 부기하는 방법으로서 서술식 문장의 보충적 효력과 설명의 용이함을 위한 부가적인 방법이다. 반면에 계산식 방식은 계산에 포함된 내용을 본문에서 표시하지 않고 본문 하단에 계산식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현행 법령은 주로 계산식 방법을 입안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기방식은 계산식의 설명본문의 뒤에‘(표 참조)’ 혹은 ‘(표 예시 참조)’ 등의 방법으로 부기하여 표시할 것이며, 계산식 방식은 본문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등의 표현을 기초로 법령문 하단에 계산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계산식은 예시방식의 입안방법보다는 계산식 방식의 입안방법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계산식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계산식이 어떻게 본문에 삽입할 것인가를 살펴볼 때, 현행 법령에서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다음 계산식을 적용

하여 산출한다", "다음계산식에 따라 적용하여 계산한" 등으로 다양하게 입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용어를 한글화한 '더한'으로 표시하거나, 한자어인 '합산한' 등으로 표현하고, 나누기를 '/'로 하거나 '-'로 하거나, '÷'로 하는 등 다양한 표현과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본문의 설명방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 명사'로 통일하고, 이 문장 이후에 '산출'또는 '계산'등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수학식 기호는 특수기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수학식 기호에 따르도록 하고, 나누기는 문장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로 통일하도록 하거나 하는 방법을 입안방법의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나눗셈의 기호를 '/'로 통일하는 경우에는 괄호를 병기하여 나눗셈의 영역을 명확히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산식의 본문 삽입의 방법으로 일체화 방식과 도표방식이 있다. 일체화 방식은 조・항・호 등 계산식의 표시를 본문과 일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중간의 항이나 호에 속하는 계산식의 경우에도 '조'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항의 마지막에 표시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문장이나 호에 계산식이 부가되는 방식은 법령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방식은 계산식을 하나의 일체로 파악하여 표나 그림으로 표시하고, 본문의 위치도 일정한 위치에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일체화방식의 계산식 입안방법이 계산식이 길고 수학적 공식이 복잡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조와 틀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정보화로 전환과정에 있어서 내용이 흩트러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표나 그림으로 일체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으로 입안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계산식의 입안방법 중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하나의 조・항・호에 두 개의 계산식이 있을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은 본문에 동시에 언급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계산식의 입안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u><예시안 1> : 계산식만을 표시하는 경우</u>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u><예시안 2> 용어와 계산식을 표시하고, 용어의 설명을 두는 경우</u>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1] −총비용[2]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1)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한정 2)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u><예시안 3> 상징으로 표시하고 설명을 두는 경우</u>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A + B - C) \times r$

A :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B :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

C :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r :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예시안 4> 계산식을 표로 하는 경우-위의 3 경우 모두 해당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의 계산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A + B - C) \times r$

A :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B :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

C :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r :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3. 개정방식

계산식의 개정방식은 개별개정방식과 포괄개정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영역 중의 하나이다. 개별개정방식의 경우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어서 개정문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포괄적 개정방식은 일부분만이 개정사항임에도 전체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방법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표방식의 경우에는 계산식 정체가 표로 일체화가 된다는 점에서 포괄적 개정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제00조제00항의 표 1’을 다음과 같이 ‘제00조제00항의 표 1-1’로 개정한다.]는 방법으로 개정문을 포괄적으로 적시하고 표 전체를 개정의 내용으로 반

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개정방식은 표의 경우 정확한 개정내용을 서술식 개정문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Ⅴ. 입법론적 검토 - 절차도 삽입 활성화 방안

1. 입안원칙

법령에 있어서 절차는 규제절차, 계획절차, 심의·심판절차 등 행정집행에 따른 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행정내부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국민이 그 절차의 과정과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령에서 절차도의 방법으로 그 과정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범자가 인지할 수 있다면, 법령의 절차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의신청 등 국민의 행정참여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방법일 것이다.

다만, 법령상의 절차는 일법령 일절차가 아니라 타법령과 관련성과 관련기관과의 연계성, 중앙과 지방과의 업무적 협의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 법령상의 절차가 모든 법령의 절차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법령상의 절차를 본문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입안방법

절차도의 입안방법은 조문이나 항 등 소규모 법문 단위로 반영하는 것은 법령전체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00법의 허가절차도, 등록절차도, 검사절차도와 같은 규제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며, 계획·심의절차도, 협의절차도 등을 통하여 행정내부적 절차를 포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00법의 행정절차도 등과 같이 법령 전체의 포괄적인 계획·규제·민원 등의 절차도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인 법령절차도를 두는 경우에는 법령의 본문과 부칙사이에 절차도를 두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며, 개별적인 규제·계획 등의 절차도는 해당 법문이 끝나는 장이나 조문 밑에 규정하는 방법이 적절한 입안방법이 될 것이다.

절차도의 규정내용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관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기관이 이 절차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과 기간 등 일정 등을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야 할 것이며, 이 기관의 절차가 불허될 경우의 후속절차 등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전반적인 피드-백 절차 등도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입안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절차도 역시 예시방식과 확정방식의 입안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절차도는 절차의 과정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바, 확정방식의 절차도는 법령에서 운영하기에는 많은 효력과 해석상의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서 절차도를 반영하는 것은 예시방식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령 본문에서는 조문의 후단에서 “절차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는 “(절차도 참조)” 등의 방식으로 입안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조문이나 장·절의 끝에 규정하는 경우]

「변호사시험법」제1조 <중간 본문내용 생략> 제11조 <본문생략>(시험 절차도 참조)

시험 공고	→	시험 응시	→	시험	→
법무부장관이 공고(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		1. 응시자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석사학위 취득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2. 수수료: 5만원		1. 필기시험 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 혼합 출제 나. 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응시자가 선택하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2.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공고	→	합격증서 발급
1.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2.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총득점에 포함시키지 않음		법무부장관이 공고		법무부장관이 발급(수수료 200원)

[관련 법령의 끝에 두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요도]

목표	자연현상으로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발생하는 재해(災害)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방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재해 발생 시의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알선
	2.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3. 응급조치와 재해대책명령서(서식)
	4. 보상금 지급 신청(서식)과 이의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준용
	5. 과태료 부과 기준(별지)

3. 개정방식

절차도의 개정방식은 개별적 개정방식과 포괄개정방식 모두 만족할만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개별적 개정방식의 경우 개정문의 작성

방법을 어떠한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포괄개정방식의 경우에는 전면개정방식의 경우가 아니면, 조문이나 호하나의 변경에 모든 절차도 전체를 개정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복잡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어려운 개별적 개정방식보다는 포괄개정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절차도는 확정방식이 아니라 예시방식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절차 중 하나가 개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전체 절차의 과정을 재조정하여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포괄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법령 본문상 절차도의 포괄개정방식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00장 제00조 하단의 절차도 1’를 다음과 같이 ‘제00장 제00조 하단의 절차도 1-1’로 개정한다.]

제 5 장 타법규정사항 관련 정비

제 1 절 관련 사례 발굴 및 정비안 제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법령 중 해당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과 그 조문의 사례를 발굴하고, 법령 심사 및 법령 정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정비기준을 도출

현 행	정비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소화설비)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이하 "소화설비"라 한다)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소화설비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칙에 적시.

※ 동규칙 제359조 및 제628조에서도 같은 용어인 "소화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약칭하여 줌.

2. 석유광산보안규칙

현 행	정비안
석유광산보안규칙 제150조 (소화설비) 석유광산의 유정의 정두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	석유광산보안규칙 제150조 (소화설비) ....

현 행	정비안
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두 그 밖의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와 작업성질, 화재성상에 대응하는 저수지·소화전·소화기·소화용사·수조 등의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이하 "소화설비"라 한다)를……

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현 행	정비안
제48조 (소화설비) 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소화설비(이하 "소화설비"라 한다)를
제74조 (소화설비) ① 신호기계실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제어실에는 쉽게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소화설비(이하 "소화설비"라 한다)를

4. 도시철도건설규칙

현 행	정비안
제68조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살수장치(sprinkler)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68조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살수장치(sprinkler) 등 물을

현 행	정비안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현 행	정비안
제59조 (의료기관의 신고 등) ① 영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서 발행업무를 하려는 <u>의료기관</u>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4.30>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1부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영 및 서명 5. <u>의료기관</u>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1부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u>의료기관</u>은 출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u>의료기관</u>이 영 제45조제4항에	<u>의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u>

현 행	정비안
따른 도로교통공단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그 사실을 해당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규칙에 명시할 필요성 여부 검토.(의료법,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등등)

6. 주택분양, 청약-주택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 8 조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연금관련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공단의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입주 등과 관련된 사항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 8 조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연금관련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공단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등과 관련된 사항

7.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 기본법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세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제1호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관세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제1호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7. 생략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이하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7. 생략 8.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이하 생략

10. 공탁-공탁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청산금의 공탁) ① 청산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債務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공탁김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回收)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청산금의 공탁) ① 청산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債務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支院)에 「<u>공탁법」에 따른 공탁(供託)을</u> 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공탁김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回收)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1. 연말정산-소득세법

지방세법 제88조 (납세지 등) ① 생략 ②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소득분을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분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③ 생략	지방세법 제88조 (납세지 등) ① 생략 ②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u>소득세법」에 따라</u> 연말정산하여 소득분을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분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③ 생략

12.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생략 5.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이하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생략 5.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이하 생략

13. 교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외에 「유아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적용여부 검토 필요.

14. 발명-「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 2 조 (국민제안의 제출 등) ① 국민이 「국민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른다.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 2 조 (국민제안의 제출 등) ① 국민이 「국민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른다.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15. 기상관측시설-기상법

(1)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령 제10조 (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항공법 시행령 제10조 (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사.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이하 생략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법」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사.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이하 생략

(2)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 제한) 항공법 제10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송수신소·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 기상관측시설 5. 경비보안시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 제한) 항공법 제10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송수신소·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 「기상법」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5. 경비보안시설

16. 정기간행물-「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 생략	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 생략

17. 궤도-「궤도운송법」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도로의 점용허가) ① 생략 ② 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3.12> ④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24, 2002.5.27, 2005.2.25>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도로의 점용허가) ① 생략 ② 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3.12> ④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24, 2002.5.27, 2005.2.25>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 생략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 생략

(2) 광업법

광업법 제44조 (채굴의 제한) ①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궤도(軌道)·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湖)·소지(沼地)·관개(灌漑)시설·배수시설·묘우(廟宇)·교회·사찰의 경내지(境內地)·고적지(古蹟地),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건축물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 생략	광업법 제44조 (채굴의 제한) ①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軌道)·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湖)·소지(沼地)·관개(灌漑)시설·배수시설·묘우(廟宇)·교회·사찰의 경내지(境內地)·고적지(古蹟地),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건축물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 생략

제 2 절 정비기준 제시

다른 법령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용어의 법령상의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아 해당용어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근거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령입안에 있어서 법령용어의 사용은 정의규정 등에 정의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인용과 용어의 원용에 있어서 근거를 밝히는 것은 입법기술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행 법령 중 해당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과 그 조문의 사례를 발굴하고, 법령 심사 및 법령 정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정비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사례 발굴을 위한 노력에 비하여 적합한 사례를 찾는 것이 어려우며, 관련 사례 역시 법령의 근거를 밝힐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입안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

이러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불비를 보완한다는 점과 새로운 입법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간략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법령용어는 법령상의 용어근거가 명확한 용어라는 점에서 법령에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

2) 근거를 밝힘에 있어서 법률만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하위법령에서 정의 등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만을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

3) 법령의 첫 번째 용어만 근거를 밝히고 약어를 사용하여 중복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4) 법률에서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중복적으로 관련 사항의 근거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법률을 밝히고 있는 경우에만 근거를 밝힐 것

1) 수요자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법령에서 관련 사항이 정비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5) 근거를 밝히는 법령용어는 일반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원용할 필요가 없으며, 법령용어로서의 적용과 해석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의 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함,

6) 관련 근거법령이 많은 경우에도 이 근거법령 전부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대표 법령의 근거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함.

이러한 타법 관련 규정사항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일반국민의 경우 법령상의 접근에 많은 한계가 있는 바, 대통령령과 부령 등 관련 하위법령의 명칭이 모법의 명칭과 차이가 있어 하위법령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즉,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oooo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링크가 걸리지 않는 경우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보다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 판단된다. 예를 들면,

예시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생략.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클릭하면 "없음"으로 팝업이 뜨고, 일반국민이나 법령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법령에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예시 2)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2467호)

예시 3)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 제1항제7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선박안전 조업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부　　록

【부 록 1】

<시각화 법령 예시자료>

「국세징수법[2]」

제 1 장 총 칙

제 5 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제 6 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 절차도]

납세증명서 발급신청(납세자)→사실확인(세무서장)→납세증명서 발급(즉시, 세무서장)

제 6 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다음 표 중 어느 하나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2)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호	대상 건물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표로 한정한다.

호	임차인 열람가능 국세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3)]]

제공주체	세무서장
제공의 근거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가능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상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제공사항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
제공예외사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공 절차	대통령령
한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표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 7 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국금지 요청 절차도]

출국금지 요청(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결과통보(법무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출국금지 해제요청(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제 2 장 징 수

제 1 절 징수절차

제 8 조 (시・군・구 위탁징수) 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국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금을 지급한다.

제 9 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다음 표의 내용을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	고지내용
1	국세의 과세연도
2	세목(稅目)
3	세액
4	산출 근거
5	납부기한
6	납부장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고지서 등의 발급 시기)[4]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1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호	발급시기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1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4) 호방식과 표방식의 입법방안 비교

호	발급시기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징수 절차도]

국세 징수 위탁	세무서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납세의 고지	주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발급시기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15일 전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납부기한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다음 표의 고지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	납부통지서 고지사항
1	체납액의 과세연도
2	세목
3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호	납부통지서 고지사항
4	납부기한
5	납부장소
6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호	납기전 징수사유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호	납기전 징수사유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징수유예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호	징수유예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호	징수유예 위소사유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체납처분

제 1 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 (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호	질문·검사대상자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29조 (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제 2 절 압류금지 재산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표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호	압류금지재산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제 5 절 채권의 압류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 압류 절차도]

압류통지(세무서장→해당 채권의 채무자)⇒압류 사실 통지(세무서장→체납자)

제 8 절 압류의 해제 <개정 2011.4.4>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호	압류 즉시해제사유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호	압류 전부 또는 일부해제사유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호	압류 전부 또는 일부해제사유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 9 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7조 (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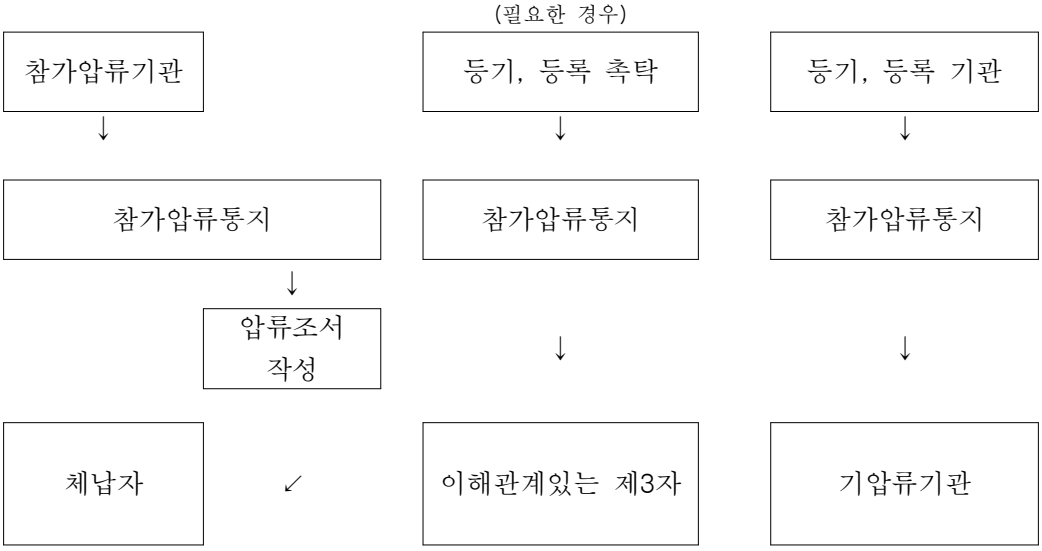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u>참가압류(비고)</u>는 <u>다음 표의 구분</u>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호	대상재산	효력 소급시기
1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비고 : 1.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

2.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호	해당 행위
1	제61조제5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 2 장

제11절 청 산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제81조 (배분방법)

제82조 (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청산배분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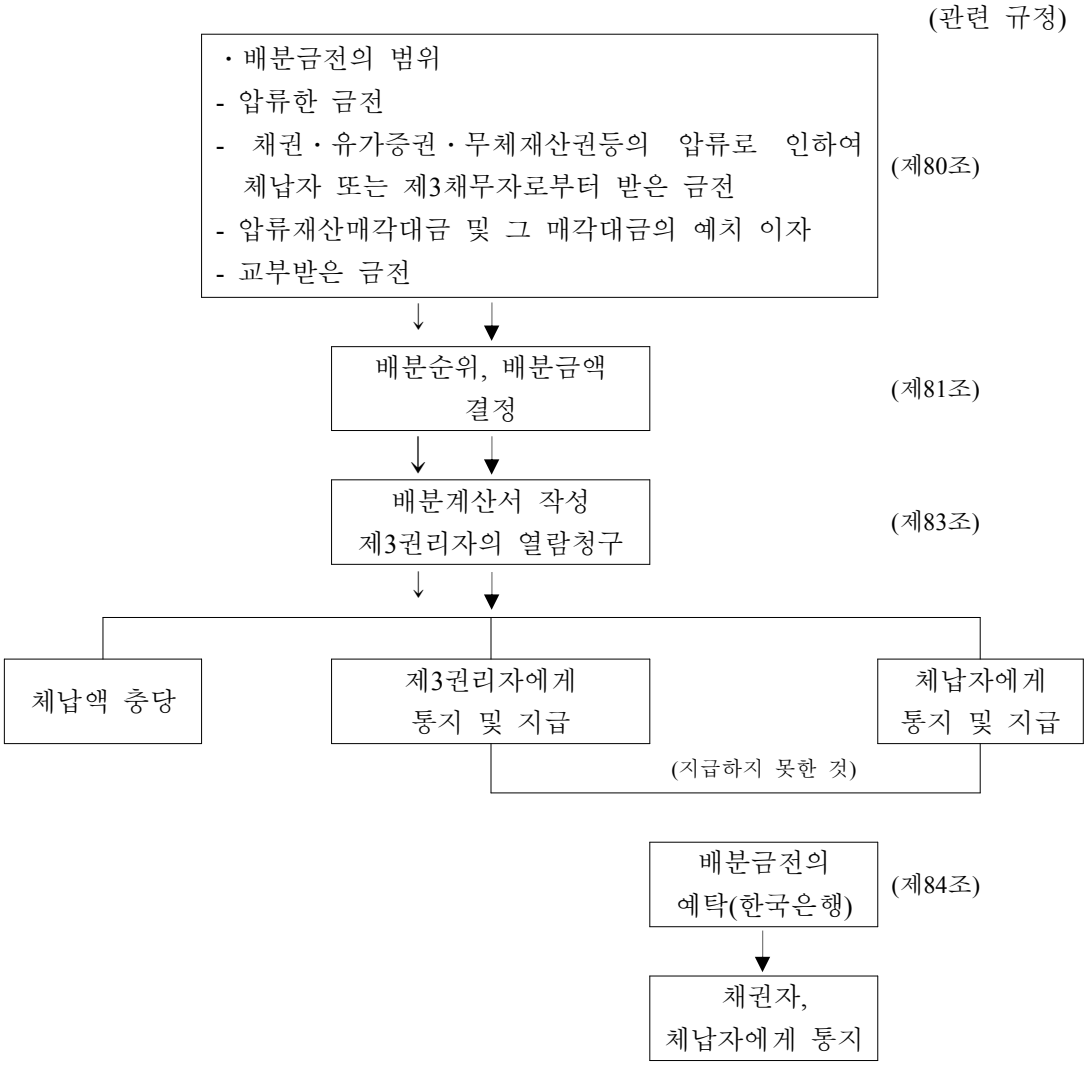

「국세기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표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호	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호	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5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표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시기에 성립한다.

호	대상 국세	납부의무 성립시기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0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	담보의 종류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31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호	담보의 종류	담보의 가액
1	국채·지방채	시가(時價)
2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표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총액 또는 출자총액] ×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

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안]
A×B×r
A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B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r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 7 장 심사와 심판

제 1 절 통 칙

제55조 (불복)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 (대리인)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제 2 절 심 사

제61조 (청구기간)
제62조 (청구 절차)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4조 (결정 절차)
제65조 (결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제66조 (이의신청)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제 3 절 심 판

제67조 (조세심판원)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청구 절차)
제70조 삭제<1999.8.31>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회피 및 기피)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 (질문검사권)
제77조 (사실 판단)
제78조 (결정 절차)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심사와 심판에 관한 사항 중 불복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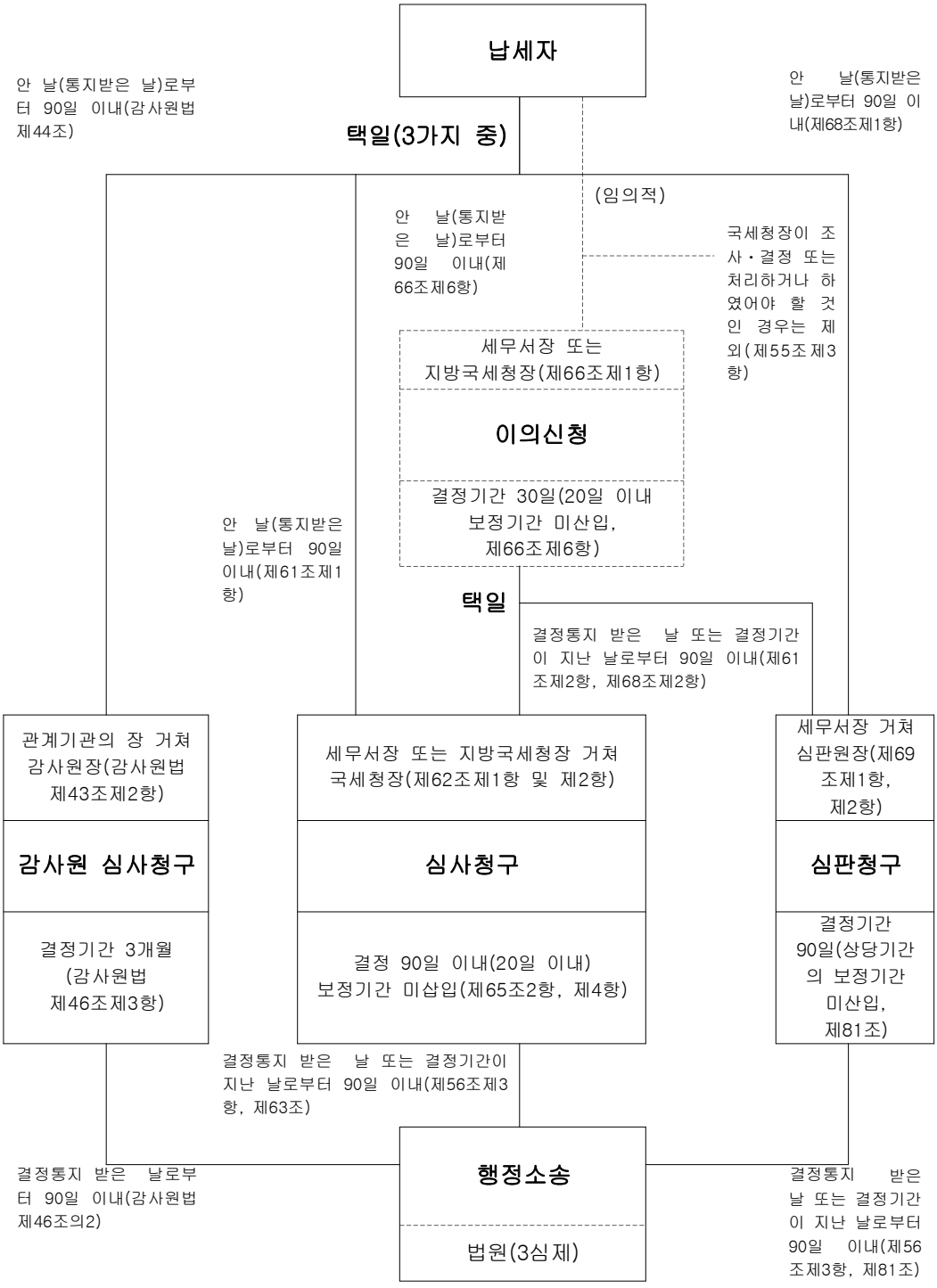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	해당 사유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 5 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표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	신고사항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표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호	기재사항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 9 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5)]

호	항 목	내 용	
1	심의절차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내용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기존의 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위원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5) 조문 전체를 표로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예시

호	항 목	내 용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률·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원장 업무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	
6	임기 중 위원해촉	제3항제6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해촉	
7	회의	회의는 비공개.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6호의 위원 3명 이상을 포함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8	위임사항	그 밖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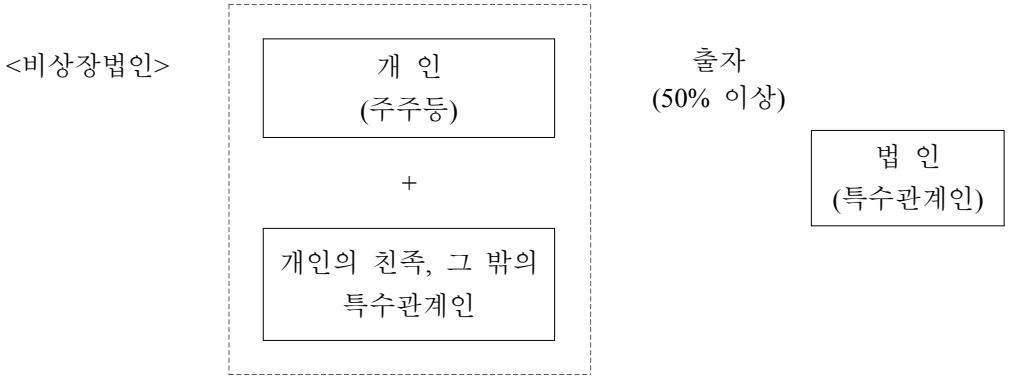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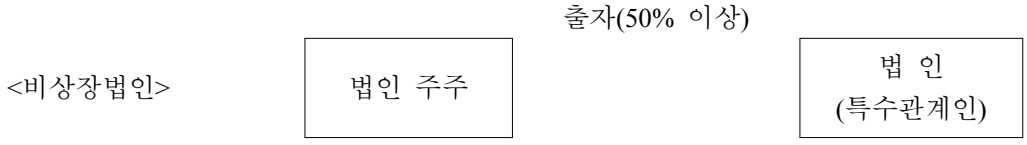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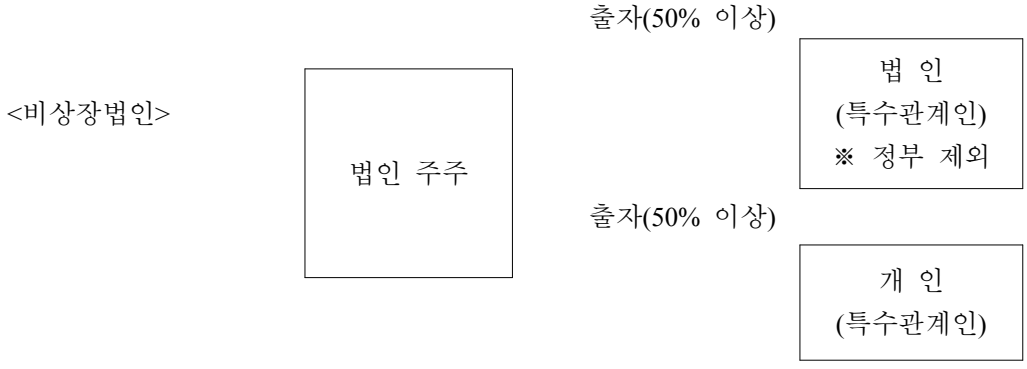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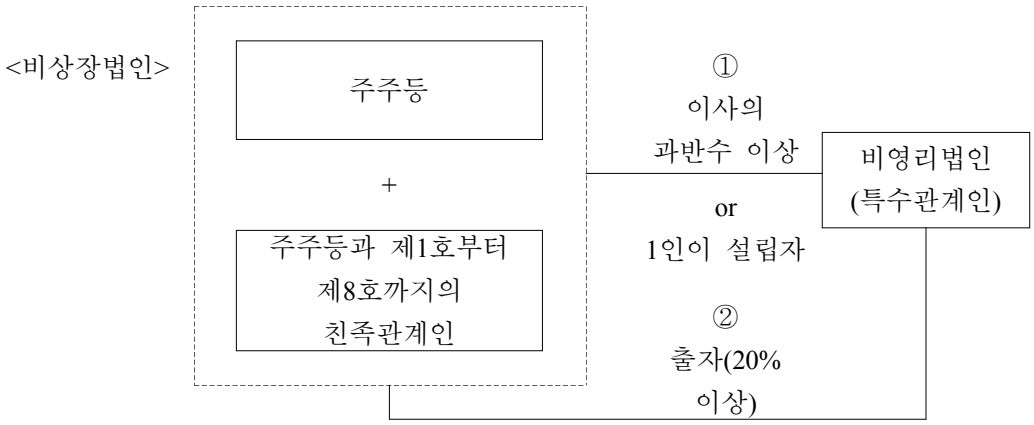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호	신고권자	신고금액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호	가산세	적용기간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호	가산세	적용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호	환급대상	환급일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1)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2)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비고 : 1)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방법에 따른다.

호	환급대상	환급방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table>
<tr><th>호</th><th>항 목</th><th colspan="4">내 용</th></tr>
<tr><td rowspan="2">1</td><td rowspan="2">심의 사항</td><td colspan="2">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 colspan="2">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td></tr>
<tr><td colspan="2">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 colspan="2">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td></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구성</td><td colspan="2">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15명 이내의 위원</td><td rowspan="3">위원장 1인이 포함된 위원 수</td></tr>
<tr><td colspan="2">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22명 이내의 위원</td></tr>
<tr><td colspan="2">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31명 이내의 위원</td></tr>
<tr><td rowspan="5">3</td><td rowspan="5">위원장</td><td colspan="2">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 colspan="2">세무서장</td></tr>
<tr><td colspan="2">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 colspan="2">지방국세청장</td></tr>
<tr><td colspan="2">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 colspan="2">국세청차장</td></tr>
<tr><td rowspan="2">권한</td><td colspan="3">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td></tr>
<tr><td colspan="3">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td></tr>
</table>

<table>
<tr><th>호</th><th>항 목</th><th colspan="2">내 용</th></tr>
<tr><td></td><td></td><td>직 무 대리</td><td>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td></tr>
<tr><td rowspan="4">4</td><td rowspan="4">위원</td><td>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td></tr>
<tr><td>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td></tr>
<tr><td>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td></tr>
<tr><td>민간위원의 임기1)</td><td>2년</td></tr>
<tr><td>5</td><td>위촉 해제</td><td colspan="2">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6">6</td><td rowspan="6">회의</td><td colspan="2">회의는 위원장과 하단 표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td></tr>
<tr><td>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6명</td></tr>
<tr><td>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8명</td></tr>
<tr><td>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td><td>10명</td></tr>
<tr><td>회 의 통지</td><td>위원장은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회의를 통지</td></tr>
<tr><td>회 의 절차</td><td>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td></tr>
<tr><td>7</td><td>보고</td><td colspan="2">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td></tr>
<tr><td>8</td><td>지원</td><td colspan="2">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td></tr>
</table>

비고 : 1) 민간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표 참조]

<table>
<tr><td>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td><td rowspan="2">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td><td rowspan="2"></td></tr>
<tr><td>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td></tr>
<tr><td>부가가치세</td><td>「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td><td rowspan="3">·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 병기
·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 부기
·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td></tr>
<tr><td>개별소비세</td><td>「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td></tr>
<tr><td>교통·에너지·환경세</td><td>「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td></tr>
</table>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2.「행정심판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
3.「행정심판법」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4.「행정심판법」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
5.「행정심판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
6.「행정심판법」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
7.「행정심판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
8.「행정심판법」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
9.「행정심판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
10.「행정심판법」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
11.「행정심판법」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표와 같다.

호	대상법률	서식 내용	서식
1	행정 심판법	선정대표자 선정(제15조제1항)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선정대표자 해임(제15조제5항)	별지 제25호의3서식
3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25호의4서식
4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제16조제5항)	별지 제25호의5서식

호	대상법률	서식 내용	서식
5		심사・심판참가 신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25호의6서식
6		심사・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제20조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별지 제25호의7서식
7		참가 요구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별지 제25호의8서식
8		청구변경신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25호의9서식
9		출석 요청(제36조제1항)	별지 제25호의10서식
10		구술심리신청 (제40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27조)	별지 제25호의11서식
11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제40조제2항)	별지 제25호의12서식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서 규율하는 주요 사항의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다.

(개요도)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12.29, 2010.7.23>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예시도)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6.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8의2.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1.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예시도)

14.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5.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예시도)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예시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8의2.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19.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21.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22.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3.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5.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6.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7.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8. “일시정지”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0.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제 2 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개[이하 "맹도견"(盲導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④ 경찰공무원은 신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9.12.29>

호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대상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도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보행이나 횡단보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23>

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호	관계법령	내 용	보호구역의 종류
1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노인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자연공원	노인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도시공원	노인보호구역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생활체육시설	노인보호구역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보호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본조신설 2006.4.28]

[제목개정 2010.7.23]

제 3 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3조 (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table>
<tr><th>호</th><th colspan="4">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차마(제3항의 예외)</th></tr>
<tr><td>1</td><td colspan="4">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td></tr>
<tr><td>2</td><td colspan="4">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td></tr>
<tr><td rowspan="2">3</td><td colspan="4">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td></tr>
<tr><td>예외</td><td>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td><td>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td><td>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td></tr>
<tr><td>4</td><td colspan="4">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td></tr>
<tr><td>5</td><td colspan="4">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td></tr>
</table>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 차마(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호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예외)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6조 삭제 <2009.12.29>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경찰청장 :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예시도)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⑤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금지의 경우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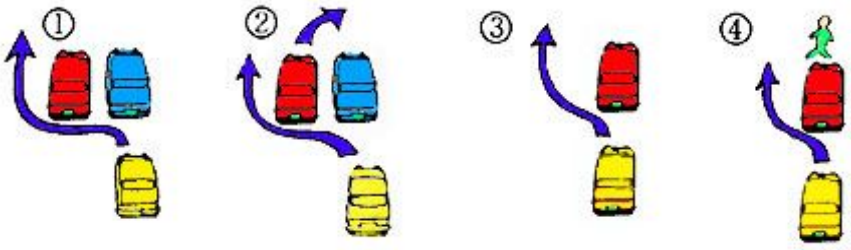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④ 제3항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를 예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예시도)

1	2	3	4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아래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

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⑦ 이 조에서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른 사항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도)

	〈 교차로에서의 회전 방법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고, 좌회전 하려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① 좌회전 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② 우회전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 교차로 회전 시 앞차의 진행 방해 금지 〉** ·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서의 교통정리가 되지 아니한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관한 사항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도)

	〈 교차로에서의 양보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의 도로 폭에 따른 양보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의 우측도로 차의 우선 〉 ·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차량의 양보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끼어들기의 금지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호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③ 서행 및 일시정지할 장소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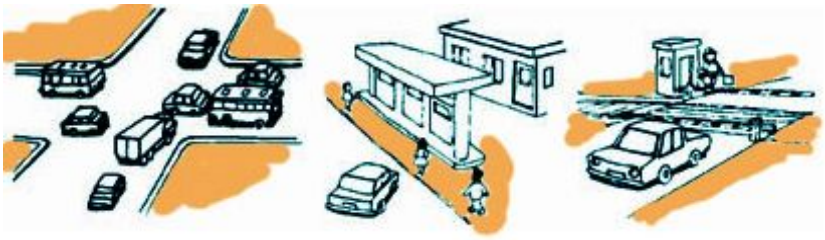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②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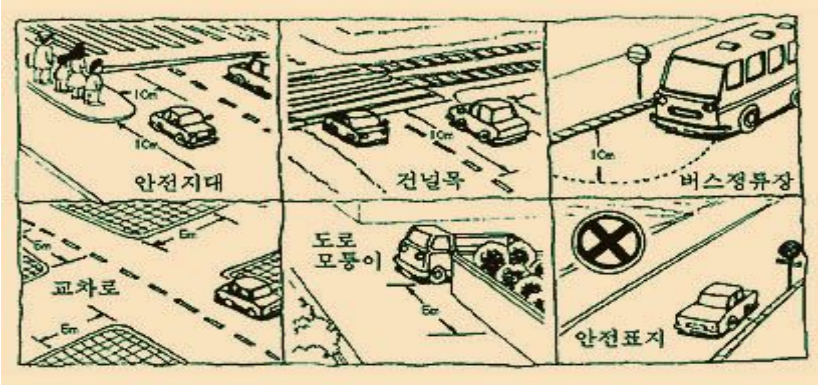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호	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호	주차금지의 장소			
3	다음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②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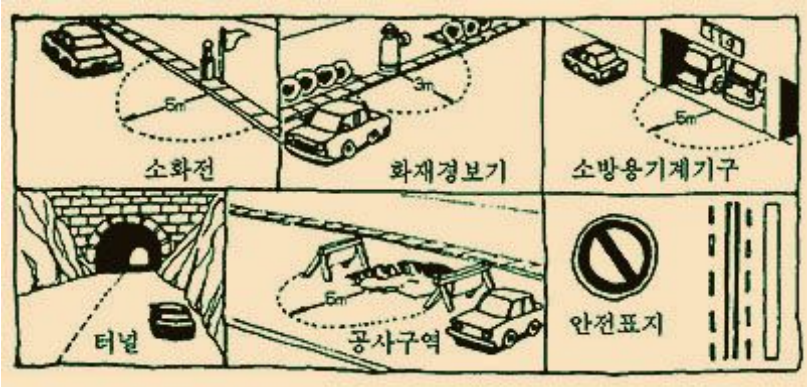

제37조 (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0.7.23>

호	차의 등화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안개·강우 또는 강설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밤에 켜야 하는 등화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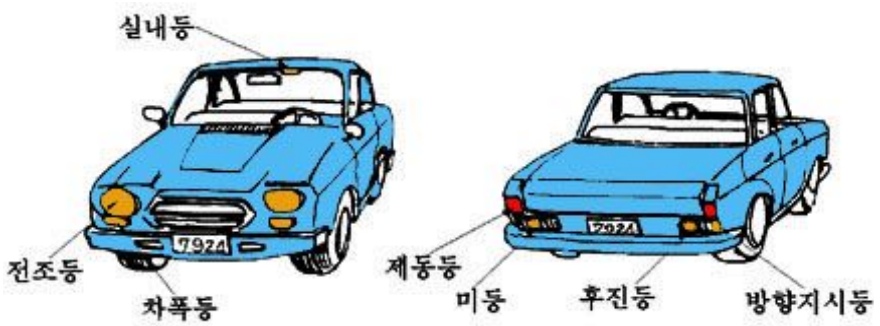

제38조 (차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으로 신호를 하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예시도)

또는

② 제1항에 따른 수신호의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신호를 행할 경우	손으로 하는 신호방법
횡단 유턴 좌회전 앞지르기 할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 것
정지할 때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펼 것
서행할 때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아래위로 흔들 것
후진할 때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앞뒤로 흔들 것
뒤차에게 앞지르기 시키고자 할 때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제 4 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0.7.23>

<table>
<tr><th>호</th><th colspan="3">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th></tr>
<tr><td>1</td><td colspan="3">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td></tr>
<tr><td rowspan="2">2</td><td colspan="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할 것</td></tr>
<tr><td>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td><td>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맹도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td><td>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td></tr>
<tr><td>3</td><td colspan="3">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요인경호용·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td></tr>
<tr><td>4</td><td colspan="3">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td></tr>
</table>

<table>
<tr><th>호</th><th colspan="5">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th></tr>
<tr><td>5</td><td colspan="5">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td></tr>
<tr><td>6</td><td colspan="5">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td></tr>
<tr><td>7</td><td colspan="5">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td></tr>
<tr><td rowspan="2">8</td><td colspan="5">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td></tr>
<tr><td colspan="2">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td><td colspan="2">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td><td>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td></tr>
<tr><td>9</td><td colspan="5">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td></tr>
<tr><td rowspan="2">10</td><td colspan="5">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td></tr>
<tr><td>예외</td><td>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td><td>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td><td>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td><td>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td></tr>
<tr><td>11</td><td colspan="5">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td></tr>
<tr><td>12</td><td colspan="5">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td></tr>
</table>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항	특정 운전자의 종류	준수사항
1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 착용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함
	예외: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 환기
		그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
3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4	자전거의 운전자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5	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6	사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자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
7	자전거의 운전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
8	자전거의 운전자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여야 한다.

호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1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제 5 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호	고속도록등에서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호	고속도록등에서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65조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①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고속도로등에서 고장 등의 조치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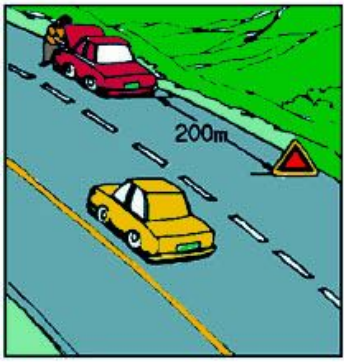

제 6 장 도로의 사용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제 7 장 교통안전교육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호	근거조문	주 체	내 용
1	제74조제2항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제6항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3	제77조제2항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때
4	제141조제2항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때
5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제79조의2 (이 장에 따른 운전면허의 절차) 이 장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의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절차도, 개요도)

제 8 장 운전면허

제80조 (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호	운 전 면 허	
	종 별	구 분
1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제1종보통
		제2종보통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⑤ 삭제 <2010.7.23>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21, 2010.7.23>

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0.7.23>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의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2.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7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③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table>
<tr><th>호</th><th colspan="4">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th></tr>
<tr><td>1</td><td colspan="4">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td></tr>
<tr><td>2</td><td colspan="4">「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td></tr>
<tr><td rowspan="2">3</td><td colspan="4">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td></tr>
<tr><td>「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td><td>「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td><td>「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td><td>「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td></tr>
<tr><td>4</td><td colspan="4">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6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td></tr>
<tr><td>5</td><td colspan="4">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td></tr>
<tr><td>6</td><td colspan="4">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람</td></tr>
<tr><td>7</td><td colspan="4">제93조제1항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td></tr>
<tr><td>8</td><td colspan="4">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td></tr>
<tr><td>9</td><td colspan="4">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td></tr>
</table>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국내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이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구제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절차도)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그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열거도)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7.23>

제 9 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호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호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제113조제1항제1호, 동항제5호 내지 제12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장 보 칙

제13장 벌 칙

제1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0.7.23>

호	근거 조항	내 용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4	제99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
	제104조제1항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 제108조제5항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6	제116조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제129조의3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151조 (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0382호, 2010. 7.23>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6.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30,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31>

호	긴급자동차의 종류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개정 2010.12.31>

제 4 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3항(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호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부담의 사유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법 제68조제1항에 위반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이전·손괴행위
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옮기거나 철거 또는 손괴한 경우

제 2 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 7 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대열 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은 다음 표와 같다.

호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4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제 3 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등화조작의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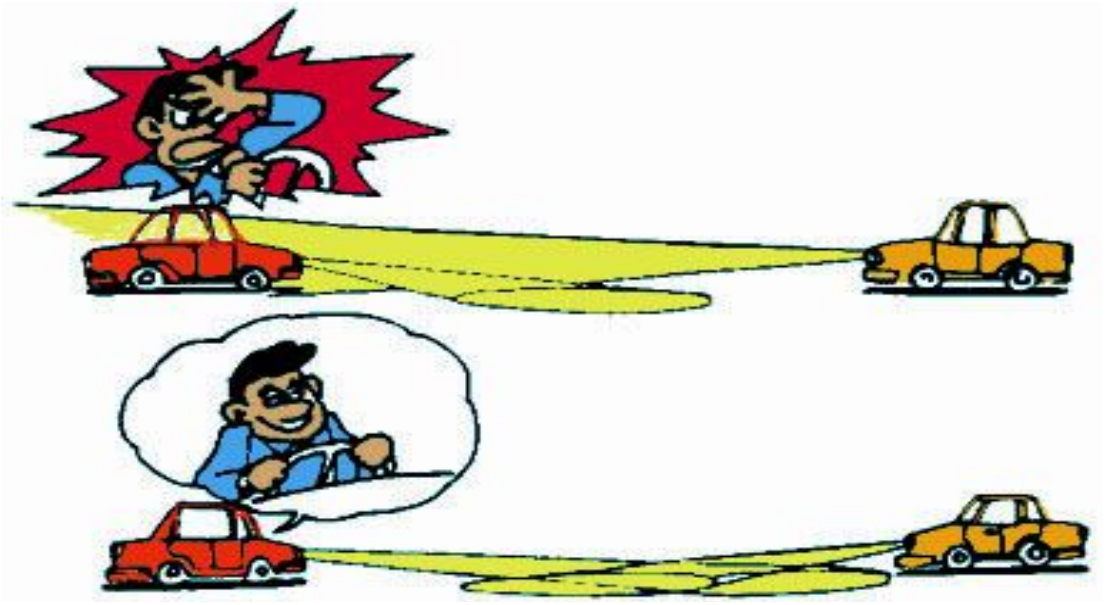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신호를 행할 경우	신호를 행할 시기	신호의 방법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좌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우회전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우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신호를 행할 경우	신호를 행할 시기	신호의 방법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고자 할 때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좌측 또는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점멸할 것

제 4 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삭제 <2008.12.31>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표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보험업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표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09.11.23>

호	교통사고의 조사 사항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도로의 사용

제 6 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

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9.11.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호	특별 교통안전교육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공동위험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교통법규의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3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에 따른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6.20>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73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7 장 운전면허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u>표와</u>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3, 2010.12.31>

호	자동차 등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1	시력(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적색·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은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적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③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병력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1.23, 2011.4.30>

④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0.12.31, 2011.4.30>

⑤ 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제 8 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3>

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6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3.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제68조 (전문학원 중요사항 변경의 승인)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여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3.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휴게실·양호실·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의 변경에 한한다)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

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 등 반환) ①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 편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학원등의 수강료와 법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9.11.23>

호	수강료 반환사유 및 금액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 9 장 도로교통공단 <개정 2008.6.20>

제10장 보 직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1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2와** 같다. <개정 2010.12.7>

<표1>

호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	법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 제1호	100만원
2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 제2호	100만원
3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3호	100만원
4	법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 제4호	100만원
5	법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 제5호	100만원

호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6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제160조제1항 제6호	100만원
6의2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1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6의3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1호	2만원
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2호	3만원
8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3호	2만원
8의2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자	제160조제2항 제4호	3만원
8의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5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8의4	법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2항 제6호	3만원
9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2항 제7호	2만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호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나.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 • 40㎞/h 초과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제한속도위반 가운데 40㎞/h 초과의 경우와 20㎞/h 이하의 경우에는 다음의 과태료금액을 적용한다. ○제한속도위반 40㎞/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제한속도위반 2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1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13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5만원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5만원)

(비고)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3호의 과태료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2>

호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가. 40km/h 초과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다. 20km/h 이하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11만원 10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5만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9만원 (10만원) 8만원 (9만원)
	(비고) 위 표에서 1.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3호의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신설 2010.12.7>

1. 과태료의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과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⑦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12.31>

⑧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⑨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08.6.20]

부 칙 <제22910호, 2011. 4.30>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1일 교육시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록 2】

일본-법령에 그림이 있는 경우

1. 하천관리시설 등 구조령 시행규칙

제15조 (제방의 관리용 통로) 영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용 통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관리용 통로에 대신해야 하는 적당한 통로가 있는 경우, 제방의 전부 또는 주요한 부분이 콘크리트, 강시판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한 구조인 경우 또는 제방의 높이와 제 내 지반고와의 차이가 0.6m 미만의 구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원은 3m 이상으로서, 제방의 둑마루(天端幅) 이하의 적절한 수치로 할 것
2. 건축한계는 <u>다음의 그림에서</u> 나타내는 바에 따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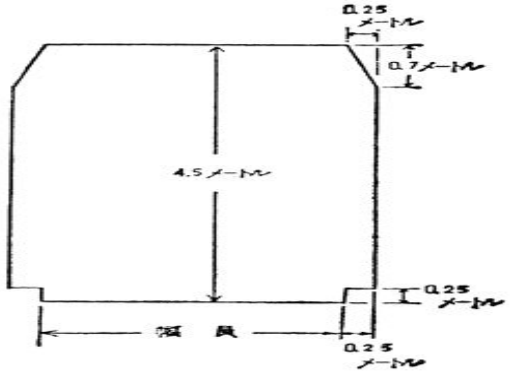

2. 도로구조령

제39조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①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원은 3m 이상으로 하고,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의 폭원은 4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는 지형의 상황, 그 밖의 특별한 이유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2.5m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그 각 측에 해당 도로의 부분으로서 폭원 0.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을 둔다.

③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의 폭원은 제4항의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④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축한계는 <u>다음의 그림에서</u> 나타내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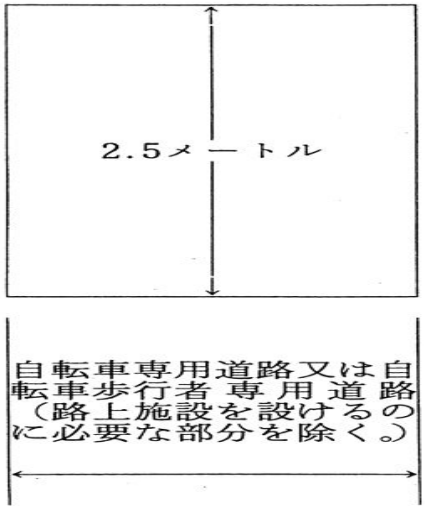

⑤-⑥ <생략>

제39조 (보행자 전용도로) ① 보행자 전용도로의 폭원은 해당 도로가 존재하는 지역 및 보행자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2m 이상으로 한다.

② 보행자 전용도로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행자 전용도로의 폭원은 제3항의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축한계는 <u>다음의 그림에서</u> 나타내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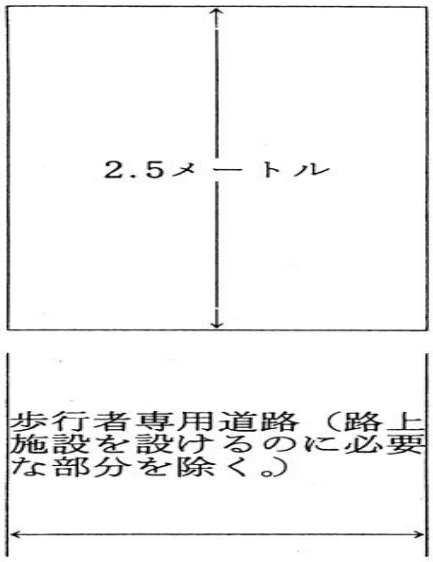

3. 소방용 호스의 기술상 규격을 정하는 성령

제46조 (보형성) 소방용 보형호스의 일단을 <u>다음의 그림과 같이</u> 고정하여 최고굴곡반경의 곡율반경으로서 침목에 따라 90도 구부리고, 그 선단에 20 뉴톤의 하중을 가하여 30분간 방치한 경우, 부러짐(같은 그림에서 열거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10% 이하이고, 하중의 제거한 후의 부러짐이 5% 이하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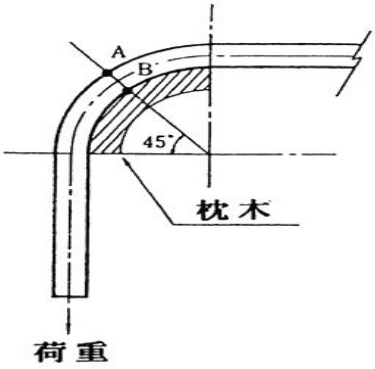

부러짐(%) ＝ $\{(C_1 - C_2) / C_1\} \times 100$

C_1은 하중의 가하기 전의 A점과 B점을 통과한 외경(단위 mm)

C_2는 하중의 가한 후 및 하중을 제거한 후의 A점과 B점을 통과한 외경(단위 mm)

4. 소방용 흡관의 기술상 규격을 정하는 성령

제13조 (굴절성) ① 소방용 흡관(호칭이 130부터 115까지의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하에서 이와 같다)은 그 호칭에 대응하여 **다음의 표에서** 열거하는 길이의 부분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180도 구부리기 위하여 필요한 하중이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인 경우에는 100 뉴톤 이하, 하한인 경우에는 200 뉴톤 이하이고, 구부린 경우에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호칭	길이(Cm)
100	280
90	225
75	190
65	170
50	155
40	140
25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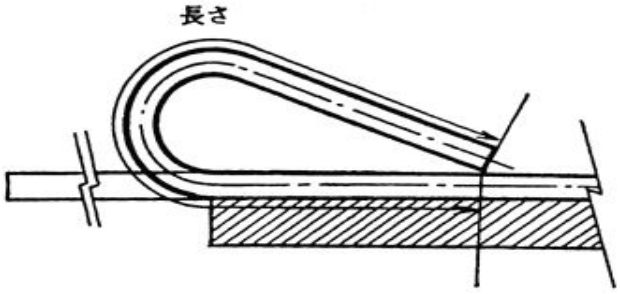

② 소방용 흡관은 그 호칭에 대응하여 제1항의 표에서 열거하는 길이를 원주의 길이로 하여 다음의 **그림-1과** 같이 2회 말아 고정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경우에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고, 그 일단을 다음의 **그림-2와** 같이 붙여 그 1권분을 해체하고, 다른 1권분이 해체된 부분의 하중이 되도록 수직으로 내린 경우에 잔류 뒤틀림(같은 그림에서 열거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한 것을 말한다)이 3분 이내에 그 호칭에 대응하여 제1항의 표에서 열거하는 길이의 5% 이하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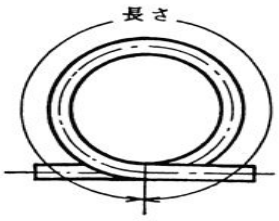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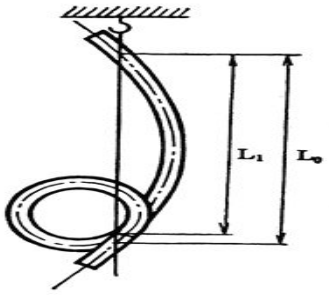

그림-2

잔류 뒤틀림(%) = { ($L_0 - L_1$) ÷L_0} ×100

제14조 (구부림) ① 길이 1m 이상의 소방용 흡관의 일단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고정하여 그 호칭에 대응하여 다음의 표-1에서 열거하는 길이의 곡율반경으로 침목에 따라 90도 구부리고, 그 호칭에 대응하여 다음의 표-2에서 열거하는 하중을 그 선단에 가하여 30분간 방치한 경우에 부러짐(같은 그림에서 열거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와 이와 같다)이 10% 미만이고, 하중의 제거한 후의 부러짐이 2% 이하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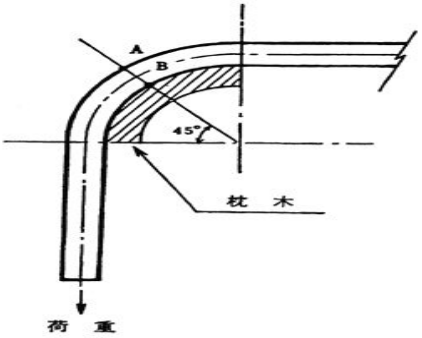

부러짐(%) = { ($C_1 - C_2$) / C_1} × 100

C_1은 하중의 가하기 전의 A점과 B점을 통과한 외경(단위 mm)

C_2는 하중의 가한 후 및 하중을 제거한 후의 A점과 B점을 통과한 외경(단위 mm)

표-1

호 칭	곡율반경(Cm)
150 140	40
125 115	30
100 90 75 65	20
50 40 25	15

표-2

호 칭	하중(뉴톤)
150	2,600
140	2,200
125	1,800
115	1,450
100	1,600
90	1,400
75	1,000
65	550
50	400
40	130
25	60

【부 록 3】

독일-법령에 그림이 있는 경우

Straßenverkehrs-Ordnung (StVO)
도로교통명령

§ 31 Sport und Spiel (스포츠와 놀이)

(2) Durch das Zusatzzeichen

wird das Inline-Skaten und Rollschuhfahren zugelassen.

(2) 이 추가표지에 의하여 인라인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은 허가되어진다.

§ 39 Verkehrszeichen (교통표지)

(7) Werden Sinnbilder auf anderen Verkehrszeichen als den in §§ 40 bis 42 dargestellten gezeigt, so bedeuten die Sinnbilder:
(제40조에서 제42조까지 표시된 다른 교통표지의 그림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Kraftwagen und sonstige mehrspurige Kraftfahrzeuge
(자동차와 기타 다수궤적의 자동차)

Kraftfahrzeuge mit einem zuläsigen Gesamtgewicht über 3,5t, einschließlich ihrer Anhäger, und Zugmaschinen, ausgenommen Personenkraftwagen und Kraftomnibusse

(연결차량을 포함하여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승용차와 버스를 제외한 견인차)

Radverkehr

(자전거교통)[6]

Fußgäger

(보행자)

Reiter
(승마)

6) 자전거교통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할 목적으로 근력을 동력으로 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자전거와 관광용 자전거교통이 포함된다(역자 주).

Viehtrieb

(목장)

Straßenbahn

(전차)

Kraftomnibus

(버스)

Personenkraftwagen

(승용차)

Personenkraftwagen mit Anhäger

(연결차량 있는 승용차)

Lastkraftwagen mit Anhäger

(연결차량 있는 화물차)

Kraftfahrzeuge und Züge, die nicht schneller als 25 km/h fahren können oder düfen

(25 km/h 이상으로 달릴 수 없거나 달려서는 안되는 자동차와 견인차)

Krafträder, auch mit Beiwagen, Kleinkrafträder und Mofas

(측차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와 오토바이)

Mofas

(오토바이)

Gespannfuhrwerke

(마차)

§ 40 Gefahrzeichen (위험표지)

(2) Außerhalb geschlossener Ortschaften stehen sie im allgemeinen 150 bis 250 m vor den Gefahrstellen. Ist die Entfernung erheblich geringer, so kann sie auf einem Zusatzzeichen angegeben sein, wie
(폐쇄된 마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위험지역 150에서 250m 앞에 설치한다. 만약 거리가 현저히 가깝다면, 아래의 추가표지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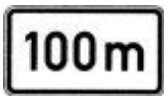

(4) Ein Zusatzzeichen wie

kann die Läge der Gefahrstrecke angeben.

(위험구간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표지를 할 수 있다.)